# 시보

선	기관의 장
יבי	
람	

# all ways INCHEON

### 제1999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2년 1월 10일 월요일

	고	시		
o <b>q</b>	인천광	역시고시	제2022-1호 2022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3
			제2022-2호 장흥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0	인천광	역시고시	제2022-3호 도시관리계획(만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	5
<u>.</u>	도면 고	1시		3
			제2022-4호 도시관리계획(화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0	인천광	역시고시	제2022-5호 도시관리계획(송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9
			제2022-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٥	긴선광 기기 -	역시고시	제202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15호선, 대1-14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59
			제2022-8호 도로구역(광역시도22호선)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63
			자유구역청고시 제2022-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i	간산당	극시경제	V뉴무럭용고시 제2022-1오 무럭산들사업계획 한영중한 고시 ······	70
	공	고		
o 9			제2021-321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77
	인천광	역시공고	제2021-321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	
o <b>q</b>	인천광 인천광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78
o <b>q</b>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제2021-3223호 2022년 인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78 91
o (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제2021-3223호 2022년 인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제2022-1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78 91 92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제2021-3223호 2022년 인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제2022-1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제2022-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제2022-1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78 91 92 93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제2021-3223호 2022년 인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제2022-1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제2022-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78 91 92 93 94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제2021-3223호 2022년 인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78 91 92 93 94 95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제2021-3223호 2022년 인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78 91 92 93 94 95 96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제2021-3223호 2022년 인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78 91 92 93 94 95 96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제2021-3223호 2022년 인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78 91 92 93 94 95 96 97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인천광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역시공고	제2021-3223호 2022년 인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78 91 92 93 94 95 96 97 98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5호 도로구역(국지도 98호선, 광역시도 58호선)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 가(변경) 공고·열람	103
가(면경) 공고·얼담···································	- 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7호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8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16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50호 공시송달 공고(온천원보호지구 지정해제 처분 사전통지)	17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51호 2022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17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52호 2022년「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공모 공고	17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55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9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5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19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5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60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1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변경) 공고	196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호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0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2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205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1호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2호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sup>°</sup>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30
일등단디에 단단 소네 등 일루개정소네인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3호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4
기타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1호 회계직인 사용 공고	
○ 인천아라꿈유치원공고 제2022-1호 관인등록 공고	
○ 인천미송유치원공고 제2022-1호 관인등록 공고	259

고 시

제1999호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호

# 2022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 인천광역시 2022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10.

# 인천광역시장

군・구	단지명	단지 유형	지정계획 면적(천m²)	산업용지 면적(천㎡)	사업시행자	비고
	3개소		1,270	<b>7</b> 15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	일반	257	111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	
계양구	계양 산업단지	일반	243	141	인천시 계양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서구	검단2일반산업단지	일반	770	463	인천도시공사	

끝.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호

# 장흥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이 시행하는 장흥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 1. 10.

##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장흥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 일원

3. 사업목적 : 노후화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영농편의 제공

4. 사업의 내용

공종	시행계획수립	비고
수원공	<ul> <li>○ 길상양수장</li> <li>- 양수장</li> <li>• 조립식관리동 설치</li> <li>• 유입수로 재설치(1.2×1.2, L=30m)</li> <li>• 용수간선측 송수관로 재설치(D300, L=2.5m)</li> <li>• 저수지측 송수관로 재설치(D450, L=27.8m)</li> <li>• 수중펌프(300mm×2대), 체크밸브, 제수밸브 재설치</li> <li>• 수배전반 보수 및 전동화</li> <li>• 용수로개거(0.6×0.6, L=1,184m)</li> <li>○ 부대공사 : 1식</li> </ul>	

5. 사 업 비: 1,734백만원

6. 사업기간: 2021년 ~ 2023년

7. 사 업 효 과 : 재해예방 및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8.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15번길 20

나.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

9. 기타: 관련서류 열람(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전화 032-930-2529)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3호

# 도시관리계획(만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만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a** 032-440-4623), 동구청(도시정비과, **a** 032-770-621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 10.

# 인 천 광 역 시 장

###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만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 2. 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37-2번지 일원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74	도면	7 4 2	دا جا		면 적(㎡)			
구분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신설	-	만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구 만석동 37-2번지 일원	-	증) 176,331	176,331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명 위치		결 정 사 유
신설	만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구 만석동 37-2번지 일원	176,331	• 공업과 주거기능이 혼재된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역사적 •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의 보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면적(m²)		구성비(%)	비고
	T <del>L</del>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후	T'8 FI(%)	비끄
	합 계	176,331	-	176,331	100.0	
	소계	11,079	-	11,079	6.3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216	-	4,216	2.4	
	제3종일반주거지역	6,863	_	6,863	3.9	
	소 계	165,252	-	165,252	93.7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09,640	-	109,640	62.2	
	준공업지역	55,612	_	55,612	31.5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① 교통시설
- 총괄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m²)	수	(m)	(m²)	수	(m)	(m²)	수	(m)	(m²)
합계	10	6,609.9 (1,430.9)	16,858.7	5	4,515.0 (761.0)	7,834.7	2	1,901.0 (476.0)	7,878.8	3	193.9 (193.9)	1,145.2
광로	-	_	-	_	_	-	-	-	-	_	-	-
대로	-	_	_	-	-	-	-	-	_	-	_	-
중로	2	4,817.0 (496.0)	7,634.9	1	2,952.0 (56.0)	80.1	1	1,865.0 (440.0)	7,554.8	_	-	-
소로	8	1,792.9 (934.9)	9,223.8	4	1,563.0 (705.0)	7,754.6	1	36.0 (36.0)	324.0	3	193.9 (193.9)	1,145.2

주) 괄호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노	연장	7] 7 <del>]</del>	ネカ	사용	최초	비고
一 元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결정일	미끄
기정	중로	1	668	20~28	국지 도로	2,952 (-)	대3-3	만석동 2-254	일반 도로	건고 제1970-54호 (1970.02.09.)	
변경	중로	1	668	20~28	국지 도로	2,952 (56)	대3-3	만석동 2-254	일반 도로	건고 제1970-54호 (1970.02.09.)	선형 조정
기정	중로	2	6	15~23	국지 도로	1,865 (440)	대2-43	대3-7	일반 도로	건고 제1970-54호 (1970.02.09.)	
변경	중로	2	6	15~23	국지 도로	1,865 (440)	대2-43	대3-7	일반 도로	건고 제1970-54호 (1970.02.09.)	선형 조정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497 (225)	중2-7	중2-6	일반 도로	_	
변경	소로	1	2	10	국지 도로	497 (225)	중2-7	중2-6	일반 도로	_	선형 조정
기정	소로	1	50	9	국지 도로	623 (4)	중1-668	중2-6	일반 도로	_	
변경	소로	1	50	9	국지 도로	611 (25)	중1-668	중2-6	일반 도로	_	선형 조정

구분		규		足	기능	연장	7) Zi	スカ	사용	최초	비고
丁七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궁	(m)	기점	종점	형태	결정일	비끄
기정	소로	1	53	10	국지 도로	205 (205)	중1-668	중2-6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54	12	국지 도로	250 (250)	중1-668	중2-6	일반 도로	_	
변경	소로	1	54	12	국지 도로	250 (250)	중1-668	중2-6	일반 도로	_	선형 조정
신설	소로	2	9	8	국지 도로	36 (36)	중1-668	만석동 24-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28	6	국지 도로	60.9 (60.9)	소1-2	만석동 24-1	일반 도로	인고 제1992-196호 (1992.12.30.)	
기정	소로	3	180	4~6	국지 도로	87 (87)	소로1-50	만석동 31-6	일반 도로	인천시 동고 제1999-2호 (1999.01.22.)	
기정	소로	3	181	4	국지 도로	46 (46)	소1-2	소로1-50	일반 도로	인천시 동고 제1999-2호 (1999.01.22.)	

주) 괄호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중로1-668	중로1-668	• 도로 선형 조정	• 지적과 도시계획시설(도로) 선형의 일치를 위한 일부 선형 조정
중로2-6	중로2-6	• 도로 선형 조정	• 지적과 도시계획시설(도로) 선형의 일치를 위한 일부 선형 조정
소로1-2	소로1-2	• 도로 선형 조정	• 지적과 도시계획시설(도로) 선형의 일치를 위한 일부 선형 조정
소로1-50	소로1-50	• 도로 선형 조정 - 연장: 623m → 611m 감) 12m	• 지적과 도시계획시설(도로) 선형의 일치를 위한 일부 선형 조정
소로1-54	소로1-54	• 도로 선형 조정	• 지적과 도시계획시설(도로) 선형의 일치를 위한 일부 선형 조정
_	소로2-9	• 노선 신설 - 폭원: 8m, 연장: 36m	• 현황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계획 시설로서 결정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부분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필지			획지		비고
번호	면적(㎡)	위치	면적(m²)		위치	면적(m²)	비끄
		만석동32-5구	208.3	_	_	_	
		만석동35-2도	79.3	-	_	_	
		만석동36-5도	55.0	_	_	_	
		만석동37-2장	75,232.0	_	_	_	특별계획
,	00.007.0	만석동37-4유	446.3	_	_	_	구역 1
1	80,907.0	만석동37-5장	271.1	_	_	_	. 1
		만석동111구	757.7	_	_	_	
		만석동113구	33.1	_	_	_	•
		만석동40-3대	1,390.1	_	_	-	
		만석동40-4장	2,434.1	_	_	-	
		만석동16-2장	1,974.0	_	_	-	
		만석동16-20도	25.6	-	_	-	
		만석동16-3장	842.0	-	_	-	
		만석동16-6장	92.0	_	_	-	
		만석동16-12장	233.0	_	_	-	
		만석동17-2주	1,234.1	-	_	-	
		만석동17-4장	19.8	_	_	-	
		만석동16-9도	30.0	_	_	-	
		만석동16-10대	193.4	-	_	-	
		만석동16-13대	159.5	-	_	_	
		만석동16-14대	26.5	_	_	-	
		만석동16-15대	36.7	_	_	_	
		만석동16-16대	34.0	-	_	-	
2	7,160.0	만석동16-17대	15.0	_	_	-	
		만석동16-18대	25.8	_	_	-	
		만석동16-19대	107.6	-	_	_	
		만석동16-22대	152.1	-	_	-	
		만석동16-26도	14.5	_	_	-	
		만석동16-27대	50.6	-	_	-	
		만석동16-29대	20.5	-	_	-	
		만석동16-30대	31.4	_	_	-	
		만석동17-1장	369.1	_	_	_	
		만석동17-6장	364.7	_	_	_	
		만석동17-7장	365.4	_	_	_	
		만석동17-8장	366.2	_	_	_	
		만석동17-9장	367.5	_	_	_	
		만석동110구	9.0	_	_	_	

	가구	필지			획지		-2
번호	면적(m²)	위치	면적(㎡)		위치	면적(m²)	비고
		만석동9-9장	4,557.5	_	-	_	
		만석동9-11장	605.0	_	_	_	
		만석동9-44장	1,228.3	_	_	_	
		만석동9-360대	166.1	_	_	-	
		만석동9-371장	925.6	_	_	_	
	10.050	만석동9-592장	237.0	_	_	_	특별계획
3	13,278.0	만석동9-593대	1,582.4	_	_	_	구역 2
		만석동9-535도	15.9	_	_	_	
		만석동15-1대	1,673.9	_	_	_	
		만석동15-2장	2,065.0	_	_	_	
		만석동15-3대	186.4	_	_	_	-
		만석동15-4대	34.9	_	_	_	-
		만석동30-1장	26,593.0	_	_	_	특별계획
		만석동32-17대	36.0	_	_	_	구역 3
		만석동31-6도	517.9	_	-	-	
		만석동31-7대	10.4	_	_	-	
		만석동31-10대	49.6	_	_	-	
		만석동31-11대	58.2	_	_	-	
		만석동31-12대	52.6	_	_	-	
		만석동31-13대	5.4	_	_	-	
		만석동31-14대	52.4	_	_	-	
		만석동31-15대	38.7	_	_	_	
		만석동31-16대	63.5	_	_	_	
		만석동31-17대	43.7	_	_	_	
4	35,377.3	만석동31-18대	38.1	_	_	_	
		만석동31-19대	40.2	_	_	_	
		만석동31-20대	37.7	_	_		
		만석동31-21대	17.5	_	_	_	
		만석동31-22대	31.1	_	_	_	
		만석동31-23대	24.5	_	_	_	
		만석동31-24대	27.8	_	_	_	
		만석동31-25대	21.2	_	_	_	
		만석동31-26대	19.8	_	_		
		만석동31-30대	10.5	_	_	_	
		만석동31-31대	53.6	_	_	_	
		만석동31-32대	47.4	_	_	-	
		만석동31-35대	27.8	_	_	_	

	가구	필지					
번호	면적(m²)	위치	면적(m²)		 위치	면적(m²)	비고
		만석동31-36대	35.7	_	-	_	
		만석동31-37대	30.1	_	_	-	
		만석동31-39대	35.7	_	_	-	
		만석동31-40대	4.4	_	_	_	
		만석동31-41대	34.4	_	-	_	
		만석동31-42대	65.8	_	_	_	
		만석동31-43대	50.9	_	_	_	
		만석동31-44대	4.1	_	_	_	
		만석동31-45대	38.9	_	_	_	
		만석동31-47대	34.4	_	_	_	
		만석동31-48대	8.6	_	-	_	
		만석동31-49대	11.4	_	_	_	
		만석동31-50대	32.4	_	_	_	
		만석동31-51대	22.1	_	_	_	
		만석동31-52대	13.2	_	_	_	
		만석동31-53대	13.9	_	_	_	
		만석동31-55대	31.1	_	_	_	
		만석동31-61대	0.9	_	_	_	
		만석동31-62대	1.5	_	_	_	
		만석동28-2대	109.4	_	_	_	
$\begin{vmatrix} 4 \end{vmatrix}$	35,377.3	만석동28-3대	1.0	_	_	_	
	00,011.0	만석동28-19도	15.6	_	_	_	
		만석동28-20대	119.5	_	_	_	
		만석동28-21대	47.3	_	_	_	
		만석동28-22대	26.6	_	_	_	
		만석동28-23대	39.4	_	_	_	
		만석동28-24대	157.0	_	_	_	
		만석동28-25대	23.0	_	_	_	
		만석동28-37대	44.3	_	_	_	
		만석동28-38대	20.7	_	_	_	
		만석동29-2대	1,180.5	_	_	_	
		만석동29-3대	44.0	_	_	_	
		만석동29-4대	179.2	_	_	_	
		만석동29-5대	2.0	_	_	_	
		만석동29-6대	71.1	_	_	_	
		만석동29-7대	49.3	_	_	_	
		만석동29-12대	11.9	_	_	_	
		만석동29-14대	1.3	_	_	_	
		만석동29-15대	96.2	_	_	_	
		만석동29-17대	46.6	_	_	_	
		만석동29-19대	25.1		_	_	
		단역당29-19대	۷۵.1	_	_	_	

가구 버형 면제(㎡)		필지			nl –		
번호	면적(㎡) 위치 면적(㎡) 위치		면적(m²)	비고			
		만석동29-22대	242.0	_	_	-	
		만석동30-5대	363.1	_	_	_	
		만석동30-7대	1,641.7	_	_	_	
4	35,377.3				_	_	
		만석동30-10대	1,845.5	_	_	-	
		만석동34-5종	579.9	_	_	_	
		만석동34-11대	6.0	_	_	_	
		-	_		계	10,025.3	
		_	_		만석동23-49장	1.3	
		_	_		만석동23-50대	11.2	
		_	_		만석동23-51장	6.0	
		_	_	1	만석동25-1장	7,467.8	
		_	_		만석동140-20장	1,560.0	
		_	_		만석동295-6대	10.0	
		_	_		만석동296-1장	969.0	
		만석동23-48대	37.4	_	_	_	
		만석동295-18대	20.0	_	_	_	
		만석동25-22대	17.9	_	_	_	
		만석동25-23대	25.8	_	_	_	
		만석동25-27장	83.6	_	_	_	
		만석동140-40대	225.0	_	_	_	
		만석동295-9대	972.0	-	_	_	
		만석동18-3대	2,497.0	_	_	_	
		만석동18-4대	987.9	_	_	_	
5	21,807.0	만석동19-2대	499.3	_	_	_	
		만석동19-4대	502.2	_	_	-	
		만석동20-61대	4.3	_	_	-	
		만석동21-8장	3.1	_	_	-	
		만석동21-13대	242.1	_	_	-	
		만석동21-26대	42.6	_	_	-	
		만석동21-27대	50.2	_	_	-	
		만석동21-28대	37.4	-	_	_	
		만석동21-29대	325.4	_	_	-	
		만석동21-58대	66.8	_	_	_	
		만석동21-67대	114.0	_	_	-	
		만석동21-73대	188.4	_	_	-	
		만석동21-74대	107.1	_	_	-	
		만석동21-81대	349.1	_	_	-	
		만석동21-99대	252.0	_	_	-	
		만석동21-100대	248.9	_	_	-	
		만석동21-101대	245.2	_	_	-	
		만석동21-102대	246.8	_	_	_	

	가구	필지			획지		wl =
번호	면적(㎡)	위치	면적(m²)		위치	면적(m²)	비고
		만석동21-103도	291.9	_	_	_	
		만석동21-104대	214.6	_	_	_	
		만석동21-105대	203.6	_	_	-	
		만석동21-106대	204.1	_	_	-	
		만석동21-107대	201.7	_	_	-	
		만석동21-108대	203.3	_	_	-	
		만석동24-1대	225.8	_	-	-	
		만석동24-19대	163.6	_	-	-	
		만석동24-21대	281.7	_	_	_	
		만석동24-22대	435.7	_	_	_	
		만석동24-23대	31.1	_	_	-	
		만석동24-24대	5.2	_	_	-	
		만석동25-5대	36.4	_	_	-	
		만석동25-6대	36.4	_	_	_	
		만석동25-11대	63.8	_	_	-	
		만석동25-12대	36.4	_	_	-	
_		만석동25-13대	39.7	_	_	_	
5	21,807.0	만석동25-14대	33.1	_	_	-	
		만석동25-15대	36.4	_	_	_	
		만석동25-16대	36.4	_	_	_	
		만석동25-17대	36.4	_	_	_	
		만석동25-18대	36.4	_	_	_	
		만석동25-19대	33.1	_	_	_	
		만석동25-20대	16.5	_	_	_	
		만석동26-2대	23.8	_	_	_	
		만석동26-5대	23.7	_	_	_	
		만석동26-6대	1.0	_	_	_	
		만석동296-6대	66.5	_	_	_	
		만석동296-13대	69.0	_	_	_	
		만석동296-14대	3.0	_	_	_	
		만석동296-15대	13.0	_	_	_	
		만석동296-16대	7.0	_	_	_	
				_	_	_	
				_	_	_	
		만석동296-28대 만석동296-29대	17.0 3.0		-		

	가구	필지			획지		
번호	면적(㎡)	위치	면적(m²)		위치	면적(m²)	비고
		만석동296-30대	3.0	_	_	-	
		만석동296-31대	3.0	_	_	_	
		만석동296-32대	3.0	_	_	-	
		만석동296-33대	1.0	_	_	-	
		만석동296-34대	22.0	_	_	_	
		만석동296-39대	22.0	_	_	_	
		만석동296-40대	14.0	_	_	-	
		만석동296-43도	1.0	_	_	_	
		만석동296-55대	7.0	_	_	-	
5	21,807.0	만석동296-56대	1.0	-	_	_	
)	21,007.0	만석동296-67대	23.0	_	_	_	
		만석동296-70대	0.9	-	_	_	
		만석동297-2대	7.0	_	_	_	
		만석동297-3대	51.0	_	_	_	
		만석동297-4대	47.0	_	_	-	
		만석동297-5대	38.0	_	_	_	
		만석동297-6대	5.0	_	_	-	
		만석동297-20대	2.0	_	_	_	
		만석동297-30대	4.0	_	_	_	
		만석동297-31대	5.0	_	_	-	
		만석동27-7대	13.9	-	_	_	
		만석동28-11대	152.4	-	_	_	
		만석동28-6대	288.9	_	_	_	
		만석동28-7대	7.5	_	_	_	
		만석동28-14대	79.7	_	_	-	
		만석동28-16대	63.8	_	_	_	
		만석동27-1대	141.2	_	_	_	
6	1,451.0	만석동27-2대	93.5	_	_	_	
		만석동27-5대	109.1	_	_	_	
		만석동27-6대	7.3	_	_	_	
		만석동28-8대	137.3	_	_	_	
		만석동28-9대	61.2	_	_	_	
		만석동28-13대	116.0	_	_	_	
		만석동28-17대	106.1	_	_	_	
		만석동28-18대	73.1	_	_	_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결정조서
  - 일반공업지역

도면	위치			
번호	(가구)	구	분	계획내용
		œ 내	허용	<ul> <li>「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단, 다음의 건축물은 제외)</li> <li>종교시설 중 봉안당</li> <li>의료시설 중 격리병원</li> <li>공장(단, 도시계획조례 제34조에 따른 공장은 제외)</li> <li>창고시설(창고시설 중 창고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li> <li>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는 제외]</li> <li>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li> <li>동물 및 식물관련시설</li> <li>자원순환 관련시설</li> <li>교정 및 군사시설</li> <li>발전시설</li> <li>장례시설</li> <li>양영장 시설</li> </ul>
Al	가구1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AI	가구2	건피	체율	• 70% 이하
		용진	석률	• 350% 이하
		높	ो	-
		배	치	<ul> <li>건축물의 주된 벽면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할 것</li> <li>2면 이상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건축물 전면의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할 것</li> <li>가로변 및 인접 대지에서 창고 및 기타 부대시설의 직접적인 노출 지양</li> </ul>
		쳥	태	<ul> <li>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 건축물과 조화 고려</li> <li>외벽은 단조로움을 지양하고 무늬와 색채를 가진 외장재 권장</li> <li>건축물 재료 및 입면을 다양화하여 외관 개선 권장</li> <li>주요 구조부 및 지붕·외벽은 내화 구조를 권장</li> <li>간판, 광고판, 지붕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3m 이상 공작물의 주요부는 불연재료를 권장</li> </ul>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 1]에 따름
		건축형	한계선	• 중로2-6호선변: 2m

# ○ 준공업지역

도면 번호	위치 (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가구4 가구5	항	마 어	<ul> <li>●「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li> <li>● 종교시설 중 봉안당</li> <li>●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li> <li>● 문화 및 집회시설(단, 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li> <li>● 공장(단, 도시계획조례 제34조에 따른 공장은 제외)</li> <li>● 창고시설(창고시설 중 창고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li> <li>●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는 제외]</li> <li>●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li> <li>●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li> <li>● 자원순환 관련시설</li> <li>● 교정 및 군사 시설</li> <li>● 발전시설</li> <li>● 장례시설</li> <li>● 양영장 시설</li> </ul>
B1		건피	ᆌ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ই
		높	ो	<del>-</del>
		배	치	<ul> <li>건축물의 주된 벽면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할 것</li> <li>2면 이상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건축물 전면의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할 것</li> <li>가로변 및 인접 대지에서 창고 및 기타 부대시설의 직접적인 노출 지양</li> </ul>
		쳥	태	<ul> <li>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 건축물과 조화 고려</li> <li>외벽은 단조로움을 지양하고 무늬와 색채를 가진 외장재 권장</li> <li>건축물 재료 및 입면을 다양화하여 외관 개선 권장</li> <li>주요 구조부 및 지붕 · 외벽은 내화 구조를 권장</li> <li>간판, 광고판, 지붕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3m 이상 공작물의 주요부는 불연재료를 권장</li> </ul>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 1]에 따름.
		건축형	한계선	• 중로1-668호선변: 1m • 중로2-6호선변: 2m

#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치 (가구)	구	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	<ul> <li>「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단, 다음의 건축물은 제외)</li> <li>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li> <li>종교시설 중 봉안당</li> <li>동물 및 식물관련시설</li> <li>야영장시설</li> </ul>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	ᆌ율	• 60% 이하
		<del>8</del> 2	덕률	• 250% 이하
C1	가구5	上立	৹ৗ	_
		배	ネ	• 2면 이상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건축물 전면의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하며,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배치
		ਲੋਹ	태	<ul> <li>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 건축물과 조화 고려</li> <li>외벽은 단조로움을 지양하고 무늬와 색채를 가진 외장재 권장</li> <li>건축물 재료 및 입면을 다양화하여 외관 개선 권장</li> <li>주요 구조부 및 지붕 · 외벽은 내화 구조를 권장</li> <li>간판, 광고판, 지붕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3m 이상 공작물의 주요부는 불연재료를 권장</li> </ul>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 1]에 따름
		건축한	한계선	• 중로1-668호선변: 1m

### ○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치 (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하	<ul> <li>「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수 있는 건축물(단, 다음의 건축물은 제외)</li> <li>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li> <li>종교시설 중 봉안당</li> <li>동물 및 식물관련시설</li> <li>교정 및 군사시설</li> <li>발전시설</li> <li>야영장시설</li> </ul>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D1	가구2, 가구4,	용진	석률	• 300% 이하	
	가구6	높	0]	_	
		배치		• 2면 이상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건축물 전면의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하며,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배치	
			ਲੋਰ	태	<ul> <li>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 건축물과 조화 고려</li> <li>외벽은 단조로움을 지양하고 무늬와 색채를 가진 외장재 권장</li> <li>건축물 재료 및 입면을 다양화하여 외관 개선 권장</li> <li>주요 구조부 및 지붕 · 외벽은 내화 구조를 권장</li> <li>간판, 광고판, 지붕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3m 이상 공작물의 주요부는 불연재료를 권장</li> </ul>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 1]에 따름.	
		건축형	한계선	• 중로1-668호선변: 1m	

- 주1) 관련법규나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서의 내용이 관련법규나 조례와 상이한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름.
- 주2)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름.
- 주3) 향후 개발 시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조례」,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건축자산 보전 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보전이 필요한 건축물 등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가구번호 5의 획지1, 삼화제분)

-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전면공지	<ul> <li>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하여야 함.</li> <li>전면공지 내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등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li> <li>차량 진·출입 금지를 위해 볼라드·돌의자 설치 및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li> <li>허가권자가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때 등 허가권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li> <li>포장패턴은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포장</li> <li>전면공지는 대지면적에 산입되며,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 시 사업시행자가 이를 시행함.</li> </ul>	젉
공개공지	<ul> <li>공개공지 확보대상 및 규모</li> <li>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 설치방식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36조 규정을 적용함.</li> <li>공개공지는 사업시행자가 확보하여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li> <li>절치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곳에 우선 조성하여야 함.(권장)</li> <li>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에 접할 수 있도록 함.</li> <li>인접대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녹지축, 주요도로 및 주 보행통로 변에 설치하여 시민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함.</li> <li>주변지역과의 연계성,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휴게공간의 연속성 및 이용성을 증진시키도록 함.</li> <li>조성형태</li> <li>진출입부는 단차가 없도록 구성하고 레벨차가 큰 경우 경사면 설치를 통해보행동선을 유도하도록 함.</li> <li>공개공지 내 설치하는 시설물은 기존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디자인하며,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보행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li> <li>주변 건축물 및 보행공간과 조화로운 공간을 디자인하며, 과도한 색채 및 형태는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함께 사용하도록 함.</li> <li>보행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조경·벤치·파고라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함.</li> <li>약간 이용 시 우범지대가 되지 않고 자연적인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디자인으로 계획하며 우범방지 및 사용편의를 위해 CCTV, 조명 등을 설치하여야 함.</li> <li>시설물 디자인 및 색채 등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기준을 적용함.</li> <li>필로티형식의 공개공지 설치는 금지함.</li> </ul>	전 구역
조경	• 「건축법」제42조,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22조에 따른 조경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	전 구역

2022. 1. 10.(월요일)

#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 진·출입로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대지 내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 구역
부설 주차장	<ul> <li>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li> <li>-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 대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적용</li> <li>-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li> </ul>	전 구역
보 차 통 로	<ul> <li>조성기준</li> <li>보도나 혹은 차도와 단차가 없어야 하며,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될 경우에도 단차가 없어야 함.</li> <li>보차혼용통로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단, 맨홀 설치 등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li> <li>보차혼용통로가 지정된 대지는 24시간 보행자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계획함.</li> <li>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통행하는 시설로 바닥 패턴 및 포장재의 차별화를 통해 차량의 감속을 유도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함.</li> <li>대지 내 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하고 지상부가 오픈된 개방형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li> <li>조성주체</li> <li>보차혼용통로의 조성은 각각의 건축이 행해지는 시점에 사업시행자가 조성함.</li> </ul>	전 구

# ○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

계획내용	비고
• 대지 내 건축부지를 제외한 지역을 흙, 자갈, 모래, 잔디 등의 자연재료 또는	전
아스콘 등의 투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조성하도록 권장	구역
• 계단탑 및 설비 면적을 제외한 옥상공간에 「건축법」, 「건축조례」에 따라 녹지	전
공간을 보완하도록 권장	구역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사용량의 10%이상을	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	구역
· [무이 케이오 초기 미 기이에 코치 버린 L에 따르 비무이오기서이 서키르 그자	전
• [물의 세이용 측신 및 시전에 단안 법률] 에 따른 댓물이용시설의 설치를 단성	구역
• 녹색주차장(잔디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되 잔디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경우	전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주차장 설치 권장	구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	전
할 것을 권장	구역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등	전
관련 법령에 의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권장	구역
	<ul> <li>대지 내 건축부지를 제외한 지역을 흙, 자갈, 모래, 잔디 등의 자연재료 또는 아스콘 등의 투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조성하도록 권장</li> <li>계단탑 및 설비 면적을 제외한 옥상공간에 「건축법」, 「건축조례」에 따라 녹지 공간을 보완하도록 권장</li> <li>「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사용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li> <li>「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li> <li>녹색주차장(잔디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되 잔디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경우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주차장 설치 권장</li> <li>「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li> <li>「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등</li> </ul>

#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옥외광고물	<ul> <li>옥외광고물</li> <li>「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기준 적용</li> <li>부착시설물</li> <li>문패, 주소판, 우편함 등 정면에 노출되는 부착 시설의 경우 주변과 어울리는 재료와 색채 사용</li> <li>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모든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 또는 대문 등 통행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지의 지번 표시</li> </ul>	전 구역
담장 및 옹벽의 설치	<ul> <li>담장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도록 함.(설치 시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li> <li>옹벽의 조성은 가급적 지양함.(설치 시 자연적 소재사용 및 주변과 조화도모)</li> </ul>	전 구역
야간경관	<ul> <li>벽면등, 수목등을 활용하여 친근하면서도 풍부한 야간경관 연출</li> <li>시설부, 벽면부 및 외부공간 및 가로 식재에 간접 조명방식을 통해 시설물 및 공간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은은한 분위기의 야간경관 연출</li> <li>야간공동화 방지를 위해 가로 및 건축 외부공간 시설물에 경관조명 권장</li> <li>시설물의 특성상 야간에 실내조명이 어려운 시설물의 경우 야간 이용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외부공간 및 인접가로에 경관조명 연출</li> <li>가로변의 주요 동선을 따라 연속적인 조명연출을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li> <li>건축물의 과도한 야간조명 설치는 금지하고 건축자산과 주변의 조화성을 최우선 고려</li> </ul>	전 구역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전 구역

### ○ 범죄예방 환경설계

구 분		계획 내용	
적용대상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24시간편의점 등 일용품판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		
	접근 통제	<ul> <li>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다만, 구역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 정보처리기,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 설치</li> <li>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출입이 용이하도록 조경, 조명, 안내판 등의 사용을 고려</li> <li>건축물의 외벽에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야 함.</li> </ul>	
	영역성 확보	•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위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 • 공간의 경계부분은 바닥에 단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 등을 달리 하는 등 공간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 보도 등을 설치	
설계기준	활동의 활성화	<ul> <li>외부 공간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시설(운동시설, 상점, 휴게시설, 놀이터, 출입구)과 연계</li> <li>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시설의 종류를 선정 및 배치계획 수립</li> <li>유해 용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li> </ul>	
	조경	•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 • 건축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내로 침입할 수 없도록 계획	
	조명	<ul> <li>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는 사물에 대한 인식을 쉽게 하고 눈부심 방지 등을 설치하되,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li> <li>높은 조도의 조명보다 낮은 조도의 조명을 많이 설치</li> <li>유입공간, 표지판, 출입구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사람들을 인도</li> </ul>	

### ○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동법 시행령」제25조 제4항 제1호 부터 제14호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과「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4항 제9호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계 획 내 용	비고
• 대지 내 공지의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 차량출입구의 변경(단, 공동개발 등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및 Bus-bay, 가감속차로 확보	

- 3)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부분
- 가)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구역명		그러퍼 이국	면 적(m²)			비고
丁亚	번호	7 7 7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1111
신설	1)	특별계획구역	만석동 37-2번지 일원	-	증) 77,082.8 m²	77,082.8 m²	
신설	2	특별계획구역	만석동 9-44번지 일원	-	증) 13,278.0 ㎡	13,278.0 m²	
신설	3	특별계획구역	만석동 30-1번지 일원	-	증) 26,629.0 ㎡	26,629.0 m²	

##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1)	특별계획구역	• 신설: 77,082.8㎡	• 기존 공업기능을 상실하고 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에 대하여 기존 공업 에서 주거와 문화 등의 복합된 기능으로의 전환과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 등 합리적인 개발방안 마련을 위하여 특별계획 구역 지정
2	특별계획구역	• 신설: 13,278.0㎡	• 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에 대하여 기존 공업에서 주거기능으로의 전환과 인근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합리적 개발방안 마련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정
3	특별계획구역	• 신설: 26,629.0㎡	• 기존 공업기능을 상실하고 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에 대하여 기존 공업 에서 주거와 문화 등의 복합된 기능으로의 전환과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 등 합리적인 개발방안 마련을 위하여 특별계획 구역 지정

###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제 1 장 "특별계획구역 1" 계획지침

#### 제 1 조 (개발방향)

- ① 주거와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기능을 갖춘 복합개발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의 보전 및 활용방안 모색을 통한 도시의 역사성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과 역사성 보전의 균형 있는 도시발전 방안 마련
- ② 친환경적인 개발과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시설을 확보하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 제 2 조 (용도지역)

① 대상지는 현재 일반공업지역이나 기본계획 상 주거용지로 반영된 지역으로 세부개발계획수립 시 사전협상을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검토

#### 제 3 조 (공공시설 제공비율 등)

- ①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공공시설의 종류, 제공방식, 제공비율을 결정
- ② 공공시설의 종류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점의 여건을 고려하여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공원, 공영주차장, 공공문화시설 등 지역 내 부족한 생활 SOC시설을 제공
- ③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은 공공시설 제공비율 에서 제외

####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 제 4 조 (건축물의 용도)

① 특별계획구역의 건축물 용도는 세부개발계획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의 범위 내에서 허용용도를 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도	허용용도	<ul> <li>「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건축물</li> <li>공동주택 및 부대시설</li> <li>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li> <li>노유자시설</li> <li>문화 및 집회시설</li> <li>판매시설</li> <li>업무시설</li> <li>의료시설</li> <li>교육연구시설</li> </ul>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_

#### 제 5 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 및 제65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시 사전협상을 통해 결정

구 분	계 획 내 용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공동주택 개발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 210%, 상한용적률 250% 적용)
높 이	세부개발계획 시 결정

#### 제 6 조 (배치 및 형태)

- ① 가로변 위압감 완화, 통경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가로변으로 저층건물 배치
- ②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
- ③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보전 시)을 조망할 수 있는 통경축 확보
- ④ 건축물의 외관 색채는 [별표1]에 따른 색채계획 적용

#### 제 7 조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보전)

- ①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건축자산 보전 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보전이 필요한 건축물 등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 ②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주변으로 녹지 전이공간을 설정하여 신축 건물에 의해 왜소화되지 않도록 하고, 주출입구나 통경축, 보행축 등에서 조망했을 때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뒤편으로 녹지 실루엣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목식재 중심으로 식재 (녹지 전이공간에는 휴게공간, 보행로 등을 둘 수 있음)

#### 제 8 조 (건축한계선)

- ①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지상부 외벽면(「건축법」 제2조에 의한 건축물의 정의에 포함되는 시설물 포함, 이하 동일)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선으로 중로2-6호선변은 2m, 소로1-54호선변은 2m의 건축한계선을 설정
- ② 보전이 필요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건축한계선 적용 제외

#### 제 9 조 (경관)

- 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하고, 사업지구 내 건축물로 인하여 일조장애, 바람길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계획(높이 및 밀도, 통경축 확보 등)을 수립
- ② 특별계획구역 2, 3과 연계하여 해양산책로~북성포구~만석어린이공원~화도진공원을 잇는 녹지축 형성을 위해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 및 보행동선계획 수립
- 공원 및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 계획 시 도로 결절부 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공원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

- 중로2-6호선, 소로1-54호선을 주요 동선축으로 설정하고 주요 동선축과 만석어린이공원, 대지 내 새로이 설치되는 공원 및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와 연계되도록 동선계획 수립
- ③ 대지 내 조경시설의 배치 시 공원, 공개공지, 전면공지 등의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
- ④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역사 문화경관 관리권역 가이드라인 ③-1-1~5-1-4(근대역사·문화자원의 경관가치보전 및 강화, 역사·문화자원과의 경관 연계성 강화를 통한지역 경관 재생, 대표 역사·문화 자원 중심의 가로체계 개선유도)를 준용한 경관계획 수립

#### 제 10 조 (환경친화적 건축물)

① 환경친화적 건축물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의 적용을 권장

구 분	계획내용
자연지반 보존	• 대지 내 건축부지를 제외한 지역을 흙, 자갈, 모래, 잔디 등의 자연재료 또는 아스콘 등의 투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조성
옥상녹화	• 계단탑 및 설비 면적을 제외한 옥상공간에 「건축법」,「건축조례」에 따라 녹지 공간을 보완하도록 권장
중수도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사용량의 10%이상을 재사용 할 수 있 도록 권장
빗물이용 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
녹색주차장	• 녹색주차장(잔디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되 잔디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경우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주차장 설치
신재생 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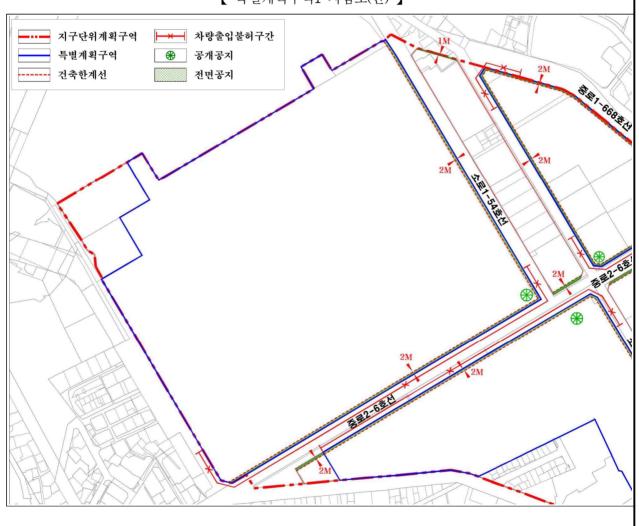
#### 제 11 조 (교통처리)

- ①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대지 내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② 공공시설 조성 시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별도의 전용 진출입 동선 확보
- ③ 대상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소로1-54호선 3m 추가 확보
- ④ 버스정차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로2-6호선변으로 버스베이 1개소 이상 설치
- ⑤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 대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적용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

#### 제 12 조 (특별계획구역의 운용)

- 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지침을 기준으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수행
- ③ 상기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후 결정
- ③ 특별계획구역 지정 후 5년 이내 세부개발계획이 미 수립 되거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경우 해제를 원칙으로 하며,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 【 특별계획구역1 지침도(안) 】



#### 제 2 장 "특별계획구역 2" 계획지침

#### 제 1 조 (개발방향)

- ① 주거와 근린생활시설 기능을 갖춘 복합개발로 도시발전 방안 마련
- ② 친환경적인 개발과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시설을 확보하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 제 2 조 (용도지역)

① 대상지는 현재 일반공업지역이나 기본계획 상 주거용지로 반영된 지역으로 세부개발계획수립 시 사전협상을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검토

#### 제 3 조 (공공시설 제공비율 등)

- ①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공공시설의 종류, 제공방식, 제공비율을 결정
- ② 공공시설의 종류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점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원, 공영주차장, 공공문화시설 등 지역 내 부족한 생활 SOC시설을 제공
- ③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은 공공시설 제공비율에서 제외

####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 제 4 조 (건축물의 용도)

① 특별계획구역의 건축물 용도는 세부개발계획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허용용도를 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도	허용용도	<ul> <li>「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건축물</li> <li>공동주택 및 부대시설</li> <li>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li> <li>노유자시설</li> <li>문화 및 집회시설</li> <li>판매시설</li> <li>업무시설</li> <li>의료시설</li> <li>교육연구시설</li> </ul>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

#### 제 5 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4조 및 제65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시 결정

구 분	계 획 내 용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공동주택 개발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 210%, 상한용적률 250% 적용)
높 이	세부개발계획 시 결정

#### 제 6 조 (배치 및 형태)

- ① 가로변 위압감 완화, 통경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가로변으로 저층건물 배치
- ②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
- ③ 건축물의 외관 색채는 [별표1]에 따른 색채계획 적용

#### 제 7 조 (건축한계선)

①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지상부 외벽면(「건축법」 제2조에 의한 건축물의 정의에 포함되는 시설물 포함, 이하 동일)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선으로 중로1-668호선, 중로2-6호선, 소로1-53호선 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을 설정

#### 제 8 조 (경관)

- 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하고, 사업지구 내 건축물로 인하여 일조장애, 바람길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계획(높이 및 밀도, 통경축 확보 등)을 수립
- ② 특별계획구역 2, 3과 연계하여 해양산책로~북성포구~만석어린이공원~화도진공원을 잇는 녹지축 형성을 위해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 및 보행동선계획 수립
- 공원 및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 계획 시 도로 결절부 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공원시 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
- 중로2-6호선, 소로1-54호선을 주요 동선축으로 설정하고 주요 동선축과 만석어린이공원, 대지 내 새로이 설치되는 공원 및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와 연계되도록 동선계획 수립
- ③ 대지 내 조경시설의 배치 시 공원, 공개공지, 전면공지 등의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
- ④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역사 문화경관 관리권역 가이드라인 ③-1-1~5-1-4 (근대 역사·문화자원의 경관가치보전 및 강화, 역사·문화자원과의 경관 연계성 강화를 통한 지역 경관 재생, 대표 역사·문화 자원 중심의 가로체계 개선유도)를 준용한 경관계획수립

#### 제 9 조 (환경친화적 건축물)

① 환경친화적 건축물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의 적용을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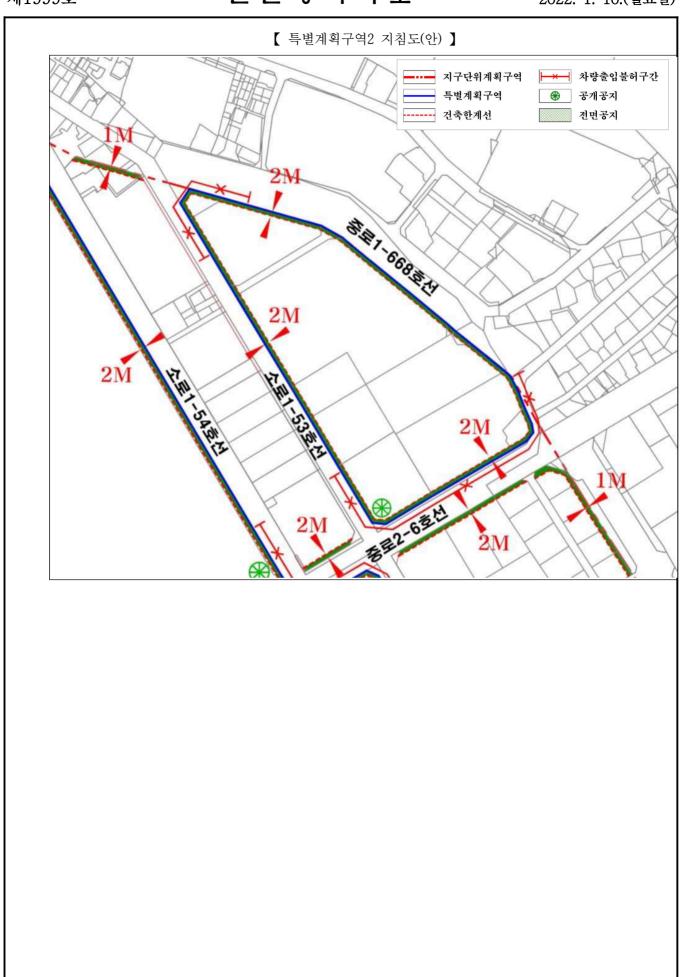
구 분	계획내용
자연지반 보존	• 대지 내 건축부지를 제외한 지역을 흙, 자갈, 모래, 잔디 등의 자연재료 또는 아스콘 등의 투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조성
옥상녹화	• 계단탑 및 설비 면적을 제외한 옥상공간에 「건축법」,「건축조례」에 따라 녹지 공간을 보완하도록 권장
중수도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사용량의 10%이상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권장
빗물이용 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
녹색주차장	• 녹색주차장(잔디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되 잔디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경우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주차장 설치
신재생 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권장

#### 제 10 조 (교통처리)

- ①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대지 내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② 공공시설 조성 시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별도의 전용 진출입 동선 확보
- ③ 버스정차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로1-668호선변으로 버스베이 1개소 이상 설치
- ④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 대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적용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 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

#### 제 12 조 (특별계획구역의 운용)

- 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지침을 기준으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수행
- ② 세부개발계획은 대상지내 이해관계인과 원활한 협의(동의)를 통해 실현가능하도록 수립
- ③ 상기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후 결정
- ④ 특별계획구역 지정 후 3년 이내 세부개발계획이 미 수립 되거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경우 해제를 워칙으로 하며,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 제 3 장 "특별계획구역3" 계획지침

#### 제 1 조 (개발방향)

- ① 주거와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기능을 갖춘 복합개발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의 보전 및 활용방안 모색을 통한 도시의 역사성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과 보전의 균형 있는 도시발전 방안 마련
- ② 친환경적인 개발과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시설을 확보하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 제 2 조 (용도지역)

① 대상지는 현재 준공업지역이나 기본계획 상 주거용지로 반영된 지역으로 세부개발계획수립 시 사전협상을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검토

#### 제 3 조 (공공시설 제공비율 등)

- ①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공공시설의 종류, 제공방식, 제공비율을 결정
- ② 공공시설의 종류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점의 여건을 고려하여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공원, 공영주차장, 공공문화시설 등 지역 내 부족한 생활 SOC시설을 제공
- ③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은 공공시설 제공비율에서 제외
- ④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인접한 저층주거지역과 연접한 구간에 기반시설(도로) 등의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편의 증대를 위한 공공기여 방안 마련

####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 제 4 조 (건축물의 용도)

① 특별계획구역의 건축물 용도는 세부개발계획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허용용도를 결정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	허용용도	<ul> <li>「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중 다음의 건축물</li> <li>공동주택 및 부대시설</li> <li>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li> <li>노유자시설</li> <li>문화 및 집회시설</li> <li>판매시설</li> <li>업무시설</li> <li>의료시설</li> <li>교육연구시설</li> </ul>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

#### 제 5 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4조 및 제65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시 결정

구 분	계 획 내 용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공동주택 개발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 210%, 상한용적률 250% 적용)
높 이	세부개발계획 시 결정

#### 제 6 조 (배치 및 형태)

- ① 가로변 위압감 완화, 통경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가로변으로 저층건물 배치
- ②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
- ③ 역사·문화자원(보전 시)을 조망할 수 있는 통경축 확보
- ④ 건축물의 외관 색채는 [별표1]에 따른 색채계획 적용

#### 제 7 조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보전)

- ①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조례」,「인천광역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건축자산 보전 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등 관련 규정 에 따라 지역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보전이 필요한 건축물 등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 ②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주변으로 녹지 전이공간을 설정하여 신축 건물에 의해 왜소화되지 않도록 하고, 주출입구나 통경축, 보행축 등에서 조망했을 때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뒤편으로 녹지 실루엣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목식재 중심으로 식재 (녹지 전이공간에는 휴게공간, 보행로 등을 둘 수 있음.)

#### 제 8 조 (건축한계선)

- ①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지상부 외벽면(건축법 제2조에 의한 건축물의 정의에 포함되는 시설물 포함, 이하 동일)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선으로 중로2-6호선변은 2m, 소로1-2호선변은 2m의 건축한계선을 설정
- ② 보전이 필요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건축한계선 적용 제외

#### 제 9 조 (경관)

- 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하고, 사업지구 내 건축물로 인하여 일조장애, 바람길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계획(높이 및 밀도, 통경축 확보 등)을 수립
- ② 특별계획구역 1, 2와 연계하여 해양산책로~북성포구~만석어린이공원~화도진공원을 잇는 녹지축 형성을 위한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 및 보행동선계획 수립
- 공원 및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 계획 시 도로 결절부 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공원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

- 중로2-6호선, 소로1-2호선을 주요 동선축으로 설정하고 주요 동선축과 대지 내 새로이 설치되는 공원 및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와 연계되도록 동선계획 수립
- ③ 조경면적의 배치 시 공원, 공개공지, 전면공지등의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
- ④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역사 문화경관 관리권역 가이드라인 ③-1-1~5-1-4 (근대 역사·문화자원의 경관가치보전 및 강화, 역사·문화자원과의 경관 연계성 강화를 통한 지역 경관 재생, 대표 역사·문화 자원 중심의 가로체계 개선유도)를 준용한 경관 계획 수립

#### 제 10 조 (환경친화적 건축물)

① 환경친화적 건축물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의 적용을 권장

구 분	계 획 내 용		
자연지반 보존	• 대지 내 건축부지를 제외한 지역을 흙, 자갈, 모래, 잔디 등의 자연재료 또는 아스콘 등의 투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조성		
옥상녹화	• 계단탑 및 설비 면적을 제외한 옥상공간에 「건축법」,「건축조례」에 따라 녹지 공간을 보완하도록 권장		
중수도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사용량의 10%이상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권장		
빗물이용 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		
녹색주차장	• 녹색주차장(잔디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되 잔디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경우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주차장 설치		
신재생 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그 이거 거수도 에너지 이유는을 이수의 뭐사		

#### 제 11 조 (교통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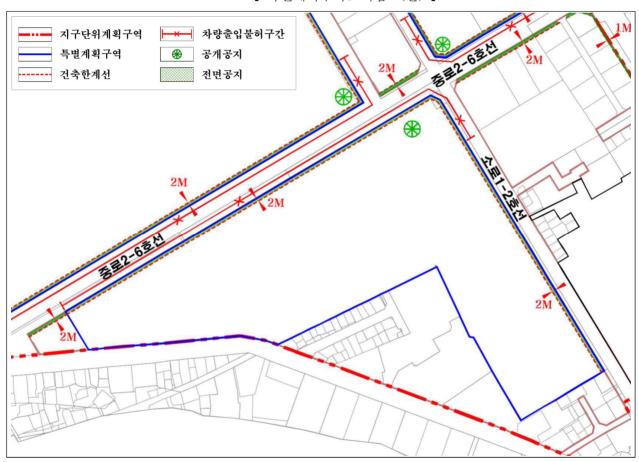
- ①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대지 내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② 공공시설 조성 시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별도의 전용 진출입 동선 확보
- ③ 버스정차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로2-6호선변으로 버스베이 1개소 이상 설치
- ④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 대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적용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 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

#### 제 12 조 (특별계획구역의 운용)

제1999호

- 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지침을 기준으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수행
- ② 상기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후 결정
- ③ 특별계획구역 지정 후 5년 이내 세부개발계획이 미 수립 되거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경우 해제를 원칙으로 하며,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 【 특별계획구역3 지침도(안) 】



# 【별표1】건축물의 색채

구 분	계 획 내 용		
기본방향	•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역사문화경관 관리권역 가이드라인 적용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2018 역사문화권역 가이드라인 적용		
공통	<ul> <li>도장을 통한 색채표현보다는 자연소재 자체를 통한 외부색채표현 권장</li> <li>옥상설비, 발코니 등 부속설비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 외장의 일부로 처리하거나 식재 등으로 차폐</li> <li>건축물 외부마감 재질은 주변 건축물의 분위기와 조화를 고려하며, 지나치게 현대적인 이미지의 소재(투명하거나 고반사 또는 빛을 내는 소재)는 지양</li> <li>외부색채는 차분하고 자연적인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문화자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발광, 원색, 고채도, 고명도 색상 사용 지양. 단 강조색은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li> </ul>		
일반건축물 (단독주택, 근생 등)	<ul> <li>난색계열의 색상을 적용하며</li> <li>저명도, 저채도의 연한 색조를 사용</li> <li>주거지의 안정감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일계열의 색상을 적용</li> </ul>		
공동주택	<ul> <li>난색계열의 색상을 적용</li> <li>수직적 구조로 인한 위압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아늑하고 편안하며 밝은 저채도의 색채적용 및 수평적 안정감을 줄수 있는 색채 분절효과를 고려한 색채계획</li> <li>동별간 유사색에 의한 색상변화를 연출함으로써 동일, 유사조화 적용</li> <li>강조색을 적용하여 변화감을 부여하는 면·선적 요소 적용</li> <li>하단부는 보행자의 관점에서의 시각적 변화감을 유도하여 재료 고유의 색을 이용하여 다양한 색채를 적용</li> </ul>		
공업용 건축물	• 저명도, 저채도의 색상을 적용 • 안정감있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난색, 무채색 계열을 주조색으로 사용한 배색으로 안정감 부여 • 지붕색 - 벽면색채보다 어두운 색상으로 적용하며 패턴적용은 지양 • 입면색상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중명도, 저채도의 색상을 권장 - 패턴은 벽면색채와 동일색 또는 원색을 제외한 포인트 색상 적용		

#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4호

# 도시관리계획(화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화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a** 032-440-4623), 동구청(도시정비과, **a** 032-770-621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 10.

### 인 천 광 역 시 장

####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화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는 사항임.

### 2. 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5-5번지 일원

### 3.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7 H	도면	7 64 74	دا دا		n)		
구분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신설	-	화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구 화수동 5-5번지 일원	-	증) 74,169	74,169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 정 사 유
신설	화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구 화수동 5-5번지 일원	74,16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과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지구 단위계획 수립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5호

# 도시관리계획(송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송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a** 032-440-4623), 동구청(도시 정비과, **a** 032-770-621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 10.

### 인 천 광 역 시 장

####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송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사항임.

#### 2. 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44번지 일원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ユ坦	도면 구분 표시 구역명 번호		위치	면 적(㎡)				
丁亚			ガベ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3	2014인천아시아경기 대회 송림경기장 지구단위계획 구역	동구 송림동 344번지	28,994.5	중)218,394.5	247,389		
변경	_	송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구 송림동 344번지 일원	20,001.0	0,210,00 110	211,00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변경	송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구 송림동 344번지 일원	247,389	•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의 소규모필지 분할 등으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공업 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송림경기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장하여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함.

-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구성비(%)	비고		
	T 世	기정	기정 변경 변경후		十78円(%)	비고
합계		247,389.0	-	247,389.0	100.0	
주거지역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26.0	0.1	
	소 계	247,363.0	-	247,363.0	99.9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218,368.5	-	218,368.5	88.2	
	준공업지역	28,994.5	-	28,994.5	11.7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① 교통시설
- 총괄

		합계	1	1 류				2 류	<del> </del>		3 류	_
구분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5	1,143 (910)	18,853.5	2	591 (550)	13,292.5	3	552 (360)	5,561.0	_	_	_
광로	1	-	_	_	_	ı	_	ı	_	-	-	-
대로	_	-	_	_	_	-	_	-	_	_	_	_
중로	3	955 (722)	17,064.5	1	483 (442)	12,212.5	2	472 (280)	4,852.0	_	-	-
소로	2	188 (188)	1,789.0	1	108 (108)	1,080.0	1	80 (80)	709.0	-	-	_

주) 괄호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 도로 결정(변경)조서

¬ н		규		모	-1 L	연장	-1 Zl	Z 7J	사용	최초	ען די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1	479	20~25	국지 도로	483 (442)	광3-2	대2-1	일반 도로	인천시 동고 제2012-37호 (2012.07.06.)	
변경	중로	1	479	25	국지 도로	483 (442)	광3-2	대2-1	일반 도로	인천시 동고 제2012-37호 (2012.07.06.)	폭원 확장
기정	중로	2	126	15	국지 도로	165 (165)	광2-4	소2-1	일반 도로	건고제1275호 (1964.12.17.)	
기정	중로	2	129	15	국지 도로	307 (120)	중1-479	대2-1	일반 도로	인고 제1999-56호 (1999.05.15.)	
변경	중로	2	129	15	국지 도로	302 (115)	중1-479	대2-1	일반 도로	인고 제1999-56호 (1999.05.15.)	노선 축소
신설	소로	1	13	10	국지 도로	108 (108)	중1-479	송림11-9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80 (80)	송림11-21	송림11-20	일반 도로	1964.12.17.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80 (80)	중2-126	송림동 11-28	일반 도로	1964.12.17.	기점 종점 변경

주) 괄호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중로1-479	중로1-479	• 폭원 확장 - 폭원: 20~25m → 25m	• 현황을 고려하여 국·공유지를 편입 후 폭원 확장
중로2-129	중로2-129	• 노선 축소 - 연장: 307m → 302m	• 중로1-479호선 변경에 따른 노선 축소
-	소로1-13	• 노선 신설 - 폭원: 10m, 연장: 108m	• 현황 도로로써 노선 신설
소로2-1	소로2-1	<ul> <li>기점 및 종점 변경</li> <li>기점: 송림11-21 → 중2-126</li> <li>종점: 송림11-20 → 송림동 11-28</li> </ul>	• 현황에 부합하도록 기점 및 종점 변경

#### ② 공공문화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조서

72	도면	.1.11-1	시설의	A) -1		면적 (m²)		최초	-1-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1	체육시설	배구장	송림동 344번지	28,994.5	-	28,994.5	인고 제2010-389호 (2010.12.20.)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부분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 기정

도면 번호	가구번호	마 쟈(²)	획 지					
번호	가무번호	면적(㎡)	위 치	면 적(㎡)	비고			
Sl	S1	28,994.5	송림동 344번지	28,994.5				

### ○ 변경

	가구	필지			ען די		
번호	면적(m²)	위치	면적(m²)		위치	면적(㎡)	비고
		_	_	Sl	송림동344체	28,994.5	송림체육관
		-	_		계	21,951	
		_	-		송현동2-8장	3,580	
		-	-		송현동2-80장	10,599	
		_	_		송현동2-81잡	2,961	
		_	_		송현동2-82잡	2,256	
		_	_		송현동2-94잡	1,437	
		_	_		송현동2-114잡	801	
		<del>-</del>	_		송림동11-109장 계	317	
		_	_		<u>세</u> 송현동1-11장	27,471 21,325	
		_			중현동1-11경 송현동1-851장	1,893	
		_	_	2	송현동117-2장	560	
					송림동11-108창	3,093	
		_	_		송림동267-2장	600	
		_	_	3	송림동11-28잡	6,942	
		-	_	4	송림동11-100잡	6,134	
		_	_		계	9,307	
		-	_		송림동11-105대	5,829	
		_	_	5	송림동11-107장	1,549	
	100.047.5	_	_		송림동11-137장	1,438	
1		-	-		송림동11-149장	491	
1	168,947.5	송현동1-852장	1,270	_	_	_	
		송림동11-5장	2,843	_	-	_	
		송현동1-857장	542	_	_	_	
		송림동11-110장	285	_	_	ı	
		송현동2-5장	2,638	_	_	_	
		송현동2-113장	67	_	_	-	
		송현동2-66장	2,697	_	-	-	
		송현동2-67장	1,653	_	_	_	
		송현동2-74잡	992	_	_	_	
		송현동2-76잡	165	_	_	_	
		송림동11-32대	843	_	_	<del>-</del>	
		송림동11-39대	1,157	_	_	_	
		송림동11-40대	496	_	_	_	
		송현동1-1장	949	_	_	_	
		송현동1-769도	82	_	_	_	
		송현동1-853장	675	_	_	_	
		송현동1-855장	828	_	_	_	
		송현동1-856도	976	_	_	_	보차혼용통

	가구	필지			획지		, 1)
번호	면적(㎡)	위치	면적(m²)		위치	면적(m²)	비고
		송현동1-858장	369	_	-	_	
		송현동1-859장	264	-	-	-	
		송현동1-860장	748	_	-	-	
		송현동1-861장	437	-	_	-	
		송현동1-862장	264	-	-	_	
		송현동1-863장	305	_	-	_	
		송현동1-864장	437	_	-	-	
		송현동1-865장	339	_	-	_	
		송현동1-866장	340	-	-	-	
		송현동1-870도	29	-	_	_	
		송현동2-43잡	1,653	_	_	_	
		송현동2-68잡	2,644	-	_	_	
		송현동2-69장	4,296	_	_	-	
		송현동2-70잡	1,279	_	_	_	
		송현동2-72주	1,178	_	_	_	
		송현동2-75장	1,322	-	_	-	
		송현동2-79대	331	_	-	_	
,	100 0 45 5	송현동2-93대	993	_	_	-	
1	168,947.5	송현동2-95잡	1,116	_	-	_	
		송림동11-7도	21	_	_	-	
		송림동11-8잡	471	_	_	_	
		송림동11-9장	1,053	_	_	_	
		송림동11-85장	712	_	_	_	
		송림동11-86장	718	_	-	-	
		송림동11-87장	738	_	_	_	
		송림동11-88장	760	_	-	_	
		송림동11-89장	789	_	-	_	
		송림동11-90잡	314	-	-	_	
		송림동11-92장	992	_	-	-	
		송림동11-94장	311	_	-	-	
		송림동11-104대	1,984	_	-	-	
		송림동11-127장	306	_	-	-	
		송림동11-128대	477	_	_	-	
		송림동11-131장	661	_	-	_	
		송림동11-132도	459	_	-	_	
		송림동11-133장	576	_	_	_	

	가구	필지			획지		n) =
번호	면적(㎡)	위치	면적(㎡)		위치	면적(m²)	비고
		송림동11-134장	576	_	_	_	
		송림동11-135장	710	_	-	-	
		송림동11-138장	710	_	_	_	
		송림동11-140장	928	_	-	-	
		송림동11-141장	463	_	_	_	
		송림동11-142장	507	_	_	_	
		송림동11-143장	265	_	_	_	
		송림동11-144장	335	_	_	_	
		송림동11-145장	667	_	_	_	
		송림동11-146장	331	_	-	_	
		송림동11-147장	190	_	_	_	
		송림동11-148도	1,311	_	-	_	보차혼용통로
		송림동11-151장	281	_	-	_	
		송림동11-152장	660	_	-	_	
		송림동11-153장	335	_	_	_	
		송림동11-154장	335	_	-	_	
		송림동11-155장	330	_	_	_	
1	168,947.5	송림동11-156장	330	_	-	_	
1	100,011.0	송림동11-157장	421	_	-	_	
		송림동11-158장	332	_	-	_	
		송림동11-170장	478	_	_	_	
		송림동11-171잡	815	_	-	_	
		송림동11-172잡	2,498	_	-	_	
		송림동11-175장	524	_	-	_	
		송림동11-176잡	331	_	-	_	
		송림동11-177잡	378	_	-	_	
		송림동11-178잡	410	_	-	_	
		송림동11-179잡	385	_	-	_	보차혼용통로
		송림동11-181잡	404	_	-	_	
		송림동11-182장	855	_	-	_	
		송림동11-184잡	430	_	-	_	
		송림동11-185잡	436	_	-	_	
		송림동11-186잡	431	_	-	_	
		송림동11-187잡	428	_	-	_	
		송림동11-188잡	426	_	-	_	
		송림동268도	58	_	_	_	

가구		필지			획지		
번호	면적(㎡)	위치	면적(m²)		위치	면적(㎡)	비고
		송림동11-112대	849		-	-	
		송림동11-113대	722		_	-	
		송림동11-114대	845		_	-	
		송림동11-115도	994		_	-	
		송림동11-116대	771		_	_	
		송림동11-117대	784		_	-	
		송림동11-118장	3,261	_	_	-	
		송림동11-119대	784		_	-	
		송림동11-120대	816		_	-	
		송림동11-121도	1,027		_	-	
		송림동11-122대	852		_	-	
		송림동11-123대	853		_	-	
		송림동11-124대	860		-	-	
	40,520	_	_	1	계 스키드11 105-W	5,124	
		_	_		송림동11-125대 송림동11-169대	2,245 2,879	
		- 송림동11-161창	943	_	-	2,019	
		송림동11-162도	114	_	_	_	
2		송림동20-8대	1,131	_	_	_	
		송림동20-28대	139	_	_	_	
		송림동11장	1,375	_	_	-	
		송림동11-33대	105	_	-	-	
		송림동11-35대	167	_	-	-	
		송림동11-36대	50	-	-	-	
		송림동11-37도	251	-	_	_	
		송림동11-38대	30	-	_	_	
		송림동11-43장	1,083	-	_	_	
		송림동11-44장	3,507	ı	-	-	
		송림동11-45장	765	-	-	_	
		송림동11-46장	805	-	_		
		송림동11-47장	980	_	-	_	
		송림동11-49대	87	_	_	_	
		송림동11-50대	93	_	_	-	

	가구	필지		획지			v)
번호	면적(m²)	위치	면적(m²)		위치	면적(m²)	비고
		송림동11-51대	63	_	-	_	
		송림동11-52대	59	-	_	-	
		송림동11-53대	129	-	_	_	
		송림동11-54대	73	-	_	-	
		송림동11-55대	52	-	_	_	
		송림동11-59대	81	-	_	-	
		송림동11-60대	95	_	_	_	
0	40.500	송림동11-61대	95	_	_	-	
2	40,520	송림동11-62대	122	-	-	-	
		송림동11-63대	56	-	_	_	
		송림동11-64대	46	-	-	_	
		송림동11-65대	40	-	_	_	
		송림동11-66대	77	-	_	_	
		송림동11-67대	83	-	_	_	
		송림동11-68대	52	_	_	-	
		송림동11-69대	145	-	_	_	
		송림동8-10잡	1,051	_	_	_	
		송림동8-22대	1,008	-	_	_	
		송림동8-367장	512	_	_	_	
		송림동8-368장	479	-	-	_	
		송림동8-369대	661	-	_	_	
		송림동8-370대	248	-	_	-	
3	19,068	송림동8-373대	1,379	-	_	_	
		송림동8-382잡	317	-	_	_	
		송림동8-383잡	294	-	_	-	
		송림동8-392대	397	-	_	-	
		송림동8-394대	96	-	_	-	
		송림동8-395대	141	_	_	_	
		송림동8-396대	155	_	_	_	

	가구	필지		획지			ען די
번호	면적(㎡)	위치	면적(㎡)		위치	면적(㎡)	비고
		송림동8-397대	93	-	_	_	
		송림동8-398대	122	-	_	-	
		송림동8-400대	203	-	_	-	
		송림동8-441장	696	-	-	-	
		송림동8-619대	8	-	-	-	
		송림동8-745대	3,103	-	-	-	
		송림동8-746장	668	-	-	-	
3	19,068	송림동8-747장	822	-	-	-	
		송림동8-749대	388	-	-	-	
		송림동8-842장	1,011	_	-	-	
		송림동8-843장	994	-	-	-	
		송림동8-844장	523	_	-	-	
		송림동8-845장	659	-	-	-	
		송림동8-846장	729	-	-	-	
		송림동8-847장	2,311	-	-	-	

### ○ 필지분할 최소면적

구 분	필지분할 최소면적	비고
필지분할 최소면적	900 m²	- 토지 신규 분할 시 적용 - 세장비 1:3미만

- ※ 필지분할 최소면적(900㎡, 세장비1:3미만)에 미달하는 기존 대지는 신규 분할이 불가하며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만 가능
- ※ 필지분할 최소면적의 설정 근거
  - · 소규모 분할 방지 및 적정한 면적 규모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의3에 따른 산업용지 최소분할 기준인 900㎡ 적용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조서
  - 송림체육관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허용	<ul> <li>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li> <li>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1조에 따른 관중석 및 관리시설과 편의시설</li> <li>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1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수익시설</li> </ul>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피	fl 율	• 70% 이하
	용건	석률	• 400% 이하
	높 이		• 40m 이하
S1 (송림 체육관)	배치		<ul> <li>진입데크, 주차장 및 주차출입구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로 계획</li> <li>경기장과 수익시설을 긴밀하게 연계하는 데크와 외부공간계획</li> <li>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시각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li> <li>주변환경 및 시기별 이용방법을 고려한 유동적인 경기장 계획</li> </ul>
	쳥	태	<ul> <li>인천의 중심 랜드마크로서의 아이덴티티 확보를 위한 창조적 건축물 계획</li> <li>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무단차 계획</li> <li>색채 및 외벽</li> <li>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고려</li> <li>건물의 외벽면 실외기 노출을 금지</li> <li>담장 설치</li> <li>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원칙으로 금지 단, 부득이하게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 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li> </ul>
	색	채	_
	건축형	한계선	-

### ○ 일반공업지역(신설)

도면 번호	위치 (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양	·허	<ul> <li>「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42조에 따라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단, 다음의 건축물은 제외)</li> <li>- 종교시설 중 봉안당</li> <li>-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li> <li>-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는 제외]</li> <li>-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li> <li>- 자원순환 관련시설</li> <li>- 교정 및 군사시설</li> <li>- 발전시설</li> <li>- 장례시설</li> <li>- 야영장 시설</li> </ul>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	계율	• 70% 이하
		용조	덕률	• 350% 이하
Al	가구1 가구2 가구3	노	0	• 60m 이하 (단, 창고시설은 40m 이하) - 건축물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창고시설은 40m를 초과할 수 없음.
	,	배	<b>え</b> ]	<ul> <li>건축물의 단면이 도로와 접하도록 배치</li> <li>가로변 및 인접 대지에서 창고 및 기타 부대시설의 직접적인 노출 지양</li> <li>공개공지 위치 권장(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결정도면 참고)</li> </ul>
		쳥	태	<ul> <li>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 건축물과 조화 고려</li> <li>외벽은 샌드위치판넬의 단조로움을 지양하고 무늬와 색채를 가진 외장재 권장</li> <li>건축물 재료 및 입면을 다양화하여 외관 개선 권장</li> <li>주요 구조부 및 지붕 · 외벽은 내화 구조를 권장</li> <li>간판, 광고판, 지붕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3m 이상 공작물의 주요부는 불연재료를 권장</li> </ul>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 1]에 따름
		건축형	한계선	<ul> <li>중로1-479호선변: 2m</li> <li>소로1-13호선변: 1m</li> <li>보차혼용통로변: 2~3m (결정도면 참고)</li> </ul>

주) 관련법규나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서의 내용이 관련법규나 조례와 상이한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름.

-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송림체육관

도면번호	계획 내용
S1	<ul> <li>환경관리 계획</li> <li>지나친 포장으로 인한 도시열심현상, 도시형 홍수 발생 등을 저감하고, 토양의 빗물 저장능력을 제고하여 도시생태계의 생물 서식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연지반을 확보</li> <li>→ 지층부의 바닥이나 비건폐지를 흙, 자갈, 모래, 잔디 등의 자연재료 또는 투수군, 아스콘 등의 투수성 재료로 조성 권장</li> <li>건축자재는 용수절약형 기기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자재(환경마크 제품) 사용을 권장</li> <li>- 벳물이용시설을 설치 권장[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관리방안 등은 수도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li> <li>• 교통처리계획</li> <li>- 대지의 진출입국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li> <li>-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도록 함.</li> <li>- 횡단보도</li> <li>→ 장애자를 위해 경계석 턱을 낮추고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형 보도블럭을 설치</li> <li>- 차량이 일정한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으로 과속방지시설 설치</li> <li>• 경관계획</li> <li>- 일체성 있는 도시경관형성을 위하여 연접한 건축물 및 녹지와의 상호조화를 도모하고 위압감과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적 배려 도모</li> <li>-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의 장소성을 배려한 건축물 계획</li> <li>- 주변 공원 및 하천과 보행동선을 연계시켜 일체화된 녹지공간 및 경관 형성</li> <li>• 옥외광고물</li> <li>-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기준 적용</li> </ul>

### ○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ul> <li>보도형 전면공지</li> <li>보도와 접하는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보도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li> <li>중로 1-479호선변: 2m</li> <li>차도형 전면공지</li> <li>보도가 없는 도로에 접하는 전면공지는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차도 및 보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li> <li>소로1-13호선변: 1m</li> <li>보차혼용통로변: 2~3m</li> <li>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하여야 함.</li> </ul>	
전면공지	<ul> <li>전면공지 내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등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li> <li>차량 진출입 금지를 위해 볼라드돌의자 설치 및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li> <li>허가권자가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때 등 허가권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li> <li>포장패턴은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포장</li> <li>전면공지는 대지면적에 산입되며,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 시 사업시행자가 이를 시행함.</li> </ul>	
	• 공개공지 확보대상 및 규모	
공개공지	<ul> <li>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 설치방식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36조 규정을 적용함.</li> <li>공개공지는 사업시행자가 확보하여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li> <li>적정위치</li> <li>설치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곳에 우선 조성하여야 함.(권장)</li> <li>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에 접할 수 있도록 함.</li> <li>인접대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녹지축, 주요도로 및 주 보행통로 변에 설치하여 시민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함.</li> <li>주변지역과의 연계성,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휴게 공간의 연속성 및 이용성을 증진시키도록 함.</li> <li>조성형태</li> <li>진출입부는 단차가 없도록 구성하고 레벨차가 큰 경우 경사면 설치를 통해 보행동선을 유도하도록 함.</li> <li>공개공지 내 설치하는 시설물은 기존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디자인하며,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보행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li> <li>주변 건축물 및 보행공간과 조화로운 공간을 디자인하며, 과도한 색채 및 형태는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함께 사용하도록 함.</li> <li>보행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조경·벤치·파고라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li> </ul>	전 구역
조경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함 야간 이용 시 우범지대가 되지 않고 자연적인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디자인으로 계획하며 우범방지 및 사용편의를 위해 CCTV, 조명 등을 설치하여야 함 시설물 디자인 및 색채 등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기준을 적용함 필로티형식의 공개공지 설치는 금지함. • 건축법 제42조,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2조에 따른 조경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 • 조경면적의 배치 시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할 것	전 구역

###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 진·출입로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대지 내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 구역
부설 주차장	<ul> <li>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li> <li>-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 대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적용</li> <li>-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li> </ul>	전 구역
보차혼용 통로	<ul> <li>조성기준</li> <li>보도나 혹은 차도와 단차가 없어야 하며,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될 경우에도 단차가 없어야 함.</li> <li>보차혼용통로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단, 맨홀 설치 등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li> <li>보차혼용통로가 지정된 대지는 24시간 보행자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계획함.</li> <li>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통행하는 시설로 바닥 패턴 및 포장재의 차별화를 통해 차량의 감속을 유도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함.</li> <li>대지 내 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하고 지상부가 오픈된 개방형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li> <li>조성주체</li> <li>보차혼용통로의 조성은 각각의 건축이 행해지는 시점에 사업시행자가 조성함.</li> </ul>	전구역

### ○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자연지반	• 대지 내 건축부지를 제외한 지역을 흙, 자갈, 모래, 잔디 등의 자연재료 또는	전
보존	아스콘 등의 투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조성하도록 권장	구역
옥상녹화	• 계단탑 및 설비 면적을 제외한 옥상공간에 「건축법」,「건축조례」에 따라 녹지	전
7074	공간을 보완하도록 권장	구역
중수도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사용량의 10%이상을	전
872	재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	구역
빗물이용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	전
시설	• [돌의 세약상 속신 및 시원에 선안 입팔] 에 따른 첫돌의상시설의 설치를 현장	구역
녹색주차장	• 녹색주차장(잔디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되 잔디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경우	전
ラグナイグ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주차장 설치 권장	구역
신재생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	전
에너지	할 것을 권장	구역
건축물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등	전
에너지효율	관련 법령에 의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권장	구역
등급 인증		' '

###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옥외광고물	<ul> <li>옥외광고물</li> <li>「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기준 적용</li> <li>부착시설물</li> <li>문패, 주소판, 우편함 등 정면에 노출되는 부착 시설의 경우 주변과 어울리는 재료와 색채 사용</li> <li>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모든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 또는 대문 등 통행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지의 지번 표시</li> </ul>	전 구역
담장 및 옹벽의 설치	• 담장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도록 함.(설치 시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 • 옹벽의 조성은 가급적 지양함.(설치 시 자연적 소재사용 및 주변과 조화도모)	전 구역
야간경관	<ul> <li>기능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고 편리성과 쾌적성을 고려된 야간환경 형성</li> <li>건축물의 형성규모, 가로의 특성(폭, 길이 등), 시설물의 현황 등 외부적 형태를 다양한 측면으로 반영하여 단지의 특성에 따른 야간경관 연출</li> <li>인접지에 대한 빛공해를 최소화하며 편안하고 정연한 빛 연출</li> <li>야간공동화 방지를 위해 가로 및 건축 외부공간 시설물에 경관조명 권장</li> <li>시설물의 특성상 야간에 실내조명이 어려운 시설물의 경우 야간 이용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외부공간 및 인접가로에 경관조명 연출</li> </ul>	전 구역

#### ○ 범죄예방 환경설계

구 분		계획 내용
적용대상	판매점),	택(다세대,연립,아파트),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24시간편의점 등 일용품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
	접근 통제	<ul> <li>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다만, 구역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 정보처리기,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 설치</li> <li>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출입이 용이하도록 조경, 조명, 안내판 등의 사용을 고려</li> <li>건축물의 외벽에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야 함.</li> </ul>
	영역성 확보	<ul> <li>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위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li> <li>공간의 경계부분은 바닥에 단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 등을 달리 하는 등 공간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 보도 등을 설치</li> </ul>
설계기준	활동의 활성화	<ul> <li>외부 공간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시설(운동시설, 상점, 휴게시설, 놀이터, 출입구)과 연계</li> <li>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시설의 종류를 선정 및 배치계획 수립</li> <li>유해 용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li> </ul>
	조경	<ul> <li>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li> <li>건축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내로 침입할 수 없도록 계획</li> </ul>
	조명	<ul> <li>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는 사물에 대한 인식을 쉽게 하고 눈부심 방지 등을 설치하되,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li> <li>높은 조도의 조명보다 낮은 조도의 조명을 많이 설치</li> <li>유입공간, 표지판, 출입구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사람들을 인도</li> </ul>

### ○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동법 시행령」제25조 제4항 제1호 부터 제14호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과「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4항 제9호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계 획 내 용	비고
• 대지 내 공지의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 차량출입구의 변경(단, 공동개발 등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및 Bus-bay, 가감속차로 확보	

### 【별표1】건축물의 색채

구 분	계획내용
기본방향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2018 신도시권역 가이드라인 적용
일반건축물	<ul> <li>상업용 건축물은 맑은 유리 또는 저반사 유리의 사용을 권장하며 강한 원색 계열의 색 유리사용은 금지(단, 1층의 경우 맑은 유리를 사용하여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함.)</li> <li>차양이나 배너, 광고, 사인물이 다양하게 설치될 가능성을 염두하여 색채계획</li> <li>차양의 색은 해당 건축물의 외장재와 유사한 색상의 채도 변화를 적용할 것을 권장</li> </ul>
공업 <del>용</del> 건축물	<ul> <li>고명도의 밝은 색상을 권장</li> <li>위험요소가 많은 공업용 건축물 내 주의 및 안전을 필요로 하는 곳에 특화강조색을 적용함.</li> <li>깨끗하고 산뜻한 느낌을 주는 밝은 무채색 계열을 주조색으로 사용한 배색으로 개방감 있는 산업단지 색채경관 연출</li> <li>건물면적이 넓은 경우 색상팔레트 범위안에서 5배색까지 적용 가능함.</li> <li>지붕색</li> <li>벽면색채와 동일 또는 어두운 색상으로 적용하며 무분별한 패턴적용은 지양</li> <li>입면색상</li> <li>재료의 특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재요마감은 권장소재 및 지정색상 범위 내 소재를 사용하되 협의에 따라 색상 변경이 가능함.</li> <li>하단부에는 상단부 보다 어두운 색상을 적용하여 안정감 부여</li> <li>패턴은 벽면색채와 동일색 또는 포인트 색상 적용함.</li> </ul>

###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6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1713), 남동구 도시 재생과(®032-453-295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 10.

### 인 천 광 역 시 장

####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2.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00-161번지 일원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 정	면 적(㎡) 변경	)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111 -al	TLX	 만수하수	서창동				2000.9.28.	
변경	_	종말처리장	500-161 일원	112,273	감) 589	111,684	(인천시 고시 제2000-164호)	

###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만수하수종말 처리장	○ 면적감소 : 589㎡ -(기정) 112,273㎡ →(변경) 111,684㎡	○ 지적통합 및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정정(감 589㎡)

###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7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15호선, 대1-14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3-15호선, 대1-14호선, 사업명: 이승훈 역사공원 주변도로 확장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제 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10.

### 인 천 광 역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O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659-8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도로: 광로3-15, 대로1-14호선)사업
- O 명칭: 이승훈 역사공원 주변도로 확장공사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광로3-15호선 무네미로 (L)=260.0m, (B)=7.0m, 2차로 확장
- 대로1-14호선 백범로 (L)=150.0m, (B)=3.25m, 1차로 확장

#### 4. 시행자 성명 및 주소

O 성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2022.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과 같음.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O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23), 인천광역시 종합건 설본부(토목부, ☎032-440-5185),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032-453-2952)

## 용 지 조 서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u></u> 편	 입용지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 m²)	편입면적 ( m² )	성 명	주 소	비고
1	장수동	662-18	도	733	124	인천광역시	-	
2	장수동	산137-8	임	6,075	39	인천광역시	-	
3	장수동	662-15	도	194	194	인천광역시	-	
4	장수동	662-19	도	376	280	인천광역시	-	
5	장수동	산135-3	임	25	25	인천광역시	-	
6	장수동	662-13	도	115	115	인천광역시	-	
7	장수동	산135-1	임	27	25	인천광역시	-	
8	장수동	754	도	2,494	54	국(국토교통부)	-	
9	장수동	662-5	도	409	55	인천광역시	-	
10	장수동	662-11	전	76	76	인천광역시	-	
11	장수동	662-2	전	6	6	인천광역시	-	
12	장수동	727-2	천	199,163	69	국(국토교통부)	-	
13	장수동	662-12	전	107	107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14	장수동	662-3	창	56	56	윤**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	
15	장수동	662-4	답	92	92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장수동)	
16	장수동	661	답	115	115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17	장수동	660-3	창	75	75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18	장수동	660-12	전	208	208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19	장수동	659-15	답	80	8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20	장수동	659-7	답	50	5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21	장수동	659-8	도	10,607	660	인천광역시	_	

이러			편	입용지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 m²)	편입면적 ( m² )	성 명	주 소	비고
22	장수동	688-3	도	5,547	159	국(국토교통부)	-	
23	장수동	688-6	도	1,171	394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24	장수동	666	수	82,223	126	인천광역시	-	
25	장수동	762-1	도	275	26	국(농림축산식품부)	-	
26	장수동	695-3	도	247	247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27	장수동	695-4	도	2,601	258	국(국토교통부)	-	
28	장수동	727-1	천	1	1	국(국토교통부)	-	
29	장수동	698-13	도	29	29	인천광역시	-	
30	장수동	698-1	답	7	7	인천광역시	-	
31	장수동	727-37	천	2,267	79	국(국토교통부)	-	
32	장수동	659-3	답	30	30	김**외7인	경기도군포시산 본천로**,***동 ***호 (산본동,을지아 파트)	
33	장수동	659-12	답	89	52	김**외7인	경기도군포시산 본천로**,***동 ***호 (산본동,을지아 파트)	
34	장수동	660-10	전	111	95	인천광역시	-	
35	장수동	660-2	전	176	176	인천광역시	-	
36	장수동	660-13	전	9	9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 (장수동)	
37	장수동	659-2	답	41	41	인천광역시	-	
38	장수동	659-8	도	10,607	182	인천광역시	-	
39	장수동	659-16	답	124	124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 (장수동)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8호

### 도로구역(광역시도22호선)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광역시도 22호선 【사업명: 우회고가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10.

### 인 천 광 역 시 장

#### 1. 도로구역 결정

O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ul><li>④노선명</li></ul>	5위 치	⑥면적 (m³)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경과지	①충연장 (km)
결정	광역시도	22호선	-	중구 항동2가 ~ 동구 만석동	60,970.1	중구 항동2가 3	동구 만석동 9-33	-	1.69

- O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인천시 중구 북성동 ~ 동구 만석동 일대 우회고가교 및 주변을 정비하여 상상플랫폼, 인천역, 차이나타운과 연계된 보행중심체계로 경관개선 및 지역단절 극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광역시도22호선(우회고가 정비사업)의 도로구역 결정
-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5개월

(변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2023. 5. 31.

#### 2. 실시계획인가

- O 사업시행지 위치(변경)
  - (기정)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3-1일원
  - (변경)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2가 3 일원
- O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 (기정)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류2호선)

· 명칭: 우회고가 정비사업 하부도로개설공사

- (변경)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류2호선, 대로2류8호선, 소로1류20호선)

· 명칭: 우회고가 정비사업

O 면적 및 규모(변경)

- (기정)

	규 모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둥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결정	광로	3	2	40~46	주간선 도로	6,750	광3-4	광3-9	일반 도로	우회 고가교	인고제630호 (1983.4.16.)	
시행	광로	3	2	26~31	주간선 도로	648	북성동1가 3-1	만석동 41-80	일반 도로			

### - (변경)

		7	ĵ	로.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둥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결정	광로	3	2	40~46	주간선 도로	6,750	광로3-4	광로3-9	일반 도로	우회 고가교	인고제630호 (1983.4.16.)	
금회 시행	광로	3	2	26.5~31	주간선 도로	1,690	항동2가 3	만석동 9-33	일반 도로			
결정	대로	2	8	30	국지 도로	311	광로 3-2	대로2-17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427호 (1986.9.29.)	
금회 시행	대로	2	8	10	국지 도로	16	항동1가 5-10	항동1가 5-5	일반 도로			
결정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280	광로3-2 북성동1가 3-34	소로1-1 북성동1가 3-7	일반 도로	-	중구고시 1997-18호 (1997.8.20.)	
금회 시행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11	북성동1가 3-57	북성동1가 3-34	일반 도로			

- O 사업면적(변경)
  - (기정) A=10,089.9 m<sup>2</sup>
  - (변경) A=60,970.1m<sup>2</sup>
- O 사업규모(변경)
  - (기정) L=648m, B=26~31m
  - (변경) L=1.69km, B=26.5~31m(왕복6차로)
- O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기정)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5개월(변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2023. 5. 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붙임과 같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붙임과 같음.
- O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3. 관계서류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 기간: 2021. 10. 25. ~ 2021. 11. 08.
  - 열람 장소: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23),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032-440-5222), 중구청 건설과(☎032-760-7452), 동구청 건설과(☎032-770-6512)

붙임 :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1부. 끝.

# 편입용지조서(광로3-2호선)

일련	人 司 -	7]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	^	시 빈	시축	(m²)	면적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중구	당초									
1	항동2가	변경	3	도	4778.7	423	국	국토교통부			
0	중구 항동2가	당초									
2	항동2가	변경	2-5	도	6249.9	1036	국	국토교통부			
3	중구 항동1가	당초									
3	항동1가	변경	5-3	도	33.1	33.1	국	행정안전부			
4	중구 항동1가	당초									
4	항동1가	변경	5-16	도	279.8	19	국	기획재정부			
5	중구	당초									
Э	항동1가	변경	5-4	도	1220.8	1048	국	관세청			
6	중구	당초									
· ·	항동1가	변경	5-26	도	20.2	20.2	국	국토교통부			
7	중구	당초									
,	항동1가	변경	5-11	도	29.1	29.1	국	국토교통부			
8	중구 항동1가	당초									
	항동1가	변경	5-31	도	1	1	국	해양수산부			
9	중구 항동1가	당초									
	항농1가	변경	5-10	도	118.1	87.1	구	인천광역시			
10	중구 항동1가	당초									
	항동1가	변경	5-13	도	13.2	5.2	국	해양수산부			
11	중구 항동1가	당초									
	앙중1가	변경	5-5	대	262.5	225	국	국토교통부			
12	중구 항동1가	당초									
	8~1가	변경	5-9	대	18.5	18.5	최**	인천광역시 중구 북**			
13	중구	당초					ੜੀ.				
	항동1가	변경	5-14	대	16.5	16.5	곽** 외1인	계양구 효** ***-*			
14	중구 항동1가	당초									
-	앙동1가 	변경	5-8	도	50.2	50.2	국	국토교통부			

일련	. 11.	-1	-1 vi	~1 17	지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	۲۱	지번	지목	( m²)	면적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sup>9</sup> 종류
1.5	중구	당초									
15	중구 항동1가	변경	5-15	대	28.8	23	곽** 외2인	계양구 효** ***-*			
16	중구 항동1가	당초									
10	항동1가	변경	5-7	도	100.8	100.8	국	국토교통부			
17	중구 항동1가	당초									
1.	항동1가	변경	5-30	도	30.4	30.4	국	해양수산부			
18	중구 항동1가	당초									
10	항농1가	변경	5-2	도	8212.2	6115	국	기획재정부			
19	중구 항동1가	당초									
	항농1가	변경	3-7	도	13.9	7	공	인천광역시			
20	중구 항동1가	당초									
	항농1가	변경	7-3	도	8962.1	3970	국	국토교통부			
21	중구 선린동	당초									
	선턴궁	변경	58-1	도	10478.4	914	국	국토교통부			
22	중구 선린동	당초									
	신민공	변경	56-5	도	13.2	13.2	국	기획재정부			
23	중구 선린동	당초									
		변경	56-2	도	19.8	6	국	국토교통부			
24	중구 북성동1가	당초						경기도 용인시 **면 **리			_
	7 8 9 17 1		4-3	창	2965	113	하**주식회사	****ー*			
25	중구 북성동1가	당초									
	1001	변경	4-259	도	2913.9	2913.9	공	인천광역시			
26	중구 북성동1가	당초	4 050	F	15000	1500.0	7				
	, ,	1270	4-258	도	1766.3	1766.3	공	인천광역시			
27	중구 북성동1가	당초 변경	5-30	도	18.5	18.5	국	기획재정부			
		rl. >	J-3U	エ	10.0	10.0	<u></u>	/1학세/8구			_
28	중구 북성동1가	변경	7-65	도	3735	6	국	국토교통부			_
		당초	1 00	-1-	0100	0	<u> </u>	7-L-0-T			
29	중구 북성동1가	변경	5-31	도	4	4	국	국토교통부			
				-1-	**	7	7	7.E. O. T			
30	중구 북성동1가	비권	7-2	도	63.4	29	공	인천광역시			

일련			2 -2		지적	편입		소유자			
번호	소재?	۲۱	지번	지목	(m²)	면적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01	중구	당초									
31	북성동1가	변경	5-10	도	142.2	142.2	공	인천광역시			
-00	중구	당초									
32	중구 북성동1가	변경	5-5	도	56.2	56.2	국	국토교통부			
00	중구	당초								귀리ㅇ	
33	중구 북성동1가	변경	5-34	도	5	4	국	국토교통부			
0.4	중구	당초									
34	중구 북성동1가	변경	5-26	도	12.9	12.9	국	국토교통부			
0.5	중구	당초									
35	북성동1가	변경	5-33	도	7.6	6	국	국토교통부			
00	중구	당초									
36	중구 북성동1가	변경	5-12	도	2	2	국	기획재정부			
27	중구 북성동1가	당초									
37	북성동1가	변경	5-23	도	2.6	2.6	국	국토교통부			
38	중구 북성동1가	당초									
<i>3</i> 6	북성동1가	변경	5-24	도	8.6	8.6	국	기획재정부			
39	중구	당초									
39	중구 북성동1가	변경	5-9	도	23.1	21	공	인천광역시		· 권리:	
40	중구	당초									
40	<del>중구</del> 북성동1가	변경	5-8	도	162	158	공	인천광역시			
41	중구	당초									
41	북성동1가	변경	5-6	도	555.4	555.4	국	국토교통부			
42	중구 북성동1가	당초									
42	북성동1가	변경	5-1	도	3976.9	3976.9	공	인천광역시			
43	중구 북성동1가	당초									
40	북성동1가	변경	7-64	도	12062	6573	국	국토교통부			
11	중구	당초	3-78	철	139.6	139.6	국	국토교통부			
44	중구 북성동1가	변경	3-78	철	139.6	139.6	국	국토교통부			

일련		-1	l 131	~1 17	지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	۲۱	지번	지목	( m²)	면적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조소 권리의
45	중구	당초									권리의 종류
45	북성동1가	변경	7-66	장	1362.1	3	대***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4가 45			
46	중구	당초									
40	북성동1가	변경	8-2	장	105.2	1	대***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4가 45			
477	중구	당초									
47	북성동1가	변경	3-5	장	2532.8	22	대***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4가 45			
48	중구	당초								주소 퀀리의	
40	북성동1가	변경	3-52	도	1206.6	1206.6	공	인천광역시			
40	중구	당초									
49	북성동1가	변경	3-4	장	3529.3	42	대***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4가 45			
50	줅	당초	3-81	도	1,309.7	1,309.7	공	인천광역시			조소 권리의
50	북성동1가	북성동1가 변경 3-	3-81	도	1309.7	1309.7	공	인천광역시			
51	중구	당초	3-84	철	29.0	29.0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J1	북성동1가	변경	3-84	철	29	29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52	중구	당초	3-83	도	171.2	171.2	국	국토교통부			
02	북성동1가	변경	3-83	도	171.2	171.2	국	국토교통부			
53	중구	당초									
	북성동1가	변경	3-34	철	915	50	국	국토교통부			
54	중구	당초									
04	북성동1가	변경	3-56	철	2385.6	20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55	중구	당초								조소 퀀리의	
	북성동1가	변경	3-69	철	3300	143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56	중구 북성동1가	당초									
	J 001/	변경	3-77	철	209.8	209.8	국	국토교통부			
57	중구 북성동1가	당초	3-82	철	1,707.9	1,707.9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_
	J 001/	변경	3-82	철	1707.9	1707.9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45 45 45 45 나동 나동 나동 나동		
58	중구 북성동1가	당초									
50	북성농1가	변경	3-55	철	3913.1	329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일련	 소재>	راً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번호	32/11/	`	시킨	시축	(m²)	면석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중구 북성동1가	당초									
59	북성동1가	변경	8-1	도	23.5	23.5	국	기획재정부	성명 주소		
	<u>조</u> 고	당초	7-74	도	19.5	19.5	국	국토교통부			
60	중구 북성동1가	변경	7-74	도	19.5	19.5	국	국토교통부			
	중구	당초	3-79	철	4,717.6	4,717.6	국	국토교통부			
61	* 성동1가	변경	3-79	철	4717.6	4717.6	국	국토교통부			
20	중구	당초	7-73	도	1,078.2	1,078.2	국	국토교통부			
62	북성동1가	변경	7-73	도	1078.2	1078.2	국	국토교통부			
20	중구	당초									
63	중구 북성동1가	변경	1-163	철	598.6	5	국	국토교통부			
0.4	중구	당초									
64	북성동1가	변경	7-1	도	1392.8	73	국	국토교통부		크	
0=	동구	당초									
65	만석동	변경	43-187	도	4914.4	4552	국	국토교통부			
CC	동구	당초									
66	만석동	변경	2-328	도	12599	11113	공	인천광역시			
67	동구	당초	43-455	도	19.3	19.3	국	국토교통부			
01	만석동	변경	43-455	도	19.3	19.3	국	국토교통부			
co	동구	당초	43-457	철	36.1	36.1	공	인천광역시			
68	만석동	변경	43-457	철	36.1	36.1	공	인천광역시			
	동구	당초									
69	만석동	변경	43-450	철	367.3	5	공	인천광역시		고 , 권리의	
70	동구	당초	43-456	철	56.6	56.6	공	인천광역시			
70	만석동	변경	43-456	철	56.6	56.6	공	인천광역시		고 ,	
71	동구	당초									
/1	만석동	변경	43-449	철	288.6	66	공	인천광역시			
72	동구	당초	43-454	철	5.3	5.3	공	인천광역시			
14	만석동	변경	43-454	철	5.3	5.3	공	인천광역시			
72	동구	당초	43-453	대	2.3	2.3	공	인천광역시동구			
73	만석동	변경	43-453	대	2.3	2.3	공	인천광역시동구			
74	동구	당초	43-355	철	94.2	94.2	국	기획재정부			
74	만석동	변경	43-355	철	94.2	94.2	국	기획재정부			

일련	الرح ع	-zì	<b>ઝો પ્રો</b>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번호	소재	^	지번	시축	(m²)	면적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5	동구 만석동	당초	42-16	철	90.2	90.2	국	기획재정부		고, 권리	
75	만석동	변경	42-16	철	90.2	90.2	국	기획재정부			
76	동구 만석동	당초	43-7	철	220.0	220.0	공	인천광역시			
10	만석동	변경	43-7	철	220	220	공	인천광역시			
77	동구	당초	42-8	도	5.0	5.0	공	인천광역시			
	만석동	변경	42-8	도	5	5	구	인천광역시			
78	동구	당초	41-92	철	133.0	133.0	국	기획재정부			
	만석동	변경	41-92	철	133	133	국	기획재정부			
79	동구	당초									
10	만석동	변경	41-81	철	392.6	109	국	기획재정부			
80	동구	당초	41-82	대	25.5	25.5	국	국토교통부			
00	만석동	변경	41-82	대	25.5	25.5	국	국토교통부			
01	동구	당초									
81	동구 만석동	변경	41-79	철	253.6	104	국	기획재정부			
	동구	당초	41-80	대	116.4	116.4	국	국토교통부			
82	만석동	변경	41-80	대	116.4	116.4	국	국토교통부			
	동구	당초	41-91	철	113.3	113.3	국	기획재정부			
83	만석동	변경	41-91	철	113.3	113.3	국	기획재정부			
	도구	당초									
84	동구 만석동	변경	38-4	도	2634.7	1442.0	공	인천광역시			
	F 7	당초									
85	동구 만석동	변경	38-5	철	267.0	186.0	국	국토교통부			
	ヒコ	당초									
86	동구 만석동	변경	9-373	철	294.0	275.0	국	국토교통부			
	E 7	당초									
87	동구 만석동	변경	37-10	도	372.0	24.0	공	인천광역시		고 권리	
	F =	당초									
88	동구 만석동	변경	9-33	철	247.9	141.0	공	인천광역시동구			
		L	당초			10,089.9					
	계		변경			60,795.6					

# 편입용지조서(대로2-8호선)

일련	소재기	zì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도세/	`	시 빈	먼 시독 (m²)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중구 항동2가	당초									
1	항동2가	변경	5-10	도	118.1	31.0	공	인천광역시			
2	중구 항동2가	당초									
4	항동2가	변경	5-35	대	13.6	13.6	곽** 외1인	계양구 효** ***-*			
3	중구 항동1가	당초									
3	항동1가	변경	5-27	도	0.3	0.3	국	해양수산부			
4	중구 항동1가	당초									
4	항동1가	변경	5-36	대	4.6	4.6	곽** 외2인	계양구 효** ***-*			
5	중구 항동1가	당초									
	항동1가	변경	5-28	도	2.6	2.6	국	해양수산부			
6	중구 항동1가	당초								주소 권리의 종류	
	항동1가	변경	5-13	도	13.2	8.0	국	해양수산부			
7	중구 항동1가	당초									
	항동1가	변경	5-5	대	262.5	3.0	국	국토교통부			
	계					63.1					

# 편입용지조서(소로1-20호선)

일련	- الحد	zì	નો મો	-J [2	지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	١	지번	지목	( m²)	면적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중구	당초									
	항동2가	변경	3-57	도	2.4	2.4	국	국토교통부			
2	87	당초									
	항동2가	변경	3-34	철	915.0	109.0	국	국토교통부			
		계			917.4	111.4					

# 지 장 물 조 서 (광로3-2호선)

익려			묵거의	구 조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및 규 격	수 량	성 명	주 소
1	중구 항동1가	5-2	휀스	철재=2m	47m		
2	중구 항동1가	5-15	상가	블록/슬라브	42 m²	곽** 외2인	인천 계양구 **동
	중구 항동1가		식당	적벽돌/기와	94 m²		
3	중구 북성동1가	4-3	휀스	철재 H=1.5m	15m	하**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구
	중구 북성동1가		대문	자바라	1식		
4	중구 북성동1가	4-259	펌프		1식	70	인천광역시
5	중구 북성동1가	4-3	휀스	블록 H=2.0m	54m	하**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구
	중구 북성동1가		대문	자바라	1식		
6	중구 북성동1가	4-259	주차출입시설		1식	공	인천광역시
7	중구 북성동1가	5-12	사무실	조립식	3 m²	국	기획재정부
	중구 북성동1가		주차출입시설		1식		
8	중구 북성동1가	5-1	주차출입시설		1식	공	인천광역시
9	중구 북성동1가	5-1	주차출입시설		1식	공	인천광역시
10	중구 북성동1가	7-64	창고	컨테이너	9 m²	국	국토교통부
11	중구 북성동1가	7-64	주차사무실	조립식	15 m²	국	국토교통부
12	중구 북성동1가	4	휀스	블록=1.5m	135m	대***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대로 *가 **
	중구 북성동1가		자바라		2식		
	중구 북성동1가		휀스	블록=2m	43m		
	중구 북성동1가		휀스	블록=2m	26m		
13	북성동1가	7-64	창고	조립식	152 m²	공	인천광역시
	북성동1가		휀스	철재=2M	34m		
	북성동1가		휀스	철재=2M	88m		
14	북성동1가	3-79	휀스	블록H=2.0m	146m	한국철도 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2동
	북성동1가		휀스	철재H=2.0m	50m		
15	북성동1가	3-79	창고	컨테이너	15 m²	한국철도 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2동

16	북성동1가	3-79	창고	철재	15 m²	한국철도 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2동
17	북성동1가	3-79	변압시설		1식	한국철도 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2동
	북성동1가		휀스	철재 H=2.0m	31m		
18	북성동1가	7-73	창고	컨테이너	27 m²	한국철도 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2동
19	북성동1가	3-82	공장	조립식	557 m²	한국철도 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2동
	북성동1가		창고	컨테이너	8 m²		
	북성동1가		호이스트		1식		
20	북성동1가	3-57	휀스	블록=1.5M	296m	공	인천광역시
21	동구 만석동	2-328	우수토실		1식	인천환경공단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84
	동구 만석동		휀스	철재	11m		
22	동구 만석동	2-328	휀스	철재	105m	공	인천광역시
23	동구 만석동	121-1	차양대	철재	1식	**타이어전문점	
	동구 만석동		휀스	블록	22m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1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영종국제도시 중구 운서동 3099-4번지(영종지구 RC2BL)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 1. 3.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1. 사업의 명칭: 영종RC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 없음)
- 2. 사업주체(변경 없음)

㈜반도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2, 11층(역삼동, 허바허바빌딩)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변경 없음)
  -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9-4번지 (영종하늘도시 RC2블록)
  - 나. 대지면적: 20,365.8㎡
  - 다. 연 면 적: 97,651.4473 m<sup>2</sup>
  - 라. 건설주택의 규모(변경 없음)
    - 공동주택 : 지하3층, 지상 26층 / 6개동 / 450세대 (83형 117세대, 84A형 179세대, 84B형 99세대, 84C형 55세대)
    - 부대복리시설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 18개동
- 4. 사업시행기간 : 2019. 6. ~ 2022. 1.(변경 없음)
- 5. 그 밖의 사항(변경)
  - 주출입구 도로 확폭(문주길이 연장), 녹지 증대 및 수목, 시설물 상향 등
- 6.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의 의제 사항(변경 없음)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3215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3.

#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 말소사항

등록번호 (구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말소일자	주관 부서	비고
2006-0- 인천광역시-23	미추홀 독서문화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46	이덕영	독서지도와 독서 치료, 독서문화 보급 등	2022.1.3.	도서관 정책과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3223호

## - 2022년 인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인천문화예술단체의 창작의욕 고취와 역량강화, 시민 문화 향수권 신장 및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인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인천문화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 1. 3.

인천광역시장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2년 인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

다. 사 업 비 : 1,550백만원

라. 사업분야 : 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문화예술진흥사업 전 분야

(문학・출판. 시각・공연예술 등)

마. 지원규모 : 단체별 4개 사업 이내/ 사업별 70백만원 이내

※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건수 및 금액 결정

### 2. 신청자격 및 신청범위

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인천시 전문예술법인·단체(국·공립 법인·단체 제외)

※ 문학. 영화 분야의 경우 인천시 소재 **비영리법인** 

나. 신청범위 : 단체별 4개 사업 이내 / 사업별 70백만원 이내

### 3. 공모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2. 1. 3.(월) ~ 1. 19.(수)

나. 접수기간 : 2022. 1. 17.(월) ~ 1. 19.(수) / 3일간

다. 접수처 및 방법: www.ncas.or.kr(온라인 접수만 가능)

#### 4. 신청서류

가. 지원신청서 1부

- 나. 단체소개서 1부
- 다. 사업계획서 1부
- 라. 프리젠테이션 자료 1부(중점 사업 5분, 그 외 사업 단체별 5분\*중점사업 외 1개 사업일 경우 3분 이내)
  - ※ 중점사업 선정은 아래의 '5. **사업심사 및 선정**' 참고
- 마. '<u>나. 단체소개서</u>'에 기재한 '<u>2. 주요활동실적</u>' 증빙자료 각1부 (자유양식으로 사업별 5장 이내로 제출)
- 바.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 지정서 1부(문학, 영화 분야는 비영리법인등록증) ※ 가~다 한글파일 필수 제출(배포용일 경우 파일명에 비밀번호 기재)

#### 5. 사업심사 및 선정

- 가. 심사방법 및 진행
  - 1단계 : 서류심사
  - 2단계 : 인터뷰 심사(자체 선정심의위원회)
  - ① 사업계획발표 (중점사업) 파워포인트(ppt)등 자료 활용 발표(5분이내) (중점사업 이외) 단체별 5분 이내 발표(1건일 경우 3분 이내)
    - ※ 중점사업은 신청사업 중 단체가 임의로 1건을 선정하며, 신청사업이 총1개인 경우에는 신청사업이 자동적으로 중점사업이 됨
  - ② 질의응답
  - 3단계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선정

#### 나. 선정기준

- 사업수행역량 및 활동실적
- 사업내용 적절성 및 실행가능성, 사업의 독창성, 홍보계획 및 효과성
- 신청예산의 타당성
- 전년도 사업 평가 등(전년도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 ※ 동일(유사)사업에 대하여 2022년도 국비 또는 지방비(문화재단 포함) 지원 사업을 신청했거나 지원받고 있는 사업의 경우 심사 제외(중복지원 불가)
- ※ 서류심사 결과 및 인터뷰 심사일정은 별도 통보
- ※ 인터뷰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사업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액에 대한 지원금 조정 가능
- 다. 선정결과 통보 :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또는 선정 단체 개별 통지

#### 6.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

#### 가.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제출 / 미 제출시 선정자격 취소(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 보조사업자는 인천시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회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및 사용
-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결제전용 체크카드로 구비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해 인천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상시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함
- 보조금 사용은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현금지출 불가), 계좌이체 시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원천징수를 통해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 나. 보조금 사용불가 항목

인정불가 경비	세 부 내 역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ul><li>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li></ul>
단체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단체 대표자 대상 집행	<ul> <li>단체 대표자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li> <li>(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li> </ul>
사업과 무관한 비용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기타 사항	• 시상금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다. 보조사업 정산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2개월 이내 제출(별도 서식)

### 7. 기타사항

- 가. 사업별 의무적 자부담은 없으며, 사업특성별 자율 책정 (자부담을 편성한 경우 보조금 교부시 자부담 확보 증빙 제출)
-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u>반드시 지정된 서식을 사용</u>하고 요건 부적합 시에는 미접수 처리함
-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 및 선정에서 제외
- 라.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제1999호

- 마.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바.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 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한
- 사. 선정된 법인(단체)은 사업별 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아.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440-4023**)에 문의

### 【참고1】지원신청서

## 2022년도 문화예술단체지원 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단 :	체	명										
사	업	명	※ 중점사업(	겨부[	] (O, X 로	표시)						
<b>지원시</b> (해당 번호			① 문학·출된 ⑥ 영화 [	파[ ] ] ⑦	② 미술 [ 연예 [ ] @	] ③ ③ 국으					] ⑤ 연극 ⑪ 서예 [	[ ]
총시	l업t	<del>J</del> I		천원	보조금		천	원	자부든	<b>;</b>		천원
사업	ᆸ내용	<u>2</u>	- 사업기간 - 사업장소 - 사업내용									
			등록기관						대표저	<b>\</b>		
단체등	三星)	나하	등 록 일		년	월	일					
(전문예술	늘법인	·단체/	소 재 지	(우편	편번호	) <u>도로</u>	명주소 기계	대 방	법에 따라	정확	히기입	
비영리	리땁	<u>'</u> '') [	회 원 수									
			시무국 직원수	-		명(싱	강근직원		명)			
	CII .	표자	성 명					Ř	대폰			
	<b>ч</b> 1:	ᄑᄭ	대표전화	사무	실 연락처 기자	7		팩-	스번호			
단체	실!	무자	직 위					상	명			
연락처	책임	임자	휴대폰					e-	-mail			
	회	계	직 위					성	명			
	실!	무자	휴대폰					e-	-mail			

### 2022년 월 일

### 신청단체명:

직 인

- ※ 신청시 제출서류(1.2번 파일 제출 포함)
  - 1.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중점사업인 경우 발표자료 포함) 각1부.
  - 2. 주요활동실적 증빙자료(사업별 5장 이내) 각 1부
  - 3.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또는 비영리법인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참고2】단체소개서

# 2022년도 문화예술단체지원 보조사업 단체소개서

### 1. 단체 현황

	단체명										
	등록번호					대표	 				
	등록일						:번호 등록번호)				
단체정보	단체 주소	(우		) 인천	광역시						
	주사무소	공	당건물[	], 단체/	법인소유[	], 임대	(유상[]	,무상[ ]),	기타[	]	
		대포	대표전화 : 032-123-1234 팩스번호 : 032-123-4567								
	연락처	신청	신청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010-****-*** E-mail :								
	홈페이지	http	nttp://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정관/회직 제2조)								
	연혁	_	○ '90.11.10 ○○ 설립(창립) ○ '10.10.28 ○○ 인천시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주요사업	000	○ 정관 또는 회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기재								
	조직구성	○ <del>¸</del>	○처/○국/○과/○팀								
	인력현황	회원수		명 (2022년 1월 현재)		_	상근 유급				
		직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재직		주요?		비고	
│단체소개 │		대표	나대표	68.10.25.	010-***	·*** '16.01	6.01.20.~			상근	
	רוו דדו חו	임원	한임원	63.01.15.	010-***	·*** '17.10	0.05.~			비상근	
	대표자 및 임원 현황	임원	신임둘	80.03.01.	010-***-	**** <sup>14.06</sup>	5.29.~			상근	
					¦ 직원 현황 T	황(상근/ㅂ	상근 구: 	문) 	I		
	계			국장 :처장)	팀	l장	<i>y</i>	나원	기타[	]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 0명	0명/ 0	0円	
예산현황	2021년 결산현홍		<ul><li>○ 결산총액 : 천원</li><li>○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 국비보조(%) 시비보조(%) 문화재단보조(%) 군·구비보조(%)</li></ul>								
WEE 8	2022년 예산현횡				천원 %): 회비수 %)		6), 기부금	금 및 모금	활동( %),		

### 2. 주요 활동 실적

□ 신청사업과 동일(유사)사업 추진실적 (최근 3년 이내,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МГ	UOR		,	보조금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및 성과		보조금	자부담	지원기관 (해당시작성)
2019		-기 간: -장 소: -참여인원: -주요성과:				예)인천시
2020		-기 간: -장 소: -참여인원: -주요성과:				자체사업
2021		-기 간: -장 소: -참여인원: -주요성과:				

- ※ 동일(유사)사업이 연2회 이상 개최된 경우에도 전부기재
- □ 국가, 지자체, 재단, 기업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추진실적(최근 2년 이내, 최대 5개)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및 성과	)	나업비(천원	)	· 지원기관
[ 건포	NEO	기타네는 중 영화	계	보조금	자부담	시전기건
		-기 간: -장 소: -참여인원: -주요성과:				예)인천시
		-기 간: -장 소: -참여인원: -주요성과: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인천문화 재단

□ 단체 자체사업 추진실적(최근 2년 이내, 최대 5개)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및 성과	사업비(천원)	비고
		-기 간: -장 소: -참여인원: -주요성과:		

### 【참고3】사업계획서

# 2022년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추진 기간	2022	. ~	공연·전시 등 실제추진기간	2022 ~	·( 일)		
연속개최 회차	해당사항이 있는	<i>= 경우</i>	최초 개최연도	해당사항이 있	는 경우		
사업장소							
사업규모	- 예술단체 : - 예 술 가 : - 지원인력 :	팀 명 명	수혜대상자 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 <i>(간략하게 ડ</i> -	3 <i>약하여 작성)</i>					
사업추진내용 및 방법	-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						
기대효과	- <i>(간략하게 요</i> -	.약하여 작성)					
구 분	합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b>활동비</b> (3%이내)		
총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자부담 (해당시 작성)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자부담 내역	(회비 천원	], 기부/후원금	천원, 참가ㅂ	] 천원, <i>7</i>	기타 천원)		

2 사업목적
3 세부추진계획(방법)
□ 세부사업 내용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단계별 방안 ○ -
□ 지역성(인천)과 연계된 특성화 (혹은 차별화) 방안 (혜당사항이 있는 경우) ○ -

	기존	사업(2021년)	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계획	(해당사항이	있는 경위
--	----	-----------	--------	-----	------	--------	-------

2021년도 문제점 (혹은 지적사항)	2022년도 개선계획	비고
_	_	

## □ 사업추진일정

일정(기간)	<b>세부추진내용</b> (활동내용과 추진방법)	비고
2022		
~		
2022		
~		

# 4 시업운영 인력

연번	역 할	성 명	현직 / 주요경력	비고
1				상근/비상근 여부
2				
3				
4				
5				
6				
7				
8				_
9				

5

예산 계획

□ 사업비 예산편성

(단위 : 원)

7	지출항목		금액		산출내역
예산항목	비목	합계	보조금	자부담	산물네무
Ž	· 계				
	소 계				
	출 연 료				
	기 획 료				
인건비	단 순 인 건 비				
	원 고 료				
	심 사 비				
	•				※기타 필요항목 기재
	소 계				
	물 품 구 입 비				
사 업 진행비	임 차 비				
진행비 	시 상 금				※자부담으로만 편성
	•				※기타 필요항목 기재
	•				
	소 계				
	인 쇄 비				
홍보비	홍 보 비				
	현 수 막				
	•				※기타 필요항목 기재
	소 계				
	사무용품비				
활동비 (5%이내)	교 통 비				
	특근 매식 비				※자부담 우선 편성
	•				※기타 필요항목 기재

#### <자부담 편성요령>

- '사업수입'(대회 참가비,출품비 등) 발생 시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작성
- 자부담을 편성한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 확보 증빙(자부담 통장사본) 제출

#### <유의사항>

- 이행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는 예산편성(자부담) 불필요(단체 별도예산으로 집행)
-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소요금액 보다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 지출항목은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 활동비로 편성(그 외의 항목 불가)하고 그 안에서 다시 출연료, 물품구입비, 홍보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 불가)
- 지출항목내 동일 건의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분할하여 편성 불가 【예시 : 리플릿 제작(100만원)을 보조금(50만원)과 자부담 (50만원)으로 계상 불가】
- 반드시 산출기초 작성 및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기재
- 보조금 편성(사용)불가 항목

인정불가 경비	세 부 내 역
보조사업자의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일상적인 운영경비	등 단체운영경비
단체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단체 대표자	· 단체 대표자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대상 집행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사업과 무관한 비용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기타 사항	· 시상금,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 수입 예산(예상수익금 포함) 및 사용계획

(단위 : 원)

	구 분	금 액	<b>산출내역</b> (*구체적으로 작성)	사용계획	비고
	합계				
	소 계				
사업	대회 등 참가비			※ '사업수입'은 '사업비 예산편성'의	
수입	출품비			자부담 금액과 일치시켜 작성	
	기 타				
	소 계				
	단체 회비				
민간   재원 	기업 등 후원금				
	개인 기부금				
	기 타				

6 홍보계획
<ul><li>○</li><li>-</li></ul>
-
7 기대효과
□ 시민 수혜도
<ul><li>○</li><li>-</li></ul>
□ 사업수행 단체 및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
<ul><li>-</li></ul>
8 방역계획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1호

##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0.

## 인 천 광 역 시 장

1. 등록 및 폐기사유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

치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 조정

2. 최초사용연월일: 2022. 1. 13.

3. 폐기연월일: 2022. 1. 13.

4. 등록(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참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 1. 3.

#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등록 사항 : 대표자

등록번호	단체 명		주 관 과		
(등록일)	근 세 당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b>十七</b> 4
제2021-0 -인천광역시 -14호 (2021.6.15.)	원고려인 문화원	대표자	박대종	이희수	가족다문화과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1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4일

## 인 천 광 역 시 장

### ○ 행정처분 사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기간)
320333	주식회사 협주 (전해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88, 1호(구월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5일 (2022.1.4.~1.18.)
320377	주식회사 오아이씨코리아 (김일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369번길 12 (청천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5일 (2022.1.4.~1.18.)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3호

# 부동산개발업 등록(전입)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 발업 전입신청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상호 (대표자)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천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비고
주식회사 서우디앤씨 파트너스 (김지선)	2022. 1. 4.	인천220001	1,100,000	인천광역시연수구 송도과학로 56, 2205호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비티 센터)	전입 (서울 →인천)

2022년 1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9호

####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2022년 1월 10일 인천광역시장

- 1. 공고기간: 2022. 1. 10.~2022. 1. 24.(14일간)
- 2. 처분통지 사항

업체명 (대표자)	처분업종	소재지	처분사유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주)새늘종합건설 (김성곤)	건축공사업 (04-068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11-1, 3층 (구월동, 재경빌딩)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건설산업 기본법」 제10조	등록말소	2021. 12. 22.

-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032)440-3742로 문의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21호

####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인천광역시장

1. 공고기간: 2022. 1. 10.~2022. 1. 24.(14일간)

#### 2. 처분통지 사항

업체명 (대표자)	처분업종	소재지	처분사유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주)더경종합건설 (채규병)	건축공사업 (10-161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52, 201동, 4703호 (경서동, 청라롯데오피스텔)	실태조사 미보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까지 실태조사 미보고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8의2호	등록말소	2021. 12. 22.

-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032)440-3742로 문의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22호

####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인천광역시장

- 1. 공고기간: 2022. 1. 10.~2022. 1. 24.(14일간)
- 2. 처분통지 사항

업체명 (대표자)	처분업종	소재지	처분사유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주)양지종합건설 (나판수)	건축공사업 (05-0673)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412, 1동 701호(청천동)	실태조사 미보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까지 실태조사 미보고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8의2호	등록말소	2021. 12. 21.

-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032)440-3742로 문의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24호

#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사업자	대표자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 <del>본</del> 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비고
주식회사 골든퍼시픽	황창림	2021. 1. 5.	인천220002	3,000,000,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1610호 (송도동, 아이비에스타워)	

2022년 1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6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 인 천 광 역 시 장

### ○ 행정처분 사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320226	(주)씨엔전자 (이종간, 이진영)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681, 스마트테크노타워 가동 304호 (가좌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등록취소 (2022.1.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9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통지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주된 사무소 등 확인 불가 등으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 3. 법적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 4. 청문실시

가. 일 시 : 2022. 2. 4.(금) 14:00

나. 장 소 : 인천광역시청 감사관실(본관 3층, 301호)

다. 청문주재자 :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박희영 사무관

5. 청문 공시송달 대상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	단체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반송사유	청문일시
1	2007-0- 인천광역시 -30 (2007. 5. 25.)	인천광역시 부패척결 운동본부	유각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83-3 진영빌딩 403호	사무실 폐쇄	'22.2.4.(금) 14:00

- 6. 청문시 유의사항
  -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발행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나.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서류 : 의견제출서,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사본(앞 뒷면 각 1부)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 (등기우편) 위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광역시청 감사관실 김수경
      - (방문제출) 인천광역시청 감사관실(본관 3층, 301호)
    - 제출기한 : 2022. 2. 3.(목)까지
  - 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라.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청문 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마.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7. 공고기간 : 2022년 1월 10일 ~ 1월 24일(15일)
- 8.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32-440-3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이태의 파의사양	을 읽고 작성하시기 비랍 성 명	<u> </u>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l 제목	
		성명(명칭)	
		T.	
	당사자	주소	
-1-1-4-		(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치	·법」 제27조제1	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0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유의 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5호

# 도로구역(국지도 98호선, 광역시도 58호선)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공고 · 열람

국지도98호선, 광역시도58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24호선, 광로3-27호선, 대로3-58호선, 사업명: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0.

## 인천광역시장

- 1. 도로구역 결정(변경)
  -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 치	⑥면적 (m²)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경과지	⑩총연장 (km)
당초	국가지원 지방도	98호선	_	대곡동 일원	15,520	대곡동 373-1	대곡동 469-2	_	0.14
변경	국가지원 지방도	98호선	_	대곡동 일원	57,199	대곡동 373-11	대곡동 687-8	-	1.11
당초	광역시도	58호선	_	대곡동 일원	50,208	대곡동 373-1	대곡동 555-9	_	0.6
변경	광역시도	58호선	_	대곡동 일원	40,208	대곡동 687	대곡동 555-9	_	0.6
결정	지방도	346호선	_	불로동 일원	8,128	마전동 290-17	마전동 326-4	_	0.46

\* 구간 중복(L=0.14Km,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 광역시도58호선)

- O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결과 및 실시설계 반영 등에 따른 도로 구역 결정 변경
- O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초: 2020. 6.29.~2022.12.31.

- 변경: 2020. 6.29.~2025.12.31.

O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가: 2022. 1.10.~2022. 1.24.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도로과,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7 H			규 모		-11-	연장	-1 -1	フョ	사용	주요	최추	v)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광로	3	27	40	주간선 도로	2,877 (970)	대로2-61	광로3-24	일반 도로	_	인고제 1998-118호 (1998.6.12.)	_
변경	광로	3	27	40	주간선 도로	2,877 (970)	대로2-61	광로3-24	일반 도로	_	_	가각부 변경

- ※ ()는 금회 시행되는 폭원 및 연장임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광로3-27호선	광로3-27호선	·대로3-58호선과 접속부 변경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대로3-58호선 접속구간 일부 변경

- 3. 실시계획인가
  - O 사업시행지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73-5~불로동 326-4 일원

- O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 면적 및 규모(변경)
  - 당초: 사업면적 109,121.8㎡ 변경: 사업면적 105,535.0㎡
  - 변경사유: 실시설계 및 분할측량 반영
- O 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 29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 O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20. 6.29.~2022.12.31. 변경: 2020. 6.29.~2025.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 소 : (변경)붙임과 같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붙임과 같음.
- O 관계서류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 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23),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032-440-5207),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3)
- O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 【용지조서】

일련	소재	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n		<u> </u>	~15	( m²)	(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대곡	당초	373-13	답	304.0	304.0	공	인천광역시			
	чı ¬	변경	373-5	답	1,635.0	352.0	7-80	인천광역시			
2	대곡	당초	373-11	답	1,185.0	1,185.0	정*일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변경	373-11	답	1,185.0	1,185.0	정*일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3	대곡	당초	373-12	답	793.0	793.0	공	인천광역시			
	네 ㄱ	변경	373-12	답	793.0	793.0	공	인천광역시			
4	대곡	당초	382-7	임	801.7	801.7	김*석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번길 **, 에이동 ***호(마전동,서해아파트*단지)			
4		변경	382-4	임	1,983.0	832.0	김*석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번길 **, 에이동 ***호(마전동,서해아파트*단지)			
5	대곡	당초	382-6	임	239.1	239.1	김*석 외 9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번길 **, 에이동 ***호(마전동,서해아파트*단지)			
5		변경	382-3	임	18,898.1	259.0	김*석 외 9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번길 **, 에이동 ***호(마전동,서해아파트*단지)			
		당초	687-11	천	2,105.0	2,105.0	국	국토교통부			
		당초	687-12	천	18.0	18.0	국	국토교통부			
6	대곡	당초	687-13	천	1,969.0	1,969.0	국	국토교통부			
		당초	687-14	천	216.0	21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687	천	31,810.0	4,561.0	국	국토교통부			
7	대곡	당초	373-3	답	151.0	151.0	공	인천광역시			
		변경	373-3	답	151.0	151.0	공	인천광역시			
8	대곡	당초	469-19	답	853.0	853.0	공	인천광역시			
	-11 1	변경	469-25	답	853.0	853.0	공	인천광역시			
9	대곡	당초	469-15	답	838.0	838.0	문*주	인천광역시서구 검단로***번길 ** (불로동)			
		변경	469-21	답	838.0	838.0	문*주	인천광역시서구 검단로***번길 ** (불로동)			
10	대곡	당초	469-10	답	164.0	164.0	백*모 외 3인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동 ***호 (당하동,성웅탑스빌아파트)			
		변경	469-10	답	164.0	154.0	백*모 외 3인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동 ***호 (당하동,성웅탑스빌아파트)			
11	대곡	당초	469-16	답	193.0	193.0	백*모 외 3인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동 ***호 (당하동,성웅탑스빌아파트)			
	-11 ,	변경	469-22	답	193.0	27.0	백*모 외 3인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동 ***호 (당하동,성웅탑스빌아파트)			
12	대곡	당초	469-11	답	511.0	511.0	백*모 외 3인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동 ***호 (당하동,성웅탑스빌아파트)			
-	-11 1	변경	469-11	답	511.0	450.0	백*모 외 3인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동 ***호 (당하동,성웅탑스빌아파트)			

일련	소재	χl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	M.C.		( m²)	(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으 종류
	-11-7	당초	469-17	답	367.0	367.0	백*모 외 3인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동 ***호 (당하동,성웅탑스빌아파트)			
13	대곡	변경	469-23	답	367.0	160.0	백*모 외 3인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동 ***호 (당하동,성웅탑스빌아파트)			
4.4	EU 27	당초	469-12	답	1,250.0	1,250.0	이*환	인천 계양구 계산동 ***-** 하나아파트 **동 ***호			
14	대곡	변경	469-12	답	1,250.0	1,250.0	이*환	인천 계양구 계산동 ***-** 하나아파트 **동 ***호			
15	대곡	당초	469-18	답	676.0	676.0	이*환	인천 계양구 계산동 ***-** 하나아파트 **동 ***호			
15	네ㅋ	변경	469-24	답	676.0	676.0	이*환	인천 계양구 계산동 ***-** 하나아파트 **동 ***호			
16	대곡	당초	469-20	답	715.0	715.0	신*순 외 3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10	4117	변경	469-26	답	715.0	715.0	신*순 외 3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17	대곡	당초	470-15	답	2,980.0	2,980.0	안*철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	417	변경	470-24	답	2,982.0	2,982.0	안*철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18	대곡	당초	470-17	답	1,086.0	1,086.0	안*철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10	네ㄱ	변경	470-25	답	1,130.0	1,085.0	안*철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19	대곡	당초	470-19	답	1,953.0	1,953.0	안*철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19	네ㄱ	변경	470-26	답	2,228.0	1,945.0	안*철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20	대곡	당초	470-12	답	432.0	432.0	이*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			
20	네ㅋ	변경	470-12	답	432.0	432.0	이*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			
21	대곡	당초	470-14	답	543.0	543.0	이*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			
21	네ㅋ	변경	470-14	답	543.0	543.0	이*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			
20		당초	470-22	답	136.0	136.0	Ol*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			
22	대곡	변경	470-29	답	136.0	136.0	Ol*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			
22	대곡	당초	470-23	답	170.0	170.0	이*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			
23	내득	변경	470-30	답	170.0	170.0	이*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			
24	EII 27	당초	482-7	답	1,145.0	1,145.0	박*덕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24	대곡	변경	482-7	답	1,145.0	1,145.0	박*덕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25	대곡	당초	482-18	답	308.0	308.0	박*덕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20	네ㄱ	변경	482-24	답	308.0	308.0	박*덕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26	대곡	당초	632-10	답	36.0	36.0	이*택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신명아파트 ***-***			
۷	4II 7	변경	632-14	답	36.0	36.0	이*택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신명아파트 ***-***			
27	대곡	당초	482-9	답	1,282.0	1,282.0	김*성 외 2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동 ****호 (옥수동,극동그린아파트)			
۷.	세ㄱ	변경	482-9	답	1,282.0	1,282.0	김*성 외 2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동 ****호 (옥수동,극동그린아파트)			

일련	소재	٦J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b>-</b> -^⊪	^1	\\ \( \) \(	^ -	( m²)	(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2		당초	482-8	답	91.0	91.0	김*성 외 2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동 ****호 (옥수동,극동그린아파트)			
28	대곡	변경	482-8	답	91.0	91.0	김*성 외 2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0	-11-2	당초	632-9	답	319.0	319.0	김*희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		_	<u> </u>
29	대곡	변경	632-13	답	319.0	319.0	김*희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			
30	대곡	당초	701-16	구	95.0	95.0	국	농림축산식품부			
30	네 ㄱ	변경	701-24	구	95.0	80.0	국	농림축산식품부			
31	대곡	당초	701-17	구	447.0	447.0	국	농림축산식품부			
الا	네 ㄱ	변경	701-25	구	447.0	447.0	국	농림축산식품부			
32	대곡	당초	701–13	도	189.0	189.0	국	농림축산식품부			
ناك	네 ㄱ	변경	701-21	도	189.0	140.0	국	농림축산식품부			
33	대곡	당초	701-14	도	727.0	727.0	국	농림축산식품부			
	41 T	변경	701-22	도	727.0	727.0	국	농림축산식품부			
34	대곡	당초	632-8	답	284.0	284.0	송*길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 현대아파트 ***동 ****호			
34		변경	632-12	답	284.0	284.0	송*길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 현대아파트 ***동 ****호			
35	대곡	당초	632-6	답	4.0	4.0	송*길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 현대아파트 ***동 ****호			
30	네 ㄱ	변경	632-6	답	4.0	4.0	송*길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 현대아파트 ***동 ****호			
36	대곡	당초	632-5	답	49.0	49.0	최*임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동 ***호 (마전동,대원레스피아*차아파트 )			
00	네ㄱ	변경	632-5	답	49.0	49.0	최*임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동 ***호 (마전동,대원레스피아*차아파트 )			
37	대곡	당초	632-7	답	214.0	214.0	최*임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호 (신현동,금강아미움)			
0,	<del>-</del> ,	변경	632-11	답	214.0	214.0	최*임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호 (신현동,금강아미움)			
38	대곡	당초	555-15	답	86.0	86.0	이*순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동 ***호 (풍무동,양도마을)			
		변경	555-15	답	86.0	86.0	이*순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동  ***호 (풍무동,양도마을)			
39	대곡	당초	555-22	답	173.0	173.0	이*순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동 ***호 (풍무동,양도마을)			
		변경	555-29	답	173.0	173.0	이*순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동  ***호 (풍무동,양도마을)			
40	대곡	당초	555-14	답	671.0	671.0	이*순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동  ***호 (풍무동,양도마을)			_
		변경	555-14	답	671.0	671.0	이*순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동 ***호 (풍무동,양도마을)	·		

일련	소재	χI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u></u>	7112	~13	( m²)	(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1	대곡	당초	555-21	답	621.0	621.0	이*순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동 ***호 (풍무동,양도마을)			
41	네 ㄱ	변경	555-28	답	621.0	621.0	이*순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동 ***호 (풍무동,양도마을)			
42	대곡	당초	555-13	답	471.0	471.0	조*환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동 ***호 (마전동,동아아파트)			
72	-11 -1	변경	555-13	답	471.0	471.0	조*환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동 ***호 (마전동,동아아파트)			
43	대곡	당초	555-20	답	68.0	68.0	조*환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동 ***호 (마전동,동아아파트)			
		변경	555-27	답	68.0	68.0	조*환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동 ***호 (마전동,동아아파트)			
	-11 -	당초	555-24	답	156.0	156.0	공	인천광역시			
44	대곡	변경	555-31	답	156.0	156.0	공	인천광역시			
45	EII 77	당초	555-25	답	50.0	50.0	공	인천광역시			
45	대곡	변경	555-32	답	50.0	12.0	공	인천광역시			
40	EU 77	당초	555-12	답	744.0	744.0	박*기	인천 남구 주안동 ***-**			
46	대곡	변경	555-12	답	744.0	744.0	박*기	인천 남구 주안동 ***-**			
47	EII 77	당초	642-4	답	443.0	443.0	공	인천광역시			
47	대곡	변경	642-3	답	554.0	271.0	공	인천광역시			
40	-11 77	당초	643-6	답	1,125.0	1,125.0	공	인천광역시			
48	대곡	변경	643-5	답	1,191.0	805.0	공	인천광역시			
40	미교	당초	643-1	답	709.0	709.0	공	인천광역시			
49	대곡	변경	643-1	답	709.0	643.0	공	인천광역시			
E0	미교	당초	555-10	답	280.0	280.0	공	인천광역시			
50	대곡	변경	555-10	답	280.0	280.0	공	인천광역시			
E1	대곡	당초	555-19	답	969.0	969.0	박*기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51	내득	변경	555-2	답	1,358.0	933.0	박*기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52	대곡	당초	555-8	답	134.0	134.0	박*기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52	네ㄱ	변경	555-8	답	134.0	134.0	박*기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53	대곡	당초	643-3	답	431.0	431.0	7-0	인천광역시			
55	네ㄱ	변경	643-3	답	431.0	431.0	공	인천광역시			
54	대곡	당초	703-9	구	763.0	763.0	국	농림축산식품부			
34	네ㄱ	변경	703-1	구	4,002.0	660.0	국	농림축산식품부			
55	대곡	당초	555-7	답	1,161.0	1,161.0	공	인천광역시			
55	네 ㄱ	변경	555-7	답	1,161.0	1,161.0	공	인천광역시			
56	대곡	당초	373	답	1,828.0	1,828.0	지*환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 게이더스버그시리닝오크가 ***			
	" '	변경	373	답	1,828.0	1,828.0	지*환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 게이더스버그시리닝오크가 ***			
57	대곡	당초	700-9	구	544.0	544.0	국	농림축산식품부			
31	네그	변경	700-9	구	544.0	544.0	국	농림축산식품부			
58	대곡	당초	산29-1	임	889.0	889.0	차*만	서울 서초구 양재동 ***-*			
_ 56	ᆁᄀ	변경	산29	임	7,835.0	950.0	차*만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일련	소재	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		112		( m²)	(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9	대곡	당초	687-15	구	5,151.0	5,151.0	국	국토교통부			
39	네ㄱ	변경	687-8	구	46,785.0	4,510.0	국	국토교통부			
60	ru az	당초	468-6	답	100.0	100.0	김*영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길 ** (서운동)			
60	대곡	변경	468-6	답	100.0	100.0	김*영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길 ** (서운동)			
61	대곡	당초	379-3	전	106.0	106.0	*******종중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01	네ㄱ	변경	379-2	전	1,750.0	170.0	*******종중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62	대곡	당초	468-5	답	522.0	522.0	김*영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길 ** (서운동)			
02	네 ㄱ	변경	468-5	답	522.0	522.0	김*영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길 ** (서운동)			
63	대곡	당초	469-4	답	109.0	109.0	신*순 외 3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변경	469-4	답	109.0	109.0	신*순 외 3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4	대곡	당초	469-14	답	1,653.0	1,653.0	신*순 외 3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번길 **-* (부평동)			
		변경	469-14	답	1,653.0	1,653.0	신*순 외 3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번길 **-* (부평동)			
65	대곡	당초	468-7	답	500.0	500.0	정*규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변경	468-8	답	500.0	500.0	정*규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66	대곡	당초	470-20	답	181.0	181.0	이*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			
		변경	470-27	답	181.0	181.0	이*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			
67	대곡	당초	470-21	답	213.0	213.0	이*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			
		변경	470-28	답	213.0	213.0	이*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			
68	대곡	당초	482-13	답	414.0	414.0	박*덕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11 1	변경	482-19	답	414.0	414.0	박*덕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11 -	당초	482-14	답	418.0	418.0	김*성 외 2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동 ****호 (옥수동,극동그린아파트)			
69	대곡	변경	482-20	답	418.0	418.0	김*성 외 2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동 ****호 (옥수동,극동그린아파트)			
70	EII 77	당초	482-15	답	1,846.0	1,846.0	이*훈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70	대곡	변경	482-21	답	1,846.0	1,846.0	이*훈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71	대곡	당초	482-16	답	488.0	488.0	신*명 외 2인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퀸스타운길훈아파트 ***-***			
71	네 〒	변경	482-22	답	488.0	488.0	신*명 외 2인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퀸스타운길훈아파트 ***-***			
72	대곡	당초	482-11	답	773.0	773.0	신*명 외 2인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퀸스타운길훈아파트 ***-***			
		변경	482-11	답	773.0	773.0	신*명 외 2인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퀸스타운길훈아파트 ***-***			
73	대곡	당초	482-17	전	184.0	184.0	이*찬	인천 서구 대곡동 ***			
	" '	변경	482-23	전	184.0	184.0	이*찬	인천 서구 대곡동 ***			
74	대곡	당초	482-12	답	159.0	159.0	이*찬	인천 서구 대곡동 ***			
′ '	" 1	변경	482-12	답	159.0	159.0	이*찬	인천 서구 대곡동 ***			

일련	소재	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 m²)	( m²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당초	533-5	답	48.0	48.0	김*호	**,***동 ****호			
75	대곡			<u> </u>				(부개동,푸른마을삼부아파트)			
	•	H게	500 E	_ F	10.0	40.0	기 : 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변경	533-5	답	48.0	48.0	김*호	**,***동 ****호 (부개동,푸른마을삼부아파트)			
$\vdash$		+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
		당초	533-7	답	167.0	167.0	이*소	**,***\s ***\s\rightarrow			
76	대곡							(마전동,검단힐스테이트아파트)			
/6	네ㄱ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변경	533-13	답	167.0	167.0	이*소	**,***동 ***호			
		1		-	<u> </u>			(마전동,검단힐스테이트아파트)		-	_
77	대곡	당초	555-23	답	1,025.0	1,025.0	주식회사***				
	······	변경	555-30	답	1,025.0	1,025.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_, <u>_</u>	10				=1 .1	인천광역시 계양구			
		당초	555-18	답	1.0	1.0	김*신	황어로***번길 **,**동 ****호			
78	대곡			-				(오류동,신동아아파트)		-	
		변경	555-26	답	1.0	1.0	김*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번길 **,**동 ****호			
		12.0	JJJ 20	н	1.0	1.0	<u>a</u> .c	(오류동,신동아아파트)			
		당초	533-8	전	7.0	7.0	문*명	인천 서구 대곡동 ***-*			+
79	대곡	- 변경	533-14	_ 전	7.0	7.0	문*명	인천 서구 대곡동 ***-*			+
		당초	533-9	 전	21.0	21.0	문*명	인천 서구 대곡동 ***-*			
80	대곡	변경	533-15	전	21.0	21.0	문*명	인천 서구 대곡동 ***-*			
$\Box$		당초	700-16	구	23.0	23.0	국	농림축산식품부			
81	대곡	- 변경		구	23.0	23.0	국	농림축산식품부			+
$\Box$		당초	700-17	구	916.0	916.0	국	농림축산식품부			+
82	대곡			구	916.0	916.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643-4	· 답			공	인천광역시			+
83	대곡	변경	643-4	답	2,541.0		공	인천광역시			+
$\Box$		당초	555-17	답	403.0	403.0	정*규	인천 서구 대곡동 ***			
84	대곡	변경	555	답	419.0	326.0	정*규	인천 서구 대곡동 ***			+
		당초	533-10	답	961.0	961.0	김*덕 외 1인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길 ** (오류동)			
85	대곡	변경	533-2	답	3,358.0	956.0	김*덕 외 1인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길 ** (오류동)			
$\vdash$		당초	643-2	도	147.0	147.0	국	농림축산식품부			
86	대곡	변경	643-2	도	147.0	83.0	국	농림축산식품부			
$\vdash$		당초	555-9	답	1,243.0	1,243.0	정*규	인천 서구 대곡동 ***			+
87	대곡	변경	555-9	답	1,243.0	1,123.0	정*규	인천 서구 대곡동 ***			+
$\vdash$		당초	555-6	답	593.0	593.0	공	인천광역시			+
88	대곡	변경	555-6	답	593.0	528.0	고	인천광역시			+
$\vdash \vdash$		단경 당초	700-12	도	97.0	97.0	<u></u> 국	원선성역시 농림축산식품부			+
		$\vdash$								<del>                                     </del>	+
	-11 77	당초	700-13	도	519.0	519.0	국	농림축산식품부		-	
89	대곡	당초	700-14	도	8.0	8.0	국	농림축산식품부		<del>                                     </del>	-
		당초	700-15	도	3,205.0	,	국	농림축산식품부		-	+
		변경	700-2	도	16,480.0	3,122.0	국	농림축산식품부			$\perp$

일련	소재	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u> </u>	7-1		. 4	( m²)	(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당초	533-11	전	296.0	296.0	박*서	****,***동 ***호			
90	대곡							(산곡동,현대아파트)			
		H게	F00 0	_ L	1 202 0	007.0	HL. 1J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		변경	533-3	답	1,003.0	297.0	박*서	****,***동 ***호 (산곡동,현대아파트)			
		당초	703-8	구	5.0	5.0	국	농림축산식품부			
91	대곡	변경	703-11	구	2,503.0	10.0	국	농림축산식품부			+
		당초	675-20	· 답	751.0	751.0	공	인천광역시			+
92	대곡	변경	675-12	답	779.0	779.0	공	인천광역시			+
			075 16	-L	10.0	1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93	대곡	당초	675–16	답	18.0	18.0	이*홍	***-* 동보아파트 ***동 ***호			
		변경									
94	대곡	당초	675-13	답	485.0	485.0	공	인천광역시			
94	네ㄱ	변경	675-13	답	485.0	485.0	공	인천광역시			
		당초	675-17	답	19.0	19.0	송*길 외 1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95	대곡		0.0		10.0		0 2 1 12	**-** 현대아파트 ***동 ****호			+
		변경	075 11		0.1.0	244.2		01-1710411			
96	대곡	당초	675-14	답	844.0	844.0	공	인천광역시			_
		변경	675-14	답	844.0	844.0	공	인천광역시			_
97	대곡	당초	675-10	답	300.0	300.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5-10	답	300.0	300.0	공	인천광역시			
98	대곡	당초	675-18	답	9.0	9.0	심*기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
		변경 당초	67E 11	다	07.0	07.0	7	이취과에서			_
99	대곡	변경	675–11 675–11	답 답	87.0 87.0	87.0 87.0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_
		당초	675-11	답	152.0	152.0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100	대곡	병조 변경	675-21	답	172.0	172.0	징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당초	706-3	구	388.0	388.0	<u> </u>	농림축산식품부			
101	대곡	변경	706	구	1,711.0	423.0	국	농림축산식품부			+
$\rightarrow$		당초	677-3	- 답	309.0	309.0	고	인천광역시			
102	대곡	으노 변경	677-3	답	309.0	309.0	8 공	인천광역시			
-+		당초	677-12	답	1,156.0		8 공	인천광역시			+
103	대곡	변경	677-8	답	1,347.0	1,347.0	공	인천광역시			+
$\rightarrow$		당초	677-11	전	5.0	5.0	임*일	인천 서구 대곡동 ***			+
104	대곡	변경	677-2	_ 전	742.0	27.0	임*일	인천 서구 대곡동 ***			
		당초	677-10	전	171.0	171.0	임*일	인천 서구 대곡동 ***			+
105	대곡	변경	677-1	전	1,010.0	189.0	임*일	인천 서구 대곡동 ***			+
		당초	677-7	답	369.0	369.0	공	인천광역시			+
106	대곡	변경	677-7	답	369.0	369.0	공	인천광역시			+
		당초	677-9	전	348.0	348.0	이*환	인천 계양구 계산동 ***-**			+
107	대곡							하나아파트 **동 ***호 인천 계양구 계산동 ***-**			
		변경	677	전	2,518.0	408.0	이*환	하나아파트 **동 ***호			
108	대곡	당초	677-6	답	73.0	73.0	공	인천광역시			+
		변경	677-6	답	73.0	73.0	공	인천광역시			+
109	대곡	당초	707-5	구	169.0	169.0	국	농림축산식품부			+
		변경	707-1	구	371.0	216.0	국	농림축산식품부		<u> </u>	

일련	소재	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그게	^1	AL.	~17	( m²)	(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sup>9</sup> 종류
110	대곡	당초	707-4	도	297.0	297.0	국	농림축산식품부			
110	내득	변경	707	도	606.0	318.0	국	농림축산식품부			
444	-11 77	당초	682	답	253.0	253.0	공	인천광역시			
111	대곡	변경	682	답	253.0	253.0	공	인천광역시			
440	-11 -77	당초	682-6	답	579.0	579.0	공	인천광역시			
112	대곡	변경	682-6	답	579.0	579.0	공	인천광역시			
110	-11 77	당초	682-12	답	412.0	412.0	공	인천광역시			
113	대곡	변경	682-1	답	417.0	407.0	공	인천광역시			
111	-11 77	당초	682-9	답	934.0	934.0	공	인천광역시			
114	대곡	변경	682-9	답	934.0	934.0	공	인천광역시			
115	대곡	당초	682-13	답	174.0	174.0	임*택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 이화마을건영캐스빌 ***-****			
115	내숙	변경	682-2	답	857.0	380.0	임*택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 이화마을건영캐스빌 ***-***			
116	대곡	당초	682-7	답	598.0	598.0	공	인천광역시			
110	내득	변경	682-7	답	598.0	598.0	공	인천광역시			
117	대곡	당초	682-10	답	605.0	605.0	공	인천광역시			
117	내득	변경	682-10	답	605.0	605.0	공	인천광역시			
118	대곡	당초	682-8	답	48.0	48.0	공	인천광역시			
110	내득	변경	682-8	답	48.0	48.0	공	인천광역시			
119	대곡	당초	682-11	답	216.0	216.0	임*택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119	네ㄱ	변경	682-11	답	216.0	216.0	임*택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120	대곡	당초	708-4	구	107.0	107.0	국	농림축산식품부			
120	417	변경	708-4	구	107.0	107.0	국	농림축산식품부			
121	대곡	당초	708-5	구	133.0	133.0	국	농림축산식품부			
121	네 ㄱ	변경	708-5	구	133.0	133.0	국	농림축산식품부			
122	대곡	당초	682-14	답	1.0	1.0	임*택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122	417	변경	682-3	답	2,146.0	94.0	임*택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당초	708-6	구	5.0	5.0	국	농림축산식품부			
123	대곡	당초	708-7	구	3.0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8	구	386.0	20.0	국	농림축산식품부			
124	대곡	당초	683-16	답	14.0	14.0	김*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길 **-**,***호 (방배동)			
124		변경	683-4	답	43.0	24.0	김*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길 **-**,***호 (방배동)			
125	대곡	당초	683-14	답	3.0	3.0	이*근	서울 양천구 신월동 ***-*			
120	-11 -7	변경	683-3	답	2,049.0	23.0	0 *근	서울 양천구 신월동 ***-*			
126	대곡	당초	683-13	답	948.0	948.0	공	인천광역시			
120	-11 -7	변경		답	948.0	948.0	공	인천광역시			
127	대곡	당초		답	1,893.0	1,893.0	공	인천광역시			
,	" 7	변경	683-10	답	1,893.0	1,893.0	공	인천광역시			
128	대곡	당초	683-19	답	1,494.0	1,494.0	공	인천광역시			
120	-11 ¬	변경	683-12	답	1,642.0	1,572.0	공	인천광역시			

일련	소재	χl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1 	/1 <u>-</u>	~13	( m²)	(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29	대곡	당초	683-9	답	265.0	265.0	공	인천광역시			
129	네그	변경	683-9	답	265.0	265.0	공	인천광역시			
120		당초	708-8	도	200.0	200.0	국	농림축산식품부			
130	대곡	변경	708-1	도	261.0	202.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1	테고	당초	686-1	답	482.0	482.0	공	인천광역시			
131	대곡	변경	686-1	답	482.0	482.0	공	인천광역시			
132	대곡	당초	686-48	답	1,132.0	1,132.0	공	인천광역시			
اعدا	네그	변경	686-26	답	1,415.0	1,134.0	공	인천광역시			
100		당초	686-17	답	1,838.0	1,838.0	공	인천광역시			
133	대곡	변경	686-17	답	1,838.0	1,793.0	공	인천광역시			
		당초	686-40	답	34.0	34.0	공	인천광역시			
134	대곡	당초	686-41	답	284.0	284.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6-8	답	1,168.0	380.0	공	인천광역시			
		당초	686-50	답	91.0	91.0	공	인천광역시			
135	대곡	변경	686-29	답	253.0	145.0	공	인천광역시			
		당초	686-18	답	698.0	698.0	공	인천광역시			
136	대곡	변경	686-18	답	698.0	698.0	공	인천광역시			
		당초	686-25	답	3.0	3.0	공	인천광역시			
137	대곡	변경	686-25	답	3.0	3.0	공	인천광역시			
		당초	686-30	답	38.0	38.0	 공	인천광역시			
138	대곡	변경	686-30	답	38.0	38.0	 공	인천광역시			
		당초	686-20	답	11.0	11.0	 공	인천광역시			
139	대곡	변경	686-20	답	11.0	11.0	 공	인천광역시			
		당초	709-4	구	22.0	22.0	 국	농림축산식품부			
140	대곡	변경	709-4	구	22.0	22.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709-6	구	17.0	17.0	 국	농림축산식품부			
141	대곡	으노 변경	709-6	구	17.0	17.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709-2	구	37.0	37.0	 국	농림축산식품부			
142	대곡	으노 변경	709-2	구	37.0	37.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686-10	천	24.0	24.0	 공	인천광역시			
143	대곡	변경	686-10	전 천			 공	인천광역시			
		당초	686-31	답	24.0	24.0 48.0	 공	인천광역시			
144	대곡				48.0						
		변경	686-31	답	48.0	48.0	공	인천광역시			
145	대곡	당초	686-3	답	184.0	184.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6-3	답	184.0	184.0	공	인천광역시			
146	대곡	당초	705-11	도	191.0	191.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5-3	도	1,116.0	185.0	국	농림축산식품부			
147	대곡	당초	705-13	구	168.0	168.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5-4	구	831.0	167.0	국	농림축산식품부			
148	대곡	당초	675–19	답	2,384.0	2,384.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5-9	답	2,398.0	2,020.0	공	인천광역시			
149	대곡	당초	677-5	답	1,759.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7-5	답	1,759.0	1,759.0	공	인천광역시			
150	대곡	당초	705–14	구	325.0	325.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5-5	구	1,707.0	315.0	국	농림축산식품부			$\perp$
151	대곡	당초	679-6	잡	221.0	221.0	공	인천광역시			
	. " '	변경	679-5	잡	1,435.0	214.0	공	인천광역시			

일련	소재	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L 11	^1	712	^1¬	( m²)	(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sup>9</sup> 종류
152	대곡	당초	677-4	답	867.0	867.0	공	인천광역시			
102	네ㄱ 	변경	677-4	답	867.0	867.0	공	인천광역시			
150	디고	당초	679-4	잡	11.0	11.0	공	인천광역시			
153	대곡	변경	679-4	잡	11.0	11.0	공	인천광역시			
454	-11 -7	당초	706-4	도	73.0	73.0	국	농림축산식품부			
154	대곡	변경	706-1	도	550.0	75.0	국	농림축산식품부			
155	-11 77	당초	705-15	구	83.0	83.0	국	농림축산식품부			
155	대곡	변경	705-9	구	2,041.0	82.0	국	농림축산식품부			
150	-11 77	당초	671-12	도	58.0	58.0	공	인천광역시			
156	대곡	변경	671-9	도	68.0	58.0	공	인천광역시			
457	-11 -7	당초	671-11	대	64.0	64.0	공	인천광역시			
157	대곡	변경	671-8	대	122.0	58.0	공	인천광역시			
450	-11 -7	당초	673-4	도	22.0	22.0	공	인천광역시			
158	대곡	변경	673-4	도	22.0	22.0	공	인천광역시			
150	-II ¬	당초	673-7	도	53.0	53.0	공	인천광역시			
159	대곡	변경	673-7	도	53.0	53.0	공	인천광역시			
400	-11 -7	당초	673-9	대	131.0	131.0	공	인천광역시			
160	대곡	변경	673-3	대	179.0	135.0	공	인천광역시			
		당초	739	도	136.0	136.0	국	국토교통부			
161	대곡	변경	739	도	136.0	136.0	국	국토교통부			
		당초	673-6	대	208.0	208.0	공	인천광역시			
162	대곡	변경	673-6	대	208.0	208.0	공	인천광역시			
		당초	673-10	전	60.0	60.0	공	인천광역시			
163	대곡	변경	673-8	전	336.0	31.0	공	인천광역시			
404	-11 -7	당초	673-1	도	149.0	149.0	임*근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164	대곡	변경	673-1	도	149.0	149.0	임*근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405	-11 -7	당초	673-5	전	247.0	247.0	공	인천광역시			
165	대곡	변경	673-5	전	247.0	226.0	공	인천광역시			
	-II ¬	당초	672-6	전	6.0	6.0	공	인천광역시			
166	대곡	변경									
	-II ¬	당초	672-4	전	91.0	91.0	공	인천광역시			
167	대곡	변경	672-4	전	91.0	57.0	공	인천광역시			
400	-11 -7	당초	산204-12	임	1,205.0	1,205.0	공	인천광역시			
168	대곡	변경	산204-6	임	1,265.0	1,128.0	공	인천광역시			
100	-11 -71	당초	산204-13	임	1.0	1.0	공	인천광역시			
169	대곡	변경									
470	-11 -7	당초	산204-15	임	190.0	190.0	공	인천광역시			
170	대곡	변경	산204-9	임	295.0	216.0	공	인천광역시			
	-11 -7	당초	683-18	구	1,025.0	1,025.0	공	인천광역시 서구			
171	대곡	변경									
		당초	683-6	도	297.0	297.0	공	인천광역시 서구			
172	대곡	변경	683-6	도	297.0	18.0	공	인천광역시 서구			
	—	_	산199-18	임	37.0	37.0	공	인천광역시			
173	대곡	변경									
	=	당초		답	1,611.0	1,611.0	공	인천광역시			
174	대곡	변경		- 답	1,674.0		 공	인천광역시			+

일련	소재	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ļ	관계인	
번호					( m²)	(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75	대곡	당초	686-38	답	24.0	24.0	상*설 외 1인	금오타운 *-***			
	41 T	변경	686	답	414.0	35.0	장*철 외 1인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 금호타운 *-****			
176	대곡	당초	686-39	답	4.0	4.0	장*철 외 1인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 금호타운 *-***			
		변경									
		당초	709–11	구	240.0	240.0	국	농림축산식품부			
177	대곡	당초	709-12	구	7.0	7.0	국	농림축산식품부			
' '	네 ¬	당초	709-13	구	236.0	236.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9	구	1,606.0	446.0	국	농림축산식품부			
178	대곡	당초	686-45	답	1,638.0	1,638.0	공	인천광역시			
1/0	내득	변경	686-19	답	1,732.0	1,356.0	공	인천광역시			
170		당초	686-11	답	34.0	34.0	공	인천광역시			
179	대곡	변경	686-11	답	34.0	34.0	공	인천광역시			
100		당초	686-46	답	1,408.0	1,408.0	공	인천광역시			
180	대곡	변경	686-21	답	1,527.0	1,235.0	공	인천광역시			
104	-47	당초	686-9	답	35.0	35.0	공	인천광역시			
181	대곡	변경	686-9	답	35.0	35.0	공	인천광역시			
	7	당초		답	32.0	32.0	공	인천광역시			
182	대곡	변경		답	42.0	1.0	공	인천광역시			
		당초		답	8.0	8.0	공	인천광역시			+
183	대곡	- 변경	i								
		당초	533-12	답	47.0	47.0	기*호 외 1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부개동,푸른마을삼	1		
184	대곡	0-		-	71.0	71.5	☐ " <del>工</del> −,	부아파트)	·		
		변경	533-16	답	47.0	47.0	김*호 외 1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부개동,푸른마을삼 부아파트)	l		
105	데고	당초	713-5	도	1.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185	대곡	변경	713-5	도	1.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6	-117	당초	693-15	도	104.0	104.0	국	농림축산식품부			+
186	대곡	변경	693-15	도	104.0	104.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7	-11 70	당초	713-4	도	17.0	17.0	국	농림축산식품부			
187	대곡	변경	713-4	도	17.0	17.0	국	농림축산식품부	1		
	-1177	당초	687-9	구	46.0	46.0	국	국토교통부			
188	대곡	변경	687-9	구	46.0	46.0	국	국토교통부			+
	-47	당초	693-14	도	842.0	842.0	국	농림축산식품부	1		
189	대곡	변경									
	7	당초	713-14	도	188.0	188.0	국	농림축산식품부			
190	대곡	변경	713-3	도	343.0	306.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도	6.0	6.0	국	농림축산식품부			
191	대곡	- 변경	713-12	도	105.0	52.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i								+
192	대곡	변경	701-1	구	61.0	20.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ĺ								+
193	대곡	변경	701	도	138.0	13.0	국	농림축산식품부		+	+

일련	소재	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_
번호	- "	•	'-		( m²)	(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당초									
194	대곡	변경	555-11	답	12.0	12.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로***번길 ** (강남동)			
		당초									
195	대곡	변경	555-1	답	15.0	4.0	김*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번길 **,**동 ****호 (오류동,신동아아파트)			
196	대곡	당초									
190	네 ㄱ	변경	533-1	전	1,297.0	18.0	문*명	인천 서구 대곡동 ***-*			
197	대곡	당초 변경	700-4	구	4,641.0	25.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198	대곡	변경 당초	산204-5	임	413.0	3.0	공	인천광역시			
199	대곡	변경	산204-7	임	690.0	13.0	공	인천광역시			
		당초			000.0	10.0		22011			
200	대곡	변경	693-12	도	1.499.0	756.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						
201	대곡	변경	554-23	답	1,013.0	70.0	신*석	김포시 북변동 산**			
		당초			,						
202	대곡	변경	554-12	답	17.0	9.0	신*석	김포시 북변동 산**			
		당초									
203	대곡	변경	676-2	답	3,949.0	2.0	이*영	인천 서구 가정동***한국아파트***-***			
	-u ¬	당초									
204	대곡	변경	713-18	도	918.0	5.0	국	농림축산식품부			
205	н -	당초	4-16	답	314.0	314.0	공	인천광역시			
205	불로	변경	4-8	답	2,228.0	318.0	공	인천광역시			
000	н -	당초	4-10	답	188.0	188.0	공	인천광역시			
206	불로	변경	4-10	답	188.0	188.0	공	인천광역시			
007	u	당초	4-9	답	184.0	184.0	공	인천광역시			
207	불로	변경	4-9	답	184.0	184.0	공	인천광역시			
208	불로	당초	21-30	임	359.0	359.0	공	인천광역시			
200		변경	21-20	임	575.0	358.0	공	인천광역시			
		당초	21-33	도	68.0	68.0	국	국토교통부			
209	불로	당초	21-34	도	34.0	34.0	국	국토교통부			
		변경	21-24	도	4,473.0	127.0	국	국토교통부			
210	불로	당초	20-6	도	63.0	63.0	고	인천광역시 서구			
		변경	20-6	도	63.0	63.0	고	인천광역시 서구			
211	불로	당초	21-28	도	104.0	104.0	공	인천광역시			
		변경									
040	<b>u</b> ¬	당초	19-14	도	53.0	53.0	김*수 외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동 ****호 (압구정동,한양아파트)			
212	불로	변경	19-14	도	53.0	53.0	김*수 외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일련	소재	   <del> </del>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그게	^	시민	\\\=   	( m²)	면석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13	불로	당초	20-1	도	7.0	7.0	문*진 외 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 큰마을현대아파트 ***-***			
210	<u> </u>	변경	20-1	도	7.0	7.0	문*진 외 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 큰마을현대아파트 ***-**			$\prod_{}$
24.4		당초	19-22	도	69.0	69.0	임*용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정동 ***			<b>T</b> _
214	불로	변경	19-15	도	78.0	78.0	임*용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정동 ***			
215	불로	당초	19-10	도	38.0	38.0	김*수	서울 종로구 승인동 ***			<b>T_</b>
215		변경	19-10	도	38.0	38.0	김*수	서울 종로구 승인동 ***			
216	불로	당초	519-28	도	13.0	13.0	국	농림축산식품부			
210	三二	변경	519-11	도	30.0	30.0	국	농림축산식품부			
217	불로	당초	19-3	도	132.0	132.0	김*수 외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동 ****호 (압구정동,한양아파트)			
	<u>一</u>	변경	19-3	도	132.0	132.0	김*수 외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동 ****호 (압구정동,한양아파트)			
218	불로	당초	3-11	답	526.0	526.0	공	인천광역시			Τ
210		변경	3-7	답	776.0	499.0	공	인천광역시			
210	불로	당초	3-4	답	379.0	379.0	안*용 외 1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219	팔노	변경	3-4	답	379.0	379.0	안*용 외 1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220	불로	당초	19-8	도	234.0	234.0	임*용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20	<u> </u>	변경	19-8	도	234.0	234.0	임*용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당초	3-5	전	175.0	175.0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세종시 한누리대로 ***(어진동)			
221	불로	변경	3-5	전	175.0	175.0	고*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동 ***호 (경서동,동양엔파트)			
222	불로	당초	519-10	도	47.0	47.0	국	농림축산식품부			
222		변경	519-10	도	47.0	47.0	국	농림축산식품부			
223	불로	당초	519-12	구	25.0	25.0	국	농림축산식품부			
220	잘노	변경	519-12	구	25.0	25.0	국	농림축산식품부			
224	불로	당초	19-2	도	175.0	175.0	국	국토교통부			
224	골포	변경	19-2	도	175.0	175.0	국	국토교통부			
		당초	3	답	2.0	2.0	배∗은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동 ***호 (호원동,호원동한승미메이드아 파트)			
225	불로	변경	3	답	2.0	2.0	배⋆은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동 ***호 (호원동,호원동한승미메이드아 파트)			
200		당초	3-8	답	2.0	2.0	공	인천광역시			
226	불로	변경	3-8	답	2.0	2.0	공	인천광역시			
007	ш э	당초	0-2	가		622.0	미등기	*			
227	불로	변경	0-2	가		622.0	미등기	*			

일련	소재	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 m²)	(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당초	3-9	전	447.0	447.0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세종시 한누리대로 ***(어진동)			
228	불로	변경	3-9	전	447.0	447.0	고*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동 ***호 (경서동,동양엔파트)			
000	н -	당초	19-18	도	12.0	12.0	공 외 10인	인천광역시			
229	불로	변경	19-18	도	12.0	12.0	공 외 10인	인천광역시			
000	н -	당초	19-9	도	189.0	189.0	임*용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30	불로	변경	19-9	도	189.0	189.0	임*용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당초	3-13	전	277.0	277.0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세종시 한누리대로 ***(어진동)			
231	불로	변경	3–10	전	1,310.0	428.0	고*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동 ***호 (경서동,동양엔파트)			
		당초	519-24	도	72.0	72.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519-25	도	6.0	6.0	국	농림축산식품부			
232	불로	당초	519-26	도	154.0	154.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519	도	668.0	237.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519-27	도	32.0	32.0	국	농림축산식품부			
233	불로	변경	519-1	구	2,034.0	34.0	국	농림축산식품부			
234	불로	당초	4-15	답	109.0	109.0	김*수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안길 **,***동 ***호 (마전동,검단*차대주피오레아파 트)			
234	<b></b>	변경	4-5	답	224.0	113.0	김*수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안길 **,***동 ***호 (마전동,검단*차대주피오레아파 트)			
		당초	19-19	도	11.0	11.0	공 외 10인	인천광역시			
235	불로	변경	19-19	도	11.0	11.0	공 외 10인	인천광역시			
		당초	19-16	도	34.0	34.0	임*용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36	불로	변경	19-16	도	34.0	34.0	임*용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당초	19-17	도	4.0	4.0	임*용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37	불로	변경	19-17	도	4.0	4.0	임*용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당초	18-4	도	3.0	3.0	장*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38	불로	변경	18-4	도	3.0	3.0	장*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당초	18-6	도	226.0	226.0	공	인천광역시 서구			
239	불로	변경	18-5	도	239.0	239.0	공	인천광역시 서구			
		당초	18-2	도	190.0	190.0	유*숙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40	불로	변경	18-2	도	190.0	190.0	유*숙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당초	18-3	도	3.0	2.0	장*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41	불로	변경	18-3	도	3.0	3.0	장*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당초	21-26	답	11.0	11.0	임*택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42	불로	변경	21-6	답	96.0	14.0	임*택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당초	21-8	도	25.0	25.0	고 공	인천광역시			
243	불로	변경	21-8	도	25.0	25.0	공	인천광역시			
		당초	21-19	도	2.0	2.0	임*경	마전동			
244	불로	변경	21-19	도	2.0	2.0	임*경	마전동			

일련	소재	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_
번호	- "	'	1		( m² )	(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45	불로	당초	17-4	도	3.0	3.0	박*혜 외 17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번길 **, ***동 ***호(구운동,코오롱하늘채아파 트)			
240	支工	변경	17-4	도	3.0	3.0	박*혜 외 17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번길 **, ***동 ***호(구운동,코오롱하늘채아파 트)			
0.40	н -	당초	21-2	도	17.0	17.0	임*경	검단면 마전리			
246	불로	변경	21-2	도	17.0	17.0	임*경	검단면 마전리			
0.47	шп	당초	20-7	천	19.0	19.0	국	국토교통부			
247	불로	변경	20-5	천	24.0	24.0	국	국토교통부			
248	불로	당초	20-4	천	40.0	40.0	국	국토교통부			
240	ᆯᅩ	변경	20-4	천	40.0	40.0	국	국토교통부			
249	불로	당초	19-21	도	1.0	1.0	임*용 외 5인	마전리 ***			
249	五工	변경	19-11	도	3.0	3.0	임*용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50	불로	당초	17-5	도	13.0	13.0	나*경만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번길**,***-****( 송도동,송도해모로월드뷰)			
230	至五	변경	17-3	도	58.0	25.0	나*경만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번길**,***-****( 송도동,송도해모로월드뷰)			
251	불로	당초	17-2	도	4.0	4.0	박*혜 외12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번길 **,***동 ***호(구운동,코오롱하늘채아파 트)			
201	<b>宣</b> 上	변경	17-2	도	4.0	4.0	박*혜 외12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번길 **,***동 ***호(구운동,코오롱하늘채아파 트)			
252	불로	당초	21-27	도	1.0	1.0	류*자	서울 서초구 명달로*길**,***-***			
202	e ±	변경	21-7	도	26.0	2.0	류*자	서울 서초구 명달로*길**,***-***			
253	불로	당초	21-25	도	7.0	7.0	임*경	마전동			
-		변경	21-5	도	15.0	11.0	임*경	마전동			
254	불로	당초					_				
		변경	21-12	도	108.0	100.0	공	인천광역시			
255	불로	당초	04 /=	-	000 -			21215			
		변경	21-15	도	632.0	4.0	공	경기도			
256	마전	당초	290-21	도	13.0	13.0	공	인천광역시			
		변경	290-17	도	2,980.0	13.0	공	인천광역시 노리초사사표비			
257	마전	당초	416-43	구	24.0	24.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416-34	구	84.0	24.0	국	농림축산식품부			
258	마전	당초	416-41	도	28.0	28.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416-33	도	82.0	29.0	국	농림축산식품부			
259	마전	당초	321-32	도	116.0	116.0	임*택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일련	소재	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 m²)	(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60	마전	당초	321-33	도	7.0	7.0	문*진 외 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 큰마을현대아파트 ***-***			
200	마인	변경	321-21	도	49.0	37.0	문*진 외 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 큰마을현대아파트 ***-**			
261	미저	당초	321-22	도	34.0	34.0	문*진 외 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 큰마을현대아파트 ***-***			
201	미근	변경	321-22	도	34.0	34.0	문*진 외 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 큰마을현대아파트 ***-***			
262	미저	당초	159-8	도	10.0	10.0	김*복 외 2인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			
202	마인	변경	159-5	도	937.0	262.0	김*복 외 2인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			
000	미저	당초	290-20	도	530.0	530.0	공	인천광역시			
263	마인	변경	290-16	도	1,163.0	544.0	공	인천광역시			
264	미저	당초	321-23	도	32.0	32.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64	마인	변경	321-23	도	32.0	32.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005	미저	당초 321-22 도 34.0 34.0 문*신 외 3인 *** 큰마을현대아파! 변경 321-22 도 34.0 34.0 문*진 외 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시 *** 큰마을현대아파! 경기도 고양시 일산시 *** 큰마을현대아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 변경 159-5 도 937.0 262.0 김*복 외 2인 고양시 일산동구 성 변경 290-20 도 530.0 530.0 공 인천광역시 변경 290-16 도 1,163.0 544.0 공 인천광역시 서구 미 변경 321-23 도 32.0 32.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미 변경 321-23 도 32.0 32.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미 변경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미 변경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미 변경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미 변경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미 변경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미 변경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미 변경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미 변경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미 변경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미 반경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미 반경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미 반경 321-24 도 215.0 215.0 김*복 외 2인 고양시 일산동구 성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65	마인	마산 당초 321-22 도 34.0 34.0 문*진 외 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시 *** 큰마을현대아파! 변경 321-22 도 34.0 34.0 문*진 외 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시 *** 큰마을현대아파! 한권 159-5 도 937.0 262.0 김*복 외 2인 고양시 일산동구 성 변경 159-5 도 937.0 530.0 공 인천광역시 변경 290-16 도 1,163.0 544.0 공 인천광역시 선구 미선 16경 321-23 도 32.0 32.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미선 16경 321-23 도 32.0 32.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미선 16경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미산 16경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미산 16경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미산 16경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미산 16경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미산 16경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미산 16경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미산 16경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미산 16경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미산 16경 159-2 도 15.0 15.0 김*복 외 2인 고양시 일산동구 성 16경 159-2 도 15.0 15.0 김*복 외 2인 고양시 일산동구 성 16 16경 159-2 도 15.0 80.0 공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000	당초 321-22 도 34.0 34.0 문*진외3인 경기 **** 변경 321-22 도 34.0 34.0 문*진외3인 경기 ***  단점 159-8 도 10.0 10.0 김*복외2인 고양 변경 159-5 도 937.0 262.0 김*복외2인 고양 변경 290-16 도 1,163.0 544.0 공 변경 321-23 도 32.0 32.0 김*익 인 변경 321-23 도 32.0 32.0 김*익 인 변경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 변경 159-7 도 14.0 14.0 김*복외2인 고양 변경 159-2 도 15.0 15.0 김*복외2인 고양 변경 159-2 도 15.0 15.0 김*복외2인 고양 변경 159-2 도 15.0 15.0 김*복외2인 고양 변경 727-7 도 80.0 80.0 국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									
266	마인	마선 변경 321-22 도 34.0 34.0 문*진 외 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 *** 큰마을현대아파트 마전 변경 159-8 도 10.0 10.0 김*복 외 2인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 변경 159-5 도 937.0 262.0 김*복 외 2인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 변경 290-20 도 530.0 530.0 공 인천광역시 변경 290-16 도 1,163.0 544.0 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 변경 321-23 도 32.0 32.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 변경 321-23 도 32.0 32.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 변경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 변경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 변경 321-24 도 14.0 14.0 김*복 외 2인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 변경 159-2 도 15.0 15.0 김*복 외 2인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 변경 159-2 도 15.0 15.0 김*복 외 2인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 만전 만전 159-2 도 15.0 15.0 김*복 외 2인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 만전 159-2 도 15.0 15.0 김*복 외 2인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 만전 159-2 도 15.0 15.0 김*복 외 2인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 만전 727-3 도 80.0 80.0 국 국토교통부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								
007	- I TJ	변경     321-22     도     34.0     문*진 외 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분 *** 큰마을현대아파트 ***       마전     당초     159-8     도     10.0     10.0     김*복 외 2인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변경     159-5     도     937.0     262.0     김*복 외 2인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마전     당초     290-20     도     530.0     중     인천광역시       변경     290-16     도     1,163.0     544.0     공     인천광역시       마건     당초     321-23     도     32.0     32.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변경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마건     당초     159-7     도     14.0     14.0     김*복 외 2인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마건     당초     727-7     도     80.0     80.0     국     국토교통부       마건     당초     727-3     도     90.0     국     국토교통부       마건     당초     727-8     도     16.0     16.0     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67	마선	변경	727-3	도	90.0	90.0	국	국토교통부			
200	DIT!	당초	727-8	도	16.0	16.0	국	국토교통부			
268	마선	변경	727-5	도	43.0	43.0	국	국토교통부			
	-171	당초	727-6	도	21.0	21.0	국	국토교통부			
269	마전	변경	727	도	36.0	36.0	국	국토교통부			
	-171	당초	321-26	도	2.0	2.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70	마전	변경	321-26	도	2.0	2.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1.71	당초	326-8	도	643.0	643.0	국	국토교통부			
271	마전	변경	326-4	도	810.0	660.0	국	국토교통부			
	-1-1	당초	399-23	구	166.0	166.0	국	국토교통부			
272	마전	변경	399-1	구	311.0	167.0	국	국토교통부			
		당초	399-19	구	6.0	6.0	국	국토교통부			
273	마전	변경	399-19	구	6.0	6.0	국	국토교통부			
	-1-1	당초	399-22	구	291.0	291.0	국	국토교통부			
274	마전	변경	399	구	699.0	302.0	국	국토교통부			
	_:=:	당초	182-22	도	281.0	281.0	공	인천광역시			
275	마전	변경	182-20	도	2,118.0	254.0	공	인천광역시			
		당초	446-65	도	17.0	17.0	국	농림축산식품부			
276	마전	변경	446-63	도	105.0	16.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446-64	구	9.0	9.0	국	농림축산식품부			
277	마전	변경	446-62	구	38.0	16.0	국	농림축산식품부			
	_,	당초	0-0	가		145.0	미등기	*			
278	마전	변경	0-0	가		145.0	미등기	*			
		당초	326-10	임	592.0	592.0	국	기획재정부			
279	마전	변경	326-6	임	3,260.0	606.0	국	기획재정부			
		당초	326-7	도	119.0	119.0	국	국토교통부			
280	마전	변경	326-1	도	222.0	123.0	- 국	국토교통부			

	ᄼᄱ	Τl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281 마전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1	시킨	시크	( m²)	(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당초	321-34	도	4.0	4.0	문*진외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 큰마을현대아파트 ***-***			
281	마전	당초	321-30	도	58.0	58.0	문*진외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 큰마을현대아파트 ***-***			
		변경	321-2	도	72.0	72.0	문*진외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 큰마을현대아파트 ***-***			
000	- LT-J	당초	321-16	도	22.0	22.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82	마인	변경	321-16	도	22.0	22.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02	미저	당초	321-25	도	35.0	3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83	282 마전 - 283 마전 - 284 마전 -	변경	321-25	도	35.0	3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004	미저	당초	321-19	도	1.0	1.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84	마인	변경	321-19	도	1.0	1.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005	미저	당초	399-18	구	3.0	3.0	국	국토교통부			
285	마인	변경	399-18	구	3.0	3.0	국	국토교통부			
206	미저	당초	산1-4	임	298.0	298.0	국	국토교통부			
200	마인	변경	산1	임	1,586.0	303.0	국	국토교통부			
207	미저	당초									
201	olG.	변경	321-20	도	7.0	2.0	임*택	마전동 ***			
		당초									
288	마전	변경	321-3	도	82.0	1.0	문*진 외 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 큰마을현대아파트 ***-***			
200	미저	당초									
289	마인	변경	727-4	도	160.0	23.0	국	국토교통부			
		당초									
290	마전	변경	321-29	도	11.0	11.0	문*진 외 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 큰마을현대아파트 ***-***			
	하게		당초			109,121.8					
	입계	변경 당초 H전 변경	변경	<del></del>		105,535.0					

## O 지장물조서

일련	٨ ٦١ ٦١	지	번		7 T D 7 7	시매티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연면적	성명	주소	비고
1	대곡	산29	산29	농막	목제/비닐	22 m²	차*만	서울 서초구 양재동 ***-*	
2	대곡	533-6	533-16	사무실	조립식/함석	19 m²	김*호 외 1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부개동,푸른마 을삼부아파트)	
3	대곡	555-13	555-13	작물	깻잎	241 m²	공	인천광역시	
				작물	고추	242 m²			
4	대곡	533-3	533-3	작물	콩	285 m²	박*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동 ***호 (산곡동,현대아파트)	
				유실수	블루베리	134주			
5	대곡	555-2	555-2	창고	조립식	3 m²	박*기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자두나무		121주			
6	대곡	675-9	675-9	창고(2동)	조립식	32 m²	공	인천광역시	
				물탱크		1식			
				작물	배추	714 m²			
				작물	옥수수	714 m²			
				작물	콩	714 m²			
7	대곡	675-9	675-9	가건물	목재	4	70	인천광역시	
				견사		18 m²			
8	대곡	677-5	677-5	작물	꺳잎	44m	공	인천광역시	
				작물	배추	628 m²			
				작물	상추	229 m²			
				작물	콩	1726 m²			
				작물	고추	1499 m²			
9	대곡	677-8	677-8	가건물(2동)	목제	18 m²	공	인천광역시	
				비닐하우스		32 m²			
				컨테이너(2 동)		38 m²			
10	대곡	679-5	679-5	창고	철파이프/천막	241 m²	공	인천광역시	
				휀스	철제	56m			
11	대곡	677-4	677-4	컨테이너(2 동)		27 m²	공	인천광역시	
12	대곡	677-7	677-7	이동식화장 실		1식	공	인천광역시	
13	대곡	671-6	671-6	창고	블록조/스레트	211 m²	문*종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14	대곡	673-6	673-6	창고	블록조/스레트	208 m²	공	인천광역시	
				창고	철파이프/천막	205 m²			
				컨테이너(5 동)		90 m²			
15	대곡	682-6	682-6	컨테이너(2 동)		37 m²	공	인천광역시	
16	대곡	683-10	683-10	컨테이너(2 동)		30 m²	공	인천광역시	

일련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연면적		소 유 자	· 비고
번호	그세시	당초	변경	글인커 611	_		성명	주소	12
17	대곡	683-9	683-9	가건물	목제/스레트	12 m²	공	인천광역시	
				물탱크	PE	2EA			
18	대곡	683-9	683-9	가건물	철파이프/함석	8 m²	공	인천광역시	
				컨테이너		19 m²			
				차광막(2동)	철파이프/차광 막	24 m²			
19	불로	4-8	4-8	컨테이너		18 m²	740	인천광역시	
				가건물	조립식	12 m²			
				차광막	철파이프/차광 막	12 m²			
20	불로	3-4	3-4	가건물	조립식	4 m²	안*용 외 1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가건물	철파이프/스레 트	12 m²			
				가건물	조립식	12 m²			
21	불로	21-20	21-20	초소	블럭조	12 m²	740	인천광역시	
				비석	석제	1식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6호

## 도시계획시설(검단중앙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도시계획시설(검단중앙 도시자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계양공원사업소(☎ 032-458-7183), 인천광역시청 (공원조성과 ☎ 032-458-7048), 서구청(공원녹지과 ☎ 032-560-4492)에 비치하였습니다.

2022. 1. 10. 인 천 광 역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공원 중 도시자연공원)
  - 2) 명 칭: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 3. 면적 및 규모 (변경)
  - 기 정: 605,733 m²
  - 변 경: 605,436 m²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계양공원사업소장)
  -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계산동)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 정: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 변 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변경)
- 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00~18:00)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 계양공원사업소, 서구청

붙임 토지조서 1부

## □ 토지조서(변경)

(	일련	소	재지	тіш	-10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ш-
	번호	구	동	지번	지목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비고
	기정		합	계		725,709	605,733			1/1				
	변경		합	계		605,436	605,436							
	기정	서구	왕길동	1-2	답	26.0	26.0	김〇〇	인천부평구 부평동 ○○○○	1/1				
1	변경		왕길동	1-2		26.0	26.0	김○○	인천부평구 부평동 ○○○○	1/1	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근저당권 설정	
	기정	서구	왕길동	19-1	도	201	18.0	권〇〇	인천광역시 서구 ○○○○	1/2				
								주식회사 ○○후레임	인천광역시 서구 ○○○○	1/2	○○기업 은행	서울중구 을지로○○ (김포산단지점)	근저당권 설정	
											권○○	서구 검단로 250번길1	근저당권 설정	
2	변경	서구	왕길동	19-2	도	18.0	18.0	권〇〇	인천 서구 검단로 ○○○○	1/2				
								주식회사	인천 서구 봉수대로 ○○○○	1/2	○○ 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김포산단지점)	근저당권 설정	
								○○후레임		1/2	권○○	인천 서구 검단로 ○○번길 1 (오류동)	근저당권 설정	
3	기정		왕길동	20-1	답	201	22.0	권〇〇	인천서구 검단로 ○○○○	1/1				
3	변경		왕길동	20-2	답	23.0	23.0	권〇〇	인천서구 검단로 ○○○○	1/1				
	기정	서구	왕길동	21-1	답	2,142.0	2,142.0	심○○	서울 용산구 효창동 ○○○○	1/76				
								심○○	김포군 대곶면 ○○○○	1/76				
								조〇〇	서울특별시 강남구 ○○○○	1/8				
								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	1/8				
								박이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	2/44				
								박○○	서울특별시 서초구 ○○○○	2/44				
4								김〇〇	서울특별시 강남구 ○○○	1/68				
								손00	충청남도 계룡시 ○○○○	4/68				$\perp$
								손00	충청남도 계룡시 ○○○○	2/68				$\perp$
								손()()	충청남도 계룡시 ○○○○	4/76				
								손〇〇	충청남도 계룡시 ○○○○	2/76				
								손()()	충청남도 계룡시 ○○○○	2/76				

일련	1	소:	재지	<b>-141</b>	-10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번호	<u> </u>	구	동	지번	지목	(m²)	(m²)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 비.
						, ,	박00	서울특별시 서초구 ○○○○	2/76		-		
							김○○	경기도 평택시 ○○○○	6/68				
							김○○	서울특별시 강남구 ○○○○	4/68				
							이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〇〇〇〇	3/176				
							김○○	인천광역시 서구 ○○○○	3/176				
							김○○	서울특별시 양천구 ○○○○	3/88				
							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	2/44				
							심	인천광역시 서구 ○○○○	3/76				
							심○○	경기도 안양시 ○○○○	2/44				
							진○○	인천광역시 강화군 ○○○○	3/76				
벋	변경	서구	왕길동	21-1	답	2,142.0	2,142.0 심〇〇	서울 용산구 효창동○○○	1/76				
							심○○	김포군 대곶면 ○○○○	1/76				
							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	1/8				
							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	1/8				
							박00	서울특별시 서초구 ○○○○	2/44				
							박00	서울특별시 서초구 ○○○○	2/44				
							인천광역시		1/68				
							손이이	충청남도 계룡시 ○○○○	4/68				
							손이이	충청남도 계룡시 ○○○○	2/68				
							손〇〇	충청남도 계룡시 ○○○○	4/76				
							손이이	충청남도 계룡시 ○○○○	2/76				
							손〇〇	충청남도 계룡시 ○○○○	2/76				
							박00	서울특별시 서초구 ○○○○	2/76				
							김〇〇	경기도 평택시 ○○○○	6/68				
							김〇〇	서울특별시 강남구 ○○○○	4/68				
							0 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3/176	제주시		압류	
							김○○	인천광역시 서구 ○○○○	3/176				
							인천광역시		3/88				
							0 00	서울특별시 마포구 ○○○○	2/44				
							심○○	인천광역시 서구 ○○○○	3/76				
							인천광역시		2/44				
							진○○	인천광역시 강화군 ○○○○	3/76				
			왕길동	21-2	전	2,655.0	2,655.0 권〇〇	인천서구 검단로 ○○○○	1/1				I
민			왕길동	21-2	전	2,655.0	2,655.0 권○○	인천서구 검단로 ○○○○	1/1				
フ	기정	서구	왕길동	24	답	2,988.0	568.0 ○○○판	인천서구 당하동 ○○○○	1/1				

잍	실련	소	재지	тіш	710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ш -
변	보호	구	동	지번	지목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ᅵ비교
								관공파종중						
	변경	서구	왕길동	24-1	답	569.0	569.0	○○○○판 관공파종중	인천서구 당하동 ○○○○	1/1				
7	기정	서구	왕길동	25	답	456.0	179.0	문〇〇	경기김포시 통진읍 ○○○○	1/1				
1	변경	서구	왕길동	25-1	답	169.0	176.0	문〇〇	경기김포시 통진읍 ○○○○	1/1				
	기정	서구	왕길동	26	답	4,241.0	4,241.0	박○○	인천서구 심곡동 ○○○○	1/2	○○○○협동 조합	서구 가정동○○○○	근저당권 설정	
								임○○	인천서구 심곡동 ○○○○	1/2				
											○○○○협동 조합	서구 가정동○○○○	지상권 설정	
											한국〇〇 공사	서울강남구삼성동 ○○○○	지상권 설정	
8	변경	서구	왕길동	26	답	4,241.0	4,241.0	박00	인천 서구 심곡동 ○○○○	1/2	○○○○협동 조합	인천 서구 가정동()()()	근저당권 설정	
											한국○○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	구분 지상권	
								임○○	인천 서구 심곡동 ○○○○	1/2		0141 117		
											○○○○협동 조합	인천 서구 가정동482-4	지상권 설정	
											한국○○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지상권 설정	
	기정	서구	왕길동	26-1	임	1,823.0	1,667.0	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	496/1823				
								0 00	서울특별시 서초구 ○○○○	496/1823				
								권〇〇	서울특별시 중구 ○○○○	100/1823				I
9								양○○	인천광역시 부평구 ○○○	731/1823	900	서울영등포구당산 동3가558-3더파크 365-1411	근저당권 설정	
-	변경	서구	왕길동	26-2	임	1,668.0	1,668.0	0 00	서울특별시 양천구 ○○○	496/1823	이00	서울영등포구당산 동3가558-3더파크 365-1411	근저당권 설정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	496/1823	이 () (	서울영등포구당산 동○○○	근저당권 설정	
								양○○	인천광역시 부평구 ○○○○	100/1823	0 00	서울영등포구당산	근저당권	

	실련	소	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그
변	호	구	동	시킨	시속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7 17
												동○○○	설정	
								양○○	인천광역시 부평구 ○○○○	731/1823	0 00	서울영등포구당산 동○○○	근저당권 설정	
	기정	서구	왕길동	30-5	임	61.0	61.0	정○○	서울강남구 논현동 ○○○○	1/1				
10	변경	서구	왕길동	30-5	임	61.0	61.0	정○○	서울강남구 논현동 ○○○○	1/1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근저당권 설정	
											기술○○ 기금	부산남구 문현 금융로○○○○	가압류	
											신용〇〇 기금	대구 동구 ○○○○	가압류	
11	기정	서구	왕길동	107-10	목	120.0	120.0	0 00	인천서구 청라캐낼로 ○○○○	1/1	서울○○○○ 주식회사	서울종로구 ○○○○	가압류	
											인천서구		압류	
											당진시		압류	
											국(서인천 세무서)		압류	
	변경	서구	왕길동	107-10	목	120.0	120.0	인천광역시		1/1				
12	기정	서구	왕길동	107-17	대	12.0	12.0	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	1/1				
12	변경	서구	왕길동	107-17	대	12.0	12.0	인천광역시		1/1				
13	기정	서구	왕길동	108	전	436.0	306.0	권○○	인천서구 왕길동 ○○○○	1/1				
13	변경	서구	왕길동	108-1	전	307.0	307.0	인천광역시		1/1				
14	기정	서구	왕길동	109	장	590.0	11.0	㈜젠○○	인천남동구 석촌로 ○○○○	1/1	주식회사 ○○은행	서울중구 남대문로○○ (○○지점)	근저당권 설정	
	변경	서구	왕길동	109	장	590.0	11.0			1/1				
15	기정	서구	왕길동	109-1	임	116.0	116.0	한국○○공 사	전남 나주시 전력로 ○○○○	1/1				
13	변경	서구	왕길동	109-1	임	116.0	116.0	한국()()공 사	전남 나주시 전력로 ○○○○	1/1				
16	기정	서구	왕길동	111-10		68.0	68.0	인천시		1/1				
	변경	서구	왕길동	111-10		68.0	68.0	인천시		1/1				
17	기정	선구	왕길동	164-17	도	10.0	10.0	인천시		1/1				-
	변경	서구	왕길동	164-17	도	10.0	10.0	인천시		1/1			_ , .	
18	기정	서구	왕길동	193-1	전	1,261.0	12.0	김○○	인천서구 마전동 ○○○○	1/1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김포양촌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설정	

2	실련	소	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ш
변	보호	구	동	시인	시독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비고
	변경	서구	왕길동	193-9	전	12.0	12.0	김○○	인천서구 마전동 ○○○○	1/1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김포양촌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설정	
19	기정	서구	왕길동	193-3		426.0	34.0	인천시		1/1				
19	변경	서구	왕길동	193-10	도	33.0	33.0	인천시		1/1				
20	기정	서구	왕길동	196-5	장	4,344.0	36.0	㈜○○에이 엘	인천서구 원당대로 ○○○○	1/1	주식회사 ○○은행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〇 (〇〇종합금융센타	근저당권 설정	
	변경	서구	왕길동	196-29	장	4,344.0	36.0	㈜ 이에이	인천서구 원당대로 ○○○○	1/1				
21	기정	서구	왕길동	204-49	도	1,128.0	736.0	인천시		1/1				
21	변경	서구	왕길동	204-68	도	702.0	702.0	인천시		1/1				
22	기정	서구	왕길동	204-51	도	1,992.0	767.0	인천시		1/1				
22	변경	서구	왕길동	204-69	도	771.0	771.0	인천시		1/1				
	기정	서구	왕길동	204-53	임	536.0	536.0	문〇〇	화성군 송산면 ○○○○	384/1548				
								인천광역시		1164/1548				
								000	인천 남동구 수현로 ○○○○	192/1548				
23	변경	서구	왕길동	204-53	임	536.0	536.0	이○○	인천 서구 크리스탈로 ○○○○	192/1548				
								인천광역시		1164/1548				
24	기정	서구	왕길동	610	구	3,995.0	654.0	국 (국토교통부)		1/1				
24	변경	서구	왕길동	610-6	구	648.0	648.0	(국도교공무)		1/1				
25	기정	서구	왕길동	618-1	도	578.0	92.0	(국도교공무)		1/1				
	변경	서구	왕길동	618-26	도	94.0	94.0	( 1 エルター)		1/1				
26	기정	서구	왕길동	618-10	도	157.0	70.0	국 (국토교통부)		1/1				
20	변경	서구	왕길동	618-27	도	72	72.0	국		1/1				

Q	실련	수	재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년호	구	동	지번	지목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비고
-	_ <del></del>					( )		<u> </u>	1-	116	00		E-1011	
	기정	서구	왕길동	산1-1	임	13,587.0	9,286.0	이 이 이 이	인천광역시 동구 ○○○○					
				_			,	900	인천광역시 서구 ○○○○					
								이 ○ ○	서울특별시 은평구 ○○○					
								900	인천광역시 남구 ○○○○					
								900	인천광역시 서구 ○○○○					
								900	경기도 부천시 ○○○○					
								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900	인천광역시 서구 ○○○○					
								900	인천광역시 서구 ○○○○					
								900	인천광역시 서구 ○○○○					
27								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					
27	변경	서구	왕길동	산1-1	임	9,599.0	9,599.0	900	인천광역시 동구 ○○○○					
							,	900	인천광역시 서구 ○○○○					
								900	서울특별시 은평구 ○○○					
								900	인천광역시 남구 ○○○○					
								900	인천광역시 서구 ○○○○					
								900	경기도 부천시 ○○○○					
								이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900	인천광역시 서구 ○○○○					
								900	인천광역시 서구 ○○○○					
								이 ) )	인천광역시 서구 ○○○○					
								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					
	기정	서구	왕길동	산1-2	임	719.0	430.0	900	서울서초구 방배로 ○○○○	1/1	주식회사	서울중구회현동○		
28											○○은행	000	설정	
	변경		왕길동	산1-7	임	404.0	404.0	이 ○ ○	서울서초구 방배로 ○○○○	1/1				
	기정	서구	왕길동	산1-3	임	4,521.0	3,714.0	박00	인천남동구 논고개로 ○○○○	1/2				
29			01715		0.1			고	충청북도 청원군 ○○○○	1/2				
	변경		왕길동	산1-8	임	3,405.0	3,405.0	인천광역시		1/1				
	기정	서구	왕길동	산2	임	9,785.0	9,785.0	000	인천시 중구 신흥동 ○○○○	1/3				
								000	인천시 중구 신흥동 〇〇〇〇	1/3				
30								000	인천 남구 옥련동 ○○○○	1/3				
	변경	서구	왕길동	산2	임	9,587.0	9,587.0	000	인천시 중구 신흥동 ○○○○	1/3				
								000	인천시 중구 신흥동 ○○○○	1/3				
								이00	인천 남구 옥련동 ○○○○	1/3				
31	기정	서구	왕길동	산2-1	임	2,896.0	1,410.0	이○○	김포군 검단면 ○○○○	1/6				

잍	실련	소	재지	тіні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ш
벋	호	구	동	지번	시독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비고
								이이	인천시 북구 가좌동 ○○○○	1/6				
								이○○	김포군검단면 왕길리 ○○○○	1/6				
								이이	김포군검단면 왕길리 ○○○○	1/6				
								김○○	성남시 분당구 ○○○○	1/6				
								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6				
	변경	서구	왕길동	산2-3	임	1,430.0	1,430.0	000	김포군 검단면 ○○○○	1/6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	
								900	인천시 북구 가좌동 ○○○○	1/6				
								000	김포군검단면 왕길리 ○○○	1/6				
								000	김포군검단면 왕길리 ○○○○	1/6				
								김○○	성남시 분당구 ○○○	1/6				
								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6				
	기정	서구	왕길동	산2-2	임	1,798.0	1,632.0	000	인천시 중구 신흥동 ○○○○	1/3				
						,		000	인천시 중구 신흥동 ○○○○	1/3				
22								000	인천 남구 옥련동 ○○○○	1/3				
32	변경	서구	왕길동	산2-7	임	1,610.0	1,610.0	000	인천시 중구 신흥동 ○○○○	1/3				
								000	인천시 중구 신흥동 ○○○○	1/3				
								000	인천 남구 옥련동 ○○○○	1/3				
22	기정	서구	왕길동	산3	임	8,727.0	8,727.0	이이	경기김포시 풍무동 ○○○○	1/1				
33	변경	서구	왕길동	산3	임	8,727.0	8,727.0	이이	경기김포시 풍무동 ○○○○	1/1				
2.4	기정	서구	왕길동	산3-1	임	3,769.0	3,769.0	박○○	인천연수구 동춘동 ○○○○	1/1				
34	변경	서구	왕길동	산3-1	임	3,769.0	3,769.0	박○○	인천연수구 동춘동 ○○○○	1/1				
	기정	서구	왕길동	산4	임	14,380.0	13,633.0	000	부천시 남구 괴안동 ○○○○	4/23				
								000	남구 도화동 ○○○○	6/23				
								이이	남동구 간석동 ○○○○	3/23				
								이이	남동구 간석동 ○○○○	3/23				
								이이	중구 북성동 1가 ○○○○	3/23				
								이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	1/46				
2.5								이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	1/46				
35								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	6/46				
	변경	서구	왕길동	산4-1	임	13,594.0	13,594.0	000	부천시 남구 괴안동 ○○○○	4/23				
								900	남구 도화동 ○○○○	6/23				
								000	남동구 간석동 ○○○○	3/23				
								900	남동구 간석동 ○○○○	3/23				
								000	중구 북성동 1가 ○○○○	3/23				
								900	인천광역시 연수구 ○○○○	1/46				

잍	l 련	소	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ш1-
반	호	구	동	시인	시축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ᅵ비그
								이이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	1/46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	6/46				
	기정	서구	왕길동	산5-1	임	31,438.0	28,497.0	고〇〇	인천 부평구 갈산동 ○○○○	6287.6/ 31438				
								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 ○○○○	6287.6/ 31438				
36								고〇〇	서울 영등포구 ○○○○	6287.6/ 31438				
30								고○○	서울 도봉구 창동 ○○○○	6287.6/ 31438				
								고〇〇	인천광역시 남동구 ○○○○	6287.6/ 31438				
	변경	서구	왕길동	산5-6	임	28,110.0	28,110.0	인천광역시		1/1				
27	기정	서구	왕길동	산5-2	임	496.0	361.0	오○○	인천동구 송현동 ○○○○	1/1				
37	변경	서구	왕길동	산5-7	임	241.0	241.0	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	1/1				
	기정	서구	왕길동	산5-3	임	1,388.0	572.0	이○○	마전동 ○○○○	2/19				
								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	2/19				
								이이이	마전동 ○○○○	2/19				
								이이이		2/19				
								이이이	서울 노원구 중계동 ○○○○	2/19				
								이이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	3/114				
								이이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	3/114				
								이이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	3/228				
								이이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	3/228				
								이이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	3/114				
38								이이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	3/114				
								이이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	1/19				
								이이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	1/19				
								성○○	경기도 김포시 ○○○○	285/4332				
								이 ○ ○	경기도 김포시 ○○○○	285/4332				
								박이이	인천광역시 서구 ○○○○	2/19				
	변경	서구	왕길동	산5-8	임	573.0	573.0	-						$\perp$
								인천광역시		2/19				
								인천광역시		2/19				

일	!련	소:	재지	<b>-141</b>	-10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T
	호	구	동	지번	지목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 비.
_						,		인천광역시	·	2/19				
								900	서울 노원구 중계동 ○○○○	2/19				
								인천광역시		3/114				
								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	3/114				
								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	3/228				
								이이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	3/228				
								이이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	3/114				
								이이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	3/114				
								이이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	1/19				
								이이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	1/19				
								성○○	경기도 김포시 ○○○○	285/4332				
								000	경기도 김포시 ○○○○	285/4332				
								인천광역시		2/19				
	기정	서구	왕길동	산5-4	임	298.0	298.0	이이이	마전동 ○○○○	2/19				
								이이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	2/19				
								이이이	마전동 ○○○○	2/19				
								이○○		2/19				
								이이이	서울 노원구 중계동 ○○○○	2/19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	3/114				
								이이이	인청광역시 연수구 ○○○○	3/114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	3/228				
								이이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	3/228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	3/114				
								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	3/114				
89								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	1/19				
								이이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	1/19				
								0 00	경기도 김포시 ○○○○	285/2166				
								이00	부산광역시 수영구 ○○○○	2/19				
	변경	서구	왕길동	산5-4	임	298.0	298.0			2/19				
								인천광역시		2/19				
								인천광역시		2/19				
								인천광역시		2/19				1
								이이이	서울 노원구 중계동 ○○○○	2/19				_
								인천광역시		3/114				

잍	J련	소	재지	тіш	TI 0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uı -
	호	구	동	지번	지목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비.
						, ,	• •	인천광역시	-	3/114		-		
								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	3/228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	3/228				
								인천광역시		3/114				
								인천광역시		3/114				
								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	1/19				
								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	1/19				
								900	경기도 김포시 ○○○○	285/2166				
								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	2/19				
40	기정	서구	왕길동	산7	임	2,975.0	2,263.0	차ㅇ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2	주식회사 ○○은행	서울중구 회현동1가203 (신길동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설정	
								차ㅇ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1				
	변경	서구	왕길동	산7	임	2,150.0	2,150.0	인천광역시		1/				
41	기정	서구	왕길동	산8-1	임	910.0	910.0	김()()	인천북구 가정동 〇〇〇〇	1/1				
•	변경	서구	왕길동	산8-1	임	910.0	910.0	김〇〇	인천북구 가정동 ○○○○	1/1			7 -1 -1 7	
42	기정	서구	왕길동	산8-2	임	7,373.0	2,891.0	차ㅇ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2	주식회사 ○○은행	서울중구 ○○○○	근저당권 지상권 설정	
								차ㅇ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2				
	변경	서구	왕길동	산8-15	임	2,792.0	2,792.0	인천광역시		1/1				
	기정	서구	왕길동	산8-3	임	5,555.0	5,555.0	김〇〇	인천광역시 부평구 ○○○○	2882/6057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	2882/6057				
43								방○○	인천광역시 부평구 ○○○○	293/6057				
43	변경	서구	왕길동	산8-3	임	5,555.0	5,555.0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	2882/6057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	2882/6057				
								방○○	인천광역시 부평구 ○○○○	293/6057				
	기정	서구	왕길동	산8-4	임	581.0	558.0	인천광역시		173/1848				$\perp$
44								인천광역시		1105/1848				
								노○○	인천서구 크리스탈로 ○○○○	570/1848				

2	J련	소	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그
번	호	구	동	시킨	기속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רום
	변경	서구	왕길동	산8-16	임	489.0	489.0	인천광역시		173/1848				
								인천광역시		1105/1848				
								노○○	인천서구 크리스탈로 ○○○○	570/1848				
45	기정	서구	왕길동	산8-5	임	2,902.0	2,902.0	신〇〇	서울성북구 종암동 ○○○○	1/1				
43	변경	서구	왕길동	산8-5	임	2,902.0	2,902.0	신〇〇	서울성북구 종암동 ○○○○	1/1				
46	기정	서구	왕길동	산8-6	임	636.0	636.0	이이이	인천동구 화수동 5○○○	1/1				
40	변경	서구	왕길동	산8-6	임	636.0	636.0	이○○	인천동구 화수동 5○○○	1/1				
47	기정	서구	왕길동	산8-7	임	1,456.0	1,456.0	신〇〇	인천동구 송현동 1〇〇〇	1/1				
47	변경	서구	왕길동	산8-7	임	1,456.0	1,456.0	신〇〇	인천동구 송현동 1○○○	1/1				
48	기정	서구	왕길동	산8-12	임	470.0	470.0	인천광역시		1/1				
70	변경	서구	왕길동	산8-12	임	470.0	470.0	인천광역시		1/1				
	기정	서구	왕길동	산8-13	임	1,267.0	961.0	인천광역시		173/1848				
								인천광역시		1105/1848				
49								노○○	인천서구 크리스탈로 ○○○○	570/1848				
49	변경	서구	왕길동	산8-17	임	814.0	814.0	인천광역시		173/1848				
								인천광역시		1105/1848				
								노○○	인천서구 크리스탈로 ○○○○	570/1848				
											인천서구		압류	
F0	기정	서구	왕길동	산9	임	12,595.0	11,517.0	학교법인()	강원도강릉시 공제로 ○○○○	1/1	박○○	강릉시구정면 ○○○○	강제경매 개시결정	
50								○학원			국민〇〇〇〇 공단	강원원주시○○○ ○	압류	
	변경	서구	왕길동	산9-2	임	11,951.0	11,951.0	인천광역시		1/1				
г1	기정	서구	왕길동	산9-1	임	893.0	893.0	김〇〇	인천남동구 만수동 ○○○○	1/1				
51	변경	서구	왕길동	산9-1	임	893.0	893.0	김〇〇	인천남동구 만수동 ○○○○	1/1				
52	기정	서구	왕길동	산10	임	26,424.0	26,232.0	학교법인○ ○학원	강원도강릉시 공제로 ○○○	1/1	인천서구		압류	
	변경	서구	왕길동	산10	임	26,155.0	26,155.0	인천광역시		1/1				
	기정	서구	왕길동	산10-1	임	258.0	258.0	김○○	인천광역시 남구 ○○○○	224.94/258				
53								김()()	 인천광역시 남구 ○○○○	33.06/258	국(서인천세무		압류	

	일련	소	재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T1
	는 번호	구	통	지번	지목	(m²)	(m²)	성 명	<u> </u>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비고
		•				( /	( )	0 0	· <del></del>		서)			
	변경	서구	왕길동	산10-1	임	258.0	258.0	김○○	인천광역시 남구 ○○○○	224.94/258	.,			
								김○○	인천광역시 남구 ○○○○	33.06/258				
54	기정		왕길동	산10-2	임	618.0	618.0	김〇〇	인천남구 주안동 ○○○○	1/1				
34	먼경		왕길동	산10-2	임	618.0	618.0	김〇〇	인천남구 주안동 ○○○○	1/1				
55	기정		왕길동	산10-3	임	568.0	568.0	차ㅇㅇ	인천남구 주안동 ○○○○	1/1				
	변경	서구	왕길동	산10-3	임	568.0	568.0	차ㅇㅇ	인천남구 주안동 ○○○○	1/1				
56	기정	서구	왕길동	산11	임	20,690.0	20,690.0	학교법인○ ○학원	강원도강릉시 공제로 ○○○○	1/1	인천서구 한국○○공사	서울강남구삼성동 167번지	압류 구분지상 권설정	
	변경	서구	왕길동	산11	임	20,690.0	20,690.0	학교법인() ()학원	강원도강릉시 공제로 ○○○	1/1	한국○○공사	서울강남구삼성동 167번지	구분지상 권설정	
57	기정	서구	왕길동	산11-1	임	256.0	256.0	학교법인○ ○학원	강원도강릉시 공제로 ○○○○	1/1				
	변경	서구	왕길동	산11-1	임	256.0	256.0	인천광역시		1/1				
58	기정	서구	왕길동	산11-2	임	1,773.0	652.0	학교법인○ ○학원	강원도강릉시 공제로 ○○○○	1/1	인천서구		압류	
	변경	서구	왕길동	산11-4	임	615.0	615.0	인천광역시		1/1				
59	기정	서구	왕길동	산11-3	임	488.0	488.0	차이이	인천남구 주안동 ○○○○	1/1				
39	변경	서구	왕길동	산11-3	임	488.0	488.0	차이이	인천남구 주안동 ○○○○	1/1				
	기정	서구	왕길동	산12-1	임	16,165.0	16,165.0	권○○	서울은평구 백련산로 ○○○○	1652.9/ 16165				
								권〇〇	인천광역시 서구 ○○○○	1652.9/ 16165				
								권〇〇	인천광역시 서구 ○○○○	1487.61/ 16165				
60								권〇〇	인천광역시 서구 ○○○○	11371.59/ 16165				
											한국○○ 공사	서울강남구 ○○○○	구분지상 권설정	
	변경	서구	왕길동	산12-1	임	16,165.0	16,165.0	권○○	서울은평구 백련산로 ○○○○	1652.9/ 16165				
								권○○	인천광역시 서구 ○○○○	1652.9/ 16165				

잍	l련	소	재지	тіні	TI 0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ш
	호	구	동	지번	지목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비고
								권○○	인천광역시 서구 ○○○○	1487.61/ 16165				
								권〇〇	인천광역시 서구 ○○○○	11371.59/ 16165				
											한국〇〇	서울강남구삼성동	구분지상	
												0000	권설정	
	기정	서구	왕길동	산12-2	임	16,522.0	14,538.0	학교법인○ ○학원	강원도강릉시 공제로 ○○○○	1/1	인천서구 한국()()	서울강남구삼성동	압류 구분지상	
61											공사	0000	권설정	
	변경	서구	왕길동	산12-4	임	14,411.0	14,411.0	학교법인○ ○학원	강원도강릉시 공제로 ○○○○	1/1	인천서구 한국○○ 공사	서울강남구삼성동	압류 구분지상 권설정	
62	기정	서구	왕길동	산12-3	임	238.0	238.0	학교법인○ ○학원	강원도강릉시 공제로 ○○○○	1/1	<u> </u>		LEO	
02	변경	서구	왕길동	산12-3	임	238.0	238.0	인천광역시		1/1				
-	기정	서구	왕길동	 산13	임	397.0	397.0	양이이	서울양천구 신월로 ○○○○	1/1				
63	변경	서구	왕길동	산13	임	397.0	397.0	양○○	서울양천구 신월로 ○○○○	1/1				
C 4	기정	서구	왕길동	산14-1	임	70,909.0	68,308.0	○○○○판 관공파종중	인천서구 왕길동 ○○○○	1/1	한국○○ 공사	서울강남구삼성동 ○○○○	지상권 설정	
64	변경	서구	왕길동	산14-1	임	69,827.0	69,827.0	○○○○판 관공파종중	인천서구 왕길동 ○○○○	1/1	한국○○ 공사	서울강남구삼성동 ○○○○	지상권 설정	
65	기정	서구	왕길동	산14-2	임	3.0	3.0	국(산림청)		1/1				
05	변경	서구	왕길동	산14-2	임	3.0	3.0			1/1				
66	기정	서구	왕길동	산16	임	4,131.0	4,110.0	○○○○판 관공파종회	인천서구 독정로 ○○○○	1/1				
00	변경	서구	왕길동	산16	임	4,131.0	4,131.0	○○○○판 관공파종회	인천서구 독정로 ○○○○	1/1				
	기정	서구	왕길동	산16-4	임	907.0	821.0	인천시		1/1				
67	변경	서구	왕길동	산16-1 0	임	732.0	732.0	인천시		1/1				
	기정	서구	왕길동	산76-1	임	730.0	730.0	이이이	인천남동구 만수동 ○○○○	3/10				
								이 ) )	인천남동구 만수동 ○○○○	2/10				
								0 00	인천남동구 만수동 ○○○○	2/10				
68								호○○	인천남동구 만수동 ○○○○	0.74/10				
								박○○	부천시 원미구 ○○○○	0.32/10				
								강○○	안양시 만안구 ○○○○	0.22/10				

9	일련	소	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ul ¬
빈	보호	구	동	시민	시폭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비고
								김○○	계양구 효성동 ○○○○	0.22/10	재단법인()()()()()()()()()()()()()()()()()()()	대전 서구 ○○○○	가압류	
								김〇〇	부천시 소사구 ○○○○	0.15/10				
								김〇〇	서울특별시 강남구 ○○○○	1.35/10				
	변경	서구	왕길동	산76-1	임	730.0	730.0	인천광역시		8.43/10				
								김○○	계양구 효성동 ○○○○	0.22/10	재단법인()()()()()()()()()()()()()()()()()()()	대전 서구 ○○○○	가압류	
								김〇〇	서울특별시 강남구 ○○○○	1.35/10				
69	기정	서구	왕길동	산76-2	임	1,411.0	1,411.0	정○○	인천서구 완정로 ○○○○	1/1				
09	변경	서구	왕길동	산76-2	임	1,411.0	1,411.0	정○○	인천서구 완정로 ○○○○	1/1				
70		서구	왕길동	산76-3		6,953.0	6,953.0	박○○	서울양천구 목동중앙로 ○○○○	1/1				
70	변경	서구	왕길동	산76-3		6,953.0	6,953.0	박○○	서울양천구 목동중앙로 ○○○○	1/1				
	기정	서구	왕길동	산76-4	임	793.0	793.0	한○○	인천북구 가정동 ○○○○	1/2				
71								이이이	인천북구 가정동 ○○○○	1/2				
′ '	변경	서구	왕길동	산76-4	임	793.0	793.0	한〇〇	인천북구 가정동 ○○○○	1/2				
								인천광역시		1/2				
72		서구	왕길동	산76-5		1,763.0	1,763.0	권〇〇	인천남동구 간석동 ○○○○	1/1				
				산76-5		1,763.0	1,763.0	권()()	인천남동구 간석동 ○○○○	1/1				
	기정	서구	왕길동	산76-6	임	1,140.0	1,140.0	한○○	인천 북구 산곡동 〇〇〇〇	66/1140				
								박○○	인천 서구 석남동 ○○○○	66/1140				
								박○○	인천 서구 가좌동 ○○○○	198/1140				
								박○○	인천 서구 가좌동 ○○○○	331/1140				
								한○○	인천 서구 가좌동 ○○○○	66/1140				
								금○○	인천 남구 용현동 ○○○○	66/1140				
73								김○○	인천 서구 신현동 ○○○○	118.5/1140				
								김○○	인천 서구 신현동 ○○○○	118.5/1140				
								배○○	인천 동구 샛골로 ○○○○	60/1140				
								강○○	인천직할시 남구 ○○○○	50/1140				
	변경	서구	왕길동	산76-6	임	1,140.0	1,140.0	한○○	인천 북구 산곡동 ○○○○	66/1140				
								박○○	인천 서구 석남동 ○○○○	66/1140				
								인천광역시		645/1140				

9	일련	소	재지	тіні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ш-
빈	번호	구	동	지번	시축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비고
								금〇〇	인천 남구 용현동 ○○○○	66/1140				
								김○○	인천 서구 신현동 ○○○○	118.5/1140				
								김○○	인천 서구 신현동 ○○○○	118.5/1140				
								배○○	인천 동구 샛골로1○○○	60/1140				
	기정	서구	왕길동	산76-7	임	202.0	202.0	권○○	인천남구 경인북길2 ○○○○	136/202				1
74								오○○	오류리 ○○○○	66/202				
	변경	서구	왕길동	산76-7	임	202.0	202.0	인천광역시		1/1				
7.5	기정	서구	왕길동	산76-8	임	727.0	727.0	서〇〇	인천남동구염전로 ○○○○	1/1				
75	변경	서구	왕길동	산76-8	임	727.0	727.0	인천광역시		1/1				
7.6	기정	서구	왕길동	산76-1 2	임	474.0	404.0	인천광역시		1/1				
76	변경	서구	왕길동	산76-1 9	임	395.0	395.0	인천광역시		1/1				
	기정	서구	왕길동	산76-1 4	임	102.0	90.0	인천광역시		1/1				
77	변경	서구	왕길동	산76-2 0	임	88.0	88.0	인천광역시		1/1				
70	기정	서구	왕길동	산77-1	임	15,711.0	15,332.0	○○○상 촌공파대암 공종회	인천서구 왕길동 ○○○○	1/1	한국()() 공사	서울강남구 ○○○○	구분지상 권설정	
78	변경	서구	왕길동	산77-7	임	15,488.0	15,488.0	0000상	인천서구 왕길동 ○○○○	1/1	한국 〇〇 공사	서울강남구 ○○○○	구분지상 권설정	
79	기정	서구	왕길동	산77-2	임	3,174.0	3,094.0	0000상	인천서구 왕길동 ○○○○	1/1				
79	변경	서구	왕길동	산77-9	임	3,131.0	3,131.0	0000상	인천서구 왕길동 ○○○○	1/1				
	기정	서구	왕길동	산78	임	8,720.0	7,966.0			1/1				$\top$
80	변경	서구	왕길동	산78	임	7,711.0	7,711.0	0000	인천 서구 단봉로 ○○○○	1/1				
	기정	서구	왕길동	산78-2	임	222.0	222.0	국(산림청)		1/1				$\top$
81	변경	서구	왕길동	산78-2	임	222.0	222.0	○○○○ 도시개발사 업조합	인천 서구 단봉로 ○○○○	1/1				

<u></u>	l련	소	재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T
	호	구	 동	지번	지목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u> </u>	권리종류	비고
_	- 기정	서구	왕길동	산79	임	341.0	341.0	이OO	인천시동구 송림동 ○○○○	1/1		•		
82	변경	서구	왕길동	<u> </u>	임	341.0	341.0	인천광역시		1/1				
00	기정	서구	왕길동	산79-1	임	375.0	375.0	조○○	서울관악구 남현동 ○○○○	1/1				
83	변경	서구	왕길동	산79-1	임	375.0	375.0	인천광역시		1/1				
	_11		0.7.5					-1			국(남인천세무 서)		압류	
	기정	서구	왕길동	산79-2	임	375.0	375.0	장○○	인천남구 도화동 ○○○○	209/375	주식회사 ○○은행	서울중구 ○○○○	가압류	
											인천남구		압류	
								장○○	인천 중구 내동 ○○○○	166/375				
84	34 변경										국(남인천세무 서)		압류	
	변경	서구	왕길동	산79-2	임	375.0	375.0	장○○	인천남구 도화동 ○○○○	209/375	주식회사 ○○은행	서울중구 ○○○○	가압류	
											인천남구		압류	
											인천 세무서		압류	
								인천광역시		166/375				
											한국()() 공사	서울강남 ○○○○	지상권 설정	
	7171		01715	Haa	O.I.	10.011.0	10.010.0				동양〇〇〇〇 주식회사	서울중구 ○○○○	근저당권 설정	
85	기정	서구	왕길동	산80	임	10,314.0	10,212.0	이○○	인천남동구 간석동 ○○○○	1/1	동양〇〇〇〇 주식회사	서울중구 ○○○○	지상권설 정	
											동양〇〇〇〇 주식회사	서울중구 ○○○○	근저당권 설정	
	변경	서구	왕길동	산80-2	임	9,714.0	9,714.0	0 00	인천남동구 간석동 ○○○○	1/1	한국 공사 공사	서울강남 ○○○○	지상권 설정	
	기정	서구	왕길동	산81	임	793.0	793.0	이이	인천부평구 장제로 ○○○○	1/21				
								이○○	인천광역시 서구 ○○○○	2/21				
86								이이	인천광역시 서구 ○○○○	1/21				
								이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	1/21				
								이이	경기도 여주시 ○○○○	1/21				

일	련	소	재지	<b>-141</b>	-10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Ī
	호	구	 동	지번	지목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비
			_			, ,	, ,	900	인천광역시 남동구 ○○○○	1/21		-		
								900	인천광역시 부평구 ○○○	1/21				
								900	인천광역시 서구 ○○○	2/21				
								000	인천광역시 서구 ○○○	1/21				
								900	서울특별시 양천구 ○○○	1/21				
								900	경기도 여주시 ○○○○	1/21				
								900	인천광역시 남동구 ○○○○	1/21				
								900	인천광역시 부평구 ○○○○	1/21				
								000	인천광역시 서구 ○○○○	2/21				
								900	인천광역시 서구 ○○○○	1/21				
								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	1/21				
								000	경기도 여주시 ○○○○	1/21				
								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	1/21				
	변경	서구	왕길동	산81	임	793.0	793.0	인천광역시		1/21				
								이○○	인천광역시 서구 ○○○○	2/21				
								이이이	인천광역시 서구 ○○○○	1/21				
								인천광역시		1/21				
								이이이	경기도 여주시 ○○○○	1/21				
								이이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	1/21				
								인천광역시		1/21				
								이이이	인천광역시 서구 ○○○○	2/21				
								이이이	인천광역시 서구 ○○○○	1/21				
								인천광역시		1/21				
								이이이	경기도 여주시 ○○○○	1/21				
								이이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	1/21				
								인천광역시		1/21				
								이이이	인천광역시 서구 ○○○○	2/21				
								이이이	인천광역시 서구 ○○○○	1/21				
								인천광역시		1/21				
								000	경기도 여주시 ○○○○	1/21				
								이이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	1/21				
	 기정	서구	왕길동	산82-1	임	21,521.0	21,107.0	오○○	인천시 남구 주안동 ○○○○	3305.8/				
	. 13	- 1 1	3 2 3			21,321.0	21,107.0	-00		21521				1
7								최○○	인천시 북구 부개동 ○○○○	2347.36/				
										21521				
								김〇〇	인천시 남구 주안동 ○○○○	1652.9/				

[련	소	재지	<b>-141</b>	-1-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T
호	구	동	지번	지목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 비.
					, ,	,			21521		-		$\top$
							최○○	인천남구 주안동 ○○○○	3305.8/ 21521				
							최○○	인천시 북구 산곡동 ○○○○	3305.8/ 21521				
							정○○	인천시 북구 산곡동 ○○○○	495.87/ 21521				
							노○○	인천광역시 부평구 ○○○	6611.6/ 21521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	3305.8/ 21521				T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	3305.8/ 21521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	3305.8/ 21521				
							김○○	서울특별시 송파구 ○○○○	16529/ 215210				Ī
							송00	서울특별시 송파구 ○○○	495.87/ 21521				Ī
							김○○	서울특별시 양천구 ○○○	495.87/ 21521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	1157.03/ 21521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	1157.03/ 21521				
							김○○	경기도 시흥시 ○○○○	495.87/ 21521				
			·							한국○○ 공사	서울 강남구 ○○○○	구분지상 권설정	
변경	서구	왕길동	산82-3	임	21,129.0	21,129.0	오○○	인천시 남구 주안동 ○○○○	3305.8/ 21521				
							최○○	인천시 북구 부개동 ○○○○	2347.36/ 21521				
							김○○	인천시 남구 주안동 ○○○○	1652.9/ 21521				

일	련	소	재지	TIM	-10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T
	호	구	동	지번	지목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 비.
								최○○	인천남구 주안동 ○○○○	3305.8/ 21521				
								최○○	인천시 북구 산곡동 ○○○○	3305.8/ 21521				
								정○○	인천시 북구 산곡동 ○○○○	495.87/ 21521				
								노○○	인천광역시 부평구 ○○○	6611.6/ 21521	0 00	인천 북구 ○○○○	가처분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	3305.8/ 21521	0 00	인천 북구 ○○○○	가처분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	3305.8/ 21521	0 00	인천 북구 ○○○○	가처분	
										3305.8/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	21521	0 00	인천 북구 ○○○○	가처분	
								71.0.0		16529/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	
								김○○	서울특별시 송파구 ○○○	215210	0 00	인천 북구 ○○○○	가처분	
								송00	서울특별시 송파구 ○○○○	495.87/ 21521				
								김○○	서울특별시 양천구 ○○○	495.87/ 21521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	1157.03/ 21521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	1157.03/ 21521				
								김○○	경기도 시흥시 ○○○○	495.87/ 21521	김○○	경기 시흥시 대은로 ○○○○	근저당권 설정	
											한국()() 공사	서울 강남구 ○○○○	구분지상 권설정	
0	기정	서구	왕길동	산82-2	임	1,488.0	1,488.0	한○○	인천동구 송림동 ○○○○	1323/1488				
8								권〇〇	인천광역시 남구 ○○○○	165/1488		최근 등기 확인		

Q	일련	소	재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l
	번호	구	동	지번	지목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비고
	변경	서구	왕길동	산82-2	임	1,488.0	1,488.0	한○○	인천동구 송림동 ○○○○	1323/1488				
								 인천광역시		165/1488				
	기정	서구	왕길동	산83-1	임	11,116.0	9,961.0	홍00	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 ○○○○	1/3	인천서구		압류	
	10	* 11 1	0 2 0	E 05 1		11,110.0	3,301.0	<u> </u>	남구 관교동 ○○○	1/3	2241		811	
								우00	인천광역시 서구 ○○○	1/3				
89	변경	서구	왕길동	산83-2 5	임	9,676.0	9,676.0	홍()	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 ○○○	1/3				
								인천광역시		1/3				
								우ㅇㅇ	인천광역시 서구 ○○○○	1/3				
90	기정	서구	왕길동	산83-1 1	임	2,990.0	2,435.0	김○○	인천남동구 간석동 ○○○○	1/1				
90	변경	서구	왕길동	산83-2 8	임	2,386.0	2,386.0	김○○	인천남동구 간석동 ○○○○	1/1				
0.1	기정	서구	왕길동	산83-1 9	임	4,950.0	4,950.0	윤()()	인천연수구 동춘동 〇〇〇〇	1/1				
91	변경	서구	왕길동	산83-1 9	임	4,950.0	4,950.0	윤()()	인천연수구 동춘동 ○○○○	1/1				
92	기정		왕길동	산84	임	9,422.0	9,422.0	김○○	인천계양구 작전동 ○○○○	1/1				
92	변경	서구	왕길동	산84	임	9,422.0	9,422.0	김○○	인천계양구 작전동 ○○○○	1/1				
93	기정	서구	왕길동	산84-1	임	9,421.0	9,421.0	김○○	인천계양구 계산동 ○○○○	1/1	김〇〇	서울강서구염창동 ○○○○	근저당권 설정	
	변경		왕길동	산84-1	임	9,421.0	9,421.0	김○○	인천계양구 계산동 ○○○○	1/1				
	기정	서구	왕길동	산85-1	임	31,666.0	31,666.0	노이이	남국 간석동 ○○○○	5/10				
								김○○	가정동 314-14 ○○○○	1/10				
								노이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	1/10				
								주식회사 ○○메탈	서울특별시 송파구 ○○○○	1/10				
								이○○	서울특별시 중구 ○○○○	1/40				
94								김○○	서울특별시 강북구 ○○○○	1/40				
								김〇〇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1/40				
								백00	인천광역시 서구 ○○○○	1/40				
								김〇〇	인천광역시 서구 ○○○○	1/20				
								손()()	인천광역시 서구 ○○○○	1/20				
	변경	서구	왕길동	산85-1	임	31,666.0	31,666.0	노○○	남국 간석동 ○○○○	5/10				

잍	일련	소:	재지	тіні	710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ш -
반	<u>번호</u>	구	동	지번	지목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ᅵ비그
								김○○	가정동 ○○○○	1/10				
								노〇〇	인천광역시 남동구 ○○○○	1/10				
								주식회사 ○○메탈	서울특별시 송파구 ○○○○	1/10				
								000	서울특별시 중구 ○○○○	1/40				
								김○○	서울특별시 강북구 ○○○○	1/40				
								김〇〇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1/40				
								백〇〇	인천광역시 서구 ○○○○	1/40				
								인천광역시		1/20				
								인천광역시		1/20				
95	기정	서구	왕길동	산85-2		3.0	3.0			1/1				
"	변경	서구	왕길동	산85-2	임	3.0	3.0	국(산림청)		1/1				
	기정	서구	왕길동	산85-3	임	3,760.0	3,760.0	문〇〇	화성군 송산면 ○○○○	384/1548				
								문〇〇	서울 중구 수교동 ○○○○	384/1548				
								문○○	인천 북구 작전동 ○○○○	384/1548				
								이이	김포군 검단면 ○○○○	3/387				
								김○○	경기도 시흥시 ○○○○	384/1548				
96	<b>増</b> 결	서구	왕길동	산85-3	임	3,760.0	3,760.0	0 00	인천 남동구 수현로 ○○○○	192 /1548				
	L: 0	^I I	020	F.02-2		3,700.0	3,700.0	이○○	인천 서구 크리스탈로 ○○○○	192 /1548				
								문〇〇	서울 중구 수교동 ○○○○	384/1548				
								인천광역시		384/1548				
								0 00	김포군 검단면 ○○○○	3/387				
								김○○	경기도 시흥시 ○○○○	384/1548				
	기정	서구	왕길동	산85-8	임	219.0	219.0	인천광역시		1/10				
								인천광역시		5/10				
								인천광역시		1/10				
97								노〇〇	인천광역시 남동구 ○○○○	1/10				
								㈜○○메탈	서울특별시 송파구 ○○○○	1/10	국	H이妆메디니	아르	
								0 00	서울특별시 중구 ○○○○	1/40	舌	서인천세무서	압류	
								김○○	서울특별시 강북구 ○○○	1/40				

ဋ	l 년	소	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반	호	구	동	시민	시축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ᄀᄞᅩ
								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1/40				
								백〇〇	인천광역시 서구 ○○○○	1/40				
	변경	서구	왕길동	산85-8	임	219.0	219.0			1/10				
								인천광역시		5/10				
								인천광역시		1/10				
								노이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	1/10				
								㈜○○메탈	서울특별시 송파구 ○○○○	1/10				
								0 00	서울특별시 중구 ○○○○	1/40				
								김○○	서울특별시 강북구 ○○○○	1/40				
								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1/40				
								백〇〇	인천광역시 서구 ○○○○	1/40				
98	기정	서구	왕길동	산177- 1	구	2.0	2.0	국(건설부)		1/1				
98	변경	서구	왕길동	산177- 1	구	2.0	2.0	국(건설부)		1/1				
99	기정	서구	마전동	616	전	225.0	225.0		인천서구 마전동 ○○○○	1/1				
99	변경	서구	마전동	616	전	225.0	225.0	인천광역시		1/1				
100	기정	서구	마전동	616-1	임	62.0	62.0	㈜○○가구	인천남동구 고잔동 ○○○○	1/1				
100	변경	서구	마전동	616-1	임	62.0	62.0	㈜○○가구	인천남동구 고잔동 ○○○○	1/1				
101	기정	서구	마전동	616-6	도	46.0	46.0			1/1				
101	변경	서구	마전동	616-6	도	46.0	46.0	인천광역시		1/1				
102	기정		마전동	628-3	도	11,166.0	8,533.0			1/1				
102	변경	서구	마전동	628-18	도	8,991.0	8,991.0	인천광역시		1/1				
103	기정	서구	마전동	628-4	도	6,647.0	6,359.0	인천광역시		1/1				
103	변경	서구	마전동	628-19		6,365.0	6,365.0	인천광역시		1/1				
104	기정	서구	마전동	629-22	전	7,116.0	7,116.0	이○○	인천서구 마전동 ○○○○	1/1				
104	변경	서구	마전동	629-22	전	7,116.0	7,116.0	이○○	인천서구 마전동 ○○○○	1/1				
105	기정	서구	마전동	629-26	전	1,345.0	1,345.0	이○○	인천서구 마전동 ○○○○	1/1				
105	변경	서구	마전동	629-26	전	1,345.0	1,345.0	이○○	인천서구 마전동 ○○○○	1/1				
	기정	서구	마전동	산168-	임	7,853.0	7,197.0	김○○	인천시부평구 부평동 ○○○○	1/1	부평○○○○ 조합	부평구 갈산동 ○○○○	근저당권 지상권 설정	
106			·	1		,				<i>.</i> 	정○○	부산북구화명동○ ○○○	근저당권 설정	
	변경	서구	마전동	산168-	임	7,478.0	7,478.0	김○○	인천시부평구 부평동 ○○○○	1/1	부평○○○	부평구 갈산동	근저당권	

잍	!련	소	재지	TIM	710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ш. –
반	호	구	동	지번	지목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비고
		-		19					-		조합	0000	지상권 설정	
				19							정○○	부산북구화명동() ()()()	근저당권 설정	
	기정	서구	마전동	산168- 2	임	1,423.0	1,349.0	이 ) )	인천남구 숭의동 ○○○○	165/1423				
								박○○	인천시 남구 학익동 ○○○○	165/1423				
								이○○	인천시 북구 백석동 ○○○○	99/1423				
								김〇〇	인천직할시 남구 ○○○○	66/1423				
								최○○	인천직할시 남구 ○○○○	33/1423				
								송()()	부천시 남구 소사동 ○○○○	43/1423				
								박○○	인천직할시 북구 ○○○○	50/1423				
								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	33/1423				
								고〇〇	인천직할시 남구 ○○○○	40/1423				
											서울○○○○ 주식회사	서울종로구연지동	가압류	
											울산광역시중 구		압류	
107								김○○	인천직할시 남구 ○○○○	26.5/1423	국민〇〇〇〇 공단인천남부 지사	인천남구주안동〇 ○○○	압류	
											인천광역시남 구		압류	
											인천광역시		압류	
								황○○		99/1423				
								여00	인천직할시 남구 ○○○○	33/1423				
								인〇〇	인천직할시 남동구 ○○○	53/1423				
								공〇〇	인천직할시 북구 ○○○○	56/1423				
								윤()()	서울특별시 동작구 ○○○○	33/1423				
								박○○		33/1423				
								김○○	인천직할시 서구 ○○○○	66/1423	국(남인천세무 서)		압류	

일련	소	재지	<b>-141</b>	-10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Τ
 번호	구	<u></u> 동	지번	지목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ᆸ
						,				한국○○ 관리공사		가압류	
							김〇〇	남구 용현동 ○○○○	33/1423				T
							최○○	충청남도 당진군 ○○○○	33/1423				Ť
							이 ) )	서울특별시 용산구 ○○○○	33/1423				T
							김〇〇	인천광역시 서구 ○○○○	165/1423	인천강화군		압류	T
							권〇〇	서울특별시 중구 ○○○○	65.5/1423				Ī
변경	서구	마전동	산168- 20	임	1,328.0	1,328.0	이○○	인천남구 숭의동 ○○○○	165/1423				
							박〇〇	인천시 남구 학익동 ○○○○	165/1423				
							이이이	인천시 북구 백석동 ○○○○	99/1423				Ť
							김〇〇	인천직할시 남구 ○○○○	66/1423				T
							인천광역시		33/1423				T
							인천광역시		43/1423				T
							박〇〇	인천직할시 북구 ○○○○	50/1423				T
							이이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	33/1423				T
							인천광역시		40/1423				Ī
										서울○○○○ 주식회사	서울종로구연지동 ○○○○	가압류	
										울산광역시중 구		압류	Ī
							김○○	인천직할시 남구 ○○○○	26.5/1423	국민○○○○ 공단인천남부 지사	인천남구주안동() ()()()	압류	
										인천광역시남 구		압류	
										인천광역시		압류	
							황○○		99/1423				Ĺ
							여〇〇	인천직할시 남구 ○○○○	33/1423				
							인〇〇	인천직할시 남동구 ○○○○	53/1423				
							공()()	인천직할시 북구 ○○○○	56/1423				
							윤()()	서울특별시 동작구 ○○○○	33/1423				

<u>Q</u>	l 년	소	재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T
	호	구	동	지번	지목	(m²)	(m²)	성 명	<u> </u>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비고
-		•				( )	( /	박()()	1-	33/1423				
								김00	인천직할시 서구 ○○○○		국(남인천세무 서)		압류	
										66/1423	한국○○ 관리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	가압류	
								김〇〇	남구 용현동 ○○○○	33/1423				
								인천광역시		33/1423				
								인천광역시		33/1423				
								인천광역시		165/1423				
								권〇〇	서울특별시 중구 ○○○○	65.5/1423				
	기정	서구	마전동	산168- 3	임	1,983.0	1,983.0	김○○	인천 북구 산곡동 ○○○○	1/9				
								김〇〇	인천 남구 주안동 ○○○○	1/9				
								이이이	인천 중구 도원동 ○○○○	1/9				
								신〇〇	인천 남구 숭의동 ○○○○	1/9				
								이○○	인천 북구 산곡동 ○○○○	1/9				
								진〇〇	인천광역시 남동구 ○○○○	1/9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	1/9				
								이이	인천광역시 남구 ○○○○	1/9				
								노○○	경기도 고양시 ○○○○	1/36				
								노〇〇	인천광역시 서구 ○○○○	2/36				
108								노○○	인천광역시 부평구 ○○○○	1/36				
	변경	서구	마전동	산168- 3	임	1,983.0	1,983.0	김○○	인천 북구 산곡동 ○○○○	1/9				
								김〇〇	인천 남구 주안동 ○○○○	1/9				
								인천광역시		1/9				
								인천광역시		1/9				
								이이	인천 북구 산곡동 ○○○○	1/9				
								인천광역시		1/9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	1/9				
								인천광역시		1/9				
								노〇〇	경기도 고양시 ○○○○	1/36				
								노○○	인천광역시 서구 ○○○	2/36				

2	J련	소	재지	TIM	-10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ш -
	호	구	동	지번	지목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ᅵ비크
								인천광역시		1/36				
	기정	서구	마전동	산168- 4	임	3,570.0	3,570.0	이○○	인천동구 도원동 ○○○○	595/7140				
								김〇〇	인천시 북구 산곡동 ○○○○	595/7140				
								이○○	인천직할시 북구 ○○○○	595/7140				
								이○○	인천직할시 북구 ○○○○	595/7140				
								신〇〇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595/7140				
											인천서구		압류	
								이○○	중구 송월동 1가 ○○○○	59.5/3570	인천광역시		압류	<u> </u>
											국	남인천세무서	압류	
											인천광역시		압류	
											국	남인천세무서	압류	
109							0 00	남구 주안동 ○○○○	59.5/3570	인천남구 한국○○ 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	압류 가압류		
109											인천서구	0000	압류	
								이이	부평구 산곡동 ○○○○	59.5/3570	인천광역시		압류	
											인천광역시		압류	
								이00	남구 주안동 ○○○○	59.5/3570	국	남인천세무서	압류	
								400	BT TES 0000	39.3/3370	인천서구		압류	
											인천남동구		압류	
								000	강원도 춘천시 ○○○○	59.5/3570	인천광역시		압류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	5/60				
								김〇〇	인천직할시 남구 ○○○○	29452.5 /32130				
								김〇〇	인천 부평구 산곡동 ○○○○	595/32130				
								김〇〇	인천 부평구 산곡동 ○○○○	595/32130				
								김○○	서울특별시 양천구 ○○○○	5/60				

일련	소:	재지	тіш	710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1
 번호	구	·· 동	지번	지목	(m²)	(m²)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ᆸ
					, ,	` '	이이이	인천광역시 남구 ○○○○	1/12				
							김〇〇	인천광역시 부평구 ○○○○	595/32130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	892.5/3213 0				
							나00	인천광역시 서구 ○○○○	5/60				T
							노〇〇	인천광역시 서구 ○○○○	90/2160				I
							노〇〇	경기도 고양시 ○○○○	45/2160				
							노〇〇	인천광역시 부평구 ○○○○	45/2160				
변경	서구	마전동	산168- 4	임	3,570.0	3,570.0	인천광역시		595/7140				
							김○○	인천시 북구 산곡동 ○○○○	595/7140				
							0 00	인천직할시 북구 ○○○○	595/7140				Ī
							0 00	인천직할시 북구 ○○○○	595/7140				1
							인천광역시		595/7140				T
							이00	중구 송월동 1가 ○○○○	59.5/3570	남인천세무서		압류	Ī
							100	01020110000	33.373310	인천 서구		압류	
										국민〇〇〇	강원도 원주시	압류	
										공단	건강로〇〇〇〇		4
										인천 서구		압류	
							0 00	남구 주안동 ○○○○	59.5/3570	인천광역시		압류	
										인천 남구		압류	T
										한국○○관리 공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가압류	Ī
							인천광역시		59.5/3570	인천광역시		압류	T
										남인천세무서		압류	
							0 00	남구 주안동 ○○○○	59.5/3570	인천 서구		압류	
										인천시		압류	
										인천 남동구		압류	

잍	!련	소	재지	тіш	-10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ш
반	호	구	동	지번	지목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비고
								인천광역시		59.5/3570	인천광역시		압류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	5/60				
								김○○	인천직할시 남구 ○○○○	29452.5 /32130				
								김○○	인천 부평구 산곡동 ○○○○	595/32130				
								인천광역시		595/32130				
								김○○	서울특별시 양천구 ○○○○	5/60				
								인천광역시		1/12				
								김〇〇	인천광역시 부평구 ○○○○	595/32130				
								김〇〇	인천광역시 부평구 ○○○	892.5/3213 0				
								나00	인천광역시 서구 ○○○○	5/60				
								노○○	인천광역시 서구 ○○○○	90/2160				
								노이이	경기도 고양시 ○○○○	45/2160				
				11				인천광역시		45/2160				
110	기정	서구	마전동	산168- 5	임	327.0	327.0	최○○	인천시동구 송현동 ○○○○	1/1				
110	변경	서구	마전동	산168- 5	임	327.0	327.0	인천광역시		1/1				
111	기정	서구	마전동	산168- 6	임	1,454.0	1,454.0	최○○	인천시동구 송림동 ○○○○	1/1				
111	변경	서구	마전동	산168- 6	임	1,454.0	1,454.0	최○○	인천시동구 송림동 ○○○○	1/1				
442	기정	서구	마전동	산168- 7	임	254.0	254.0	안00	인천시남동구 간석동 ○○○○	1/1				
112	변경	서구	마전동	산168- 7	임	254.0	254.0	안○○	인천시남동구 간석동 ○○○○	1/1				
442	기정	서구	마전동	산168- 8	임	197.0	197.0	조〇〇	인천중구 신흥동 ○○○○	1/1				
113	변경	서구	마전동	산168- 8	임	197.0	197.0	조〇〇	인천중구 신흥동 ○○○○	1/1				
114	기정	서구	마전동	산168- 9	임	1,164.0	1,164.0	석○○	인천연수구 선학동 ○○○○	1/1				
-		서구	마전동	산168-	임	1,164.0	1,164.0	인천광역시		1/1				

9	실련	소	재지	тіш	710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ш ¬
ť	호	구	동	지번	지목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비고
				9										
115	기정	서구	마전동	산168- 10	임	202.0	202.0	최○○	인천동구 송현동 ○○○○	1/1				
113	변경	서구	마전동	산168- 10	임	202.0	202.0	인천광역시		1/1				
	기정	서구	마전동	산168- 11	임	878.0	878.0	정○○	인천남구 주안동 ○○○○	217/878				
								장○○	인천직할시 중구 ○○○○	99/878				
								어 ) )	인천직할시 북구 ○○○○	165/878				
								신〇〇	인천직할시 남동구 ○○○○	66/878				
								김○○	인천직할시 남구 ○○○○	33/878				
								이이이	인천직할시 남구 ○○○○	66/878				
								유〇〇	인천직할시 남구 ○○○○	33/878				
								최○○	인천직할시 남구 ○○○○	33/878				
								염○○	인천직할시 동구 ○○○○	33/878				
								구00	인천직할시 북구 ○○○○	33/878				
116								문〇〇	계양구 작전동 ○○○○	34/878				
								최○○	인천광역시 남구 ○○○○	33/878				
								가이이	경기도 부천시 ○○○○	33/878				
	변경	서구	마전동	산168- 11	임	878.0	878.0	정○○	인천남구 주안동 ○○○○	217/878				
								인천광역시		430/878				
								김〇〇	인천직할시 남구 ○○○○	33/878				
								이이이	인천직할시 남구 ○○○○	66/878				
								염○○	인천직할시 동구 ○○○○	33/878				
								구00	인천직할시 북구 ○○○○	33/878				
								최○○	인천광역시 남구 ○○○○	33/878				
								가이이	경기도 부천시 ○○○○	33/878				
117	기정	서구	마전동	산168- 12	임	194.0	194.0	심○○	인천북구 부평동 ○○○○	1/1				
117	변경	서구	마전동	산168- 12	임	194.0	194.0	심○○	인천북구 부평동 ○○○○	1/1				
118	기정	서구	마전동	산168- 13	임	324.0	324.0	김○○	인천중구 답동 ○○○○	1/1				
118	변경	서구	마전동	산168- 13	임	324.0	324.0	김○○	인천중구 답동 ○○○○	1/1				
119	기정	서구	마전동	산168-	임	194.0	194.0	최○○	인천남구 간석동 ○○○○	1/1				

일	련	소	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ш
번	호	구	동	시민	시독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ᆸ
				14										
	변경	서구	마전동	산168- 14	임	194.0	194.0	최○○	인천남구 간석동 ○○○○	1/1				
	기정	서구	마전동	산168- 15	임	331.0	331.0	김○○	인천직할시 중구 ○○○○	33/331				
								안○○	인천직할시 동구 ○○○○	33/331				
								김〇〇	인천직할시 동구 ○○○○	33/331				
								이이	인천직할시 서구 ○○○○	17/331				
											인천남구		압류	
								박○○	인천직할시 북구 ○○○○	43/331	한국〇〇 관리공사	서울강남구 ○○○○	가압류	
											국민〇〇 보험공단	서울마포구 ○○○○	압류	
								이○○	인천시 북구 산곡동 ○○○○	40/331				
								<b>양</b> ○	울산시 남구 선암동 ○○○○	33/331				
								700		47/224	국	북인천세무서	압류	
								공〇〇	인천직할시 남구 ○○○○	17/331	인천부평구		압류	
								이이이	인천직할시 남구 ○○○○	17/331				T
								한이이	경남 함양군 함양읍 ○○○○	50/331				T
20											국	인천세무서	압류	
								박〇〇	경기도 안산시 ○○○○	15/331	안산시		압류	
	변경	서구	마전동	산168- 15	임	331.0	331.0	김○○	인천직할시 중구 ○○○○	33/331	-			
								인천광역시		116/331				
											인천남구		압류	
								박○○	인천직할시 북구 ○○○○	43/331	한국〇〇 관리공사	서울강남구 ○○○○	압류	
								이이	인천시 북구 산곡동 ○○○○	40/331				
								인천광역시		33/331				
								700	이성지하시 나그 ^^^	17/221	국	북인천세무서	압류	
								공〇〇	인천직할시 남구 ○○○○	17/331	인천부평구		압류	
								이이이	인천직할시 남구 ○○○○	17/331				Ť
								한()()	경남 함양군 함양읍 ○○○	50/331				
											국	인천세무서	압류	
								박〇〇	경기도 안산시 ○○○○	15/331	 안산시		압류	
	기정	서구	마전동	산169	임	653.0	571.0	이이이	인천서구 완정로34 ○○○○	100/653	 인천서구		압류	
21								김○○	인천서구 완정로34 ○○○	553/653				+

잍	J련	소	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ш¬
번	호	구	동	시민	시속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비고
	변경	서구	마전동	산169	임	614.0	614.0	이이이	인천서구 완정로34 ○○○○	100/653	인천서구		압류	
								김〇〇	인천서구 완정로34 ○○○○	553/653				
122	기정	서구	마전동	산170- 4	임	6,674.0	6,674.0	전○○	인천시서구 당하동 ○○○○	1/1				
122	변경	서구	마전동	산170- 4	임	6,674.0	6,674.0	인천광역시		1/1				
	기정	서구	마전동	산170- 8	임	9,811.0	9,811.0	우ㅇㅇ	속초시조양동 ○○○○	1/3				
123								우ㅇㅇ	서울 강서구 염창동 ○○○○	1/3				
123								우ㅇㅇ	인천 중구 신포동 ○○○○	1/3				
	변경	서구	마전동	산170- 8	임	9,811.0	9,811.0	인천광역시		1/1				
											인천광역시		압류	
	기정	서구	마전동	산170- 13	임	3,241.0	3,241.0	남00	인천북구 갈산동 ○○○○	1/2	국(북인천세무 서)		압류	
								김○○	서울특별시 강남고 ○○○○	232.1/3241				
								조〇〇	서울특별시 강남구 ○○○○	462.8/3241				
124								0 00	서울특별시 마포구 ○○○○	925.6/3241				
				산170-							인천광역시		압류	
	변경	서구	마전동	전170- 13	임	3,241.0	3,241.0	남○○	인천북구 갈산동 ○○○○	1/2	남00	인천 부평구 갈산동 ○○○○	근저당권 설정	
								인천광역시		232.1/3241				
								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	462.8/3241				
								0 00	서울특별시 마포구 ○○○○	925.6/3241				
	기정	서구	당하동	943-17	임	13,995.0	13,995.0	○○산업㈜	서울강서구 당하동 ○○○	1/1	중소○○ 은행	서울 중구 ○○○○	근저당권 지상권	
125	1	ΥIT	০পট	343-17	▭	13,333.0	13,333.0		MERMI OME COOC	1/1	한국○○ 공사	서울강남구 ○○○○	구분 지상권	
	변경	서구	당하동	943-17	임	13,995.0	13,995.0	○○산업㈜	서울강서구 당하동 ○○○○	1/1	한국○○ 공사	서울강남구 ○○○○	구분 지상권	
126	기정	서구	당하동	957-1	장	13,590.0	3.0	○○페인트	서울금천구 ○○○	1/1	중소○○	서울 중구	근저당권	

잍	실련	소	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ш
반	호	구	동	시민	시폭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비고
								(주)			은행 ○○은행 주식회사	0000 서울 중구 0000	설정 근저당권 설정	
	변경	서구	당하동	957-38	장	3.0	3.0	인천광역시		1/1		0000		
127	기정	서구		957-2		210.0	1.0	O 레이트	서울금천구 ○○○○	1/1	중소()() 은행 ()()()()()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 서울 중구 통일로○○○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변경	서구	당하동	957-39	임	1.0	1.0	인천광역시		1/1	1 1-1 1	32-000		
128	기정	서구	당하동	957-17	임	740	740.0	㈜())스엔 피엘	서울강남구 ○○○○	1/1				
	변경	서구	당하동	957-17	임	740	740.0			1/1				
129	기정	서구	당하동	957-20	임	20	20.0	㈜()()()()()()()()()()()()()()()()()()()	서울강남구 ○○○○	1/1				
	변경	서구	당하동	957-20	임	20	20.0	인천광역시		1/1				
420	기정	서구	당하동	958-2	잡	16.0	16.0	㈜○○아이	인천서구 당하동 ○○○○	1/1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근저당권 설정	
130	변경	서구	당하동	958-2	잡	16.0	16.0	㈜○○아이	인천서구 당하동 ○○○○	1/1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근저당권 설정	
	기정	서구	당하동	962-5	임	933.0	896.0	김〇〇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99/933				
								깁〇〇	서울특별시 관안구 ○○○○	99/933				
								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66/933				
								한○○	경기도 파주시 ○○○○	66/933				
								김〇〇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5/933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	233/933				
131								권()()	서울특별시 동작구 ○○○	165/933				
	변경	서구	당하동	962-22	임	918.0	918.0	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99/933				
								깁〇〇	서울특별시 관안구 ○○○	99/933				
								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66/933				
								한○○	경기도 파주시 ○○○	66/933				
								김○○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5/933				-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	233/933				$\vdash$
	기자	ר נו	다뉘드	062.6	OL	027.0	760.0	권()()	서울특별시 동작구 ○○○○	165/933				+
132	기정 변경	서구 서구	당하동 당하동	962-6	임 임	827.0 803.0	768.0 803.0	0 00 0 00	서울관악구 행운8길 ○○○○	1/1				-
	T3	시구	강아동	962-23	<u> </u>	803.0	803.0	400	서울관악구 행운8길 ○○○○	1/1				

2	J련	소	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빈	호	구	동	시민	시축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미끄
133	기정	서구	당하동	산203- 1	임	22,399.0	7,963.0	○○○○남 양군파감찰 공문중회	인천남구 주안동 ○○○○	1/1	한국○○ 공사	서울 강남구 ○○○○	구분지상 권설정	
133	변경	서구	당하동	산203- 8	임	7,923.0	7,923.0	○○○○남 양군파감찰 공문중회	인천남구 주안동 ○○○○	1/1				
134	기정	서구	당하동	산203- 3	임	160.0	160.0	한국○○공 사	전남나주시 전력로 ○○○○	1/1				
134	변경	서구	당하동	산203- 3	임	160.0	160.0	한국○○공 사	전남나주시 전력로 ○○○○	1/1				
135	기정	서구	당하동	산213- 2	임	10,369.0	2,811.0	이○○	경기도용인시 수지구 ○○○○	1/1				
133	변경	서구	당하동	산213- 13	임	2,827.0	2,827.0	이○○	경기도용인시 수지구 ○○○○	1/1				
	기정	서구	당하동	산213- 6	임	1,901.0	880.0	정○○	인천서구 봉화로 ○○○○	100/1901				
126								백〇〇	인천광역시 서구 ○○○○	1801/1901				
136	변경	서구	당하동	산213- 14	임	751.0	751.0	정○○	인천서구 봉화로 ○○○○	100/1901				
								백〇〇	인천광역시 서구 ○○○○	1801/1901				
137	기정	서구	당하동	산213- 12	임	4,012.0	225.0	박○○	인천계양구 장제로 ○○○○	1/1			요역지 지역권	
137	변경	서구	당하동	산213- 15	임	171.0	171.0	인천광역시		1/1				
138	기정	서구	당하동	산218- 1	임	919.0	670.0	이○○	인천남구 숭의동 ○○○○	1/1				
130	변경	서구	당하동	산218- 3	임	715.0	715.0	0 00	인천남구 숭의동 ○○○○	1/1				
139	기정	서구	당하동	산218- 2	임	2,652.0	1,037.0	( <del>A</del> )()()	서울중구 퇴계로 ○○○○	1/1				
139	변경	서구	당하동	산218- 4	임	1,081.0	1,081.0	인천광역시		1/1				
	기정	서구	당하동	산220	임	21,818.0	20,189.0	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1/2				
140								심○○	인천서구 청라캐낼로 ○○○○	4959/2181 8				
								손〇〇	인천서구 청라캐낼로 ○○○○	5950/2181				

	련	소	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반	호	구	동	시킨	시속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미끄
										8	한국전력 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설정	
	변경	서구	당하동	산220	임	21,818.0	20,189.0	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1/2	671	88 107	20	
								심○○	인천서구 청라캐낼로 ○○○○	4959/2181 8				
								손이이	인천서구 청라캐낼로 ○○○	5950/2181 8				
											한국〇〇 공사	서울 강남구 ○○○○	지상권 설정	
141	기정	서구	당하동	산221	임	8,829.0	8,829.0	이○○	서울서초구 서초동 ○○○○	1/1				
141	변경	서구	당하동	산221	임	8,829.0	8,829.0	인천광역시		1/1				
142	기정	서구	당하동	산221- 1	임	5,412.0	5,306.0	양○○	경기도의정부시 ○○○○	1/1				
142	변경	서구	당하동	산221- 6	임	5,150.0	5,150.0	양○○	경기도의정부시 ○○○○	1/1				
4.42	기정	서구	당하동	산221- 3	임	698.0	526.0	박○○	인천남구 만수동 ○○○○	1/1				
143	변경	서구	당하동	산221- 7	임	536.0	536.0	박○○	인천남구 만수동 ○○○○	1/1				
4.4.4	기정	서구	당하동	산221- 5	임	3,115.0	3,115.0	이 ) )	서울서초구 서초동 ○○○○	1/1				
144	변경	서구	당하동	산221- 5	임	3,115.0	3,115.0	인천광역시		1/1				
145	기정	서구	당하동	산225	임	8,865.0	8,865.0	㈜○○스엔 피엘	서울강남구 언주로 ○○○○	1/1				
	변경	서구	당하동	산225	임	8,865.0	8,865.0	인천광역시		1/1				
	기정	서구	당하동	산226- 1	임	16,377.0	16,377.0	유00	경기도용인시 수지구 〇〇〇〇	60/42050				
								유00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965 /42050				
146								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60/42050				
								유00	서울특별시 강남굴 ○○○○	20965 /42050				
	변경	서구	당하동	산226-	임	16,377.0	16,377.0	인천광역시		21085/420				

2	일련	소	재지	тіні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ш
빈	<u>번호</u>	구	동	지번	시축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비고
				1						50				
								유〇〇	서울특별시 강남굴 ○○○○	20965 /42050				
147	기정	서구	당하동	산226- 2	임	3.0	3.0	국(산림청)		1/1				
147	변경	서구	당하동	산226- 2	임	3.0	3.0	국(산림청)		1/1				
	기정	서구	당하동	산226- 3	임	4648.0	243.0	유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〇〇〇〇	60/42050				
								유00	성울특별시 강남구 ○○○	20965 /42050				
								김〇〇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60/42050				
148								<del>2</del> 00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965 /42050				
140	변경	서구	당하동	산226- 3	임	0	0	유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〇〇〇〇	60/42050				
								유00	성울특별시 강남구 ○○○○	20965 /42050				
								김〇〇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60/42050				
								유00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965 /42050				
149	기정	서구	당하동	산228	임	18,429.0	9,592.0	○○○○사 과공파도화 동종중	인천남구 도화동 ○○○○	1/1				
149	변경	서구	당하동	산228- 5	임	9,114.0	9,114.0	○○○○사 과공파도화 동종중	인천남구 도화동 ○○○○	1/1				
150	기정	서구	당하동	산228- 1	임	960.0	960.0	오○○	경기고양시 일산동구 〇〇〇〇	1/1				
150	변경	서구	당하동	산228- 1	임	960.0	960.0	오○○	경기고양시 일산동구 ○○○	1/1				
154	기정	서구	당하동	산228- 2	임	96.0	96.0	오00	경기고양시 일산동구 〇〇〇〇	1/1				
151	변경	서구	당하동	산228- 2	임	96.0	96.0	오○○	경기고양시 일산동구 ○○○	1/1				
152	기정	서구	당하동	산228-	임	2,028.0	2,028.0	한○○	인천서구 마전동 ○○○○	1/4				

잍	J련	소	재지	ті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ш¬
	호	구	동	지번	시독	(m²)	(m²)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비고
				3										
								한○○	인천서구 마전동 ○○○○	1/4				
								한○○	인천서구 당하동 ○○○○	1/4				
								한〇〇	서울특별시 양천구 ○○○	1/4				
	변경	서구	당하동	산228- 3	임	2,028.0	2,028.0	인천광역시		3/4				
								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	1/4				
153	기정	서구	당하동	산228- 4	임	999.0	999.0	한○○	서울양천구 목동 ○○○○	1/1				
133	변경	서구	당하동	산228- 4	임	999.0	999.0	한○○	서울양천구 목동 ○○○○	1/1				
	기정	서구	당하동	산230	임	2,641.0	346.0	정○○	아산군비방면 수철리 ○○○○	265/2657	인천서구		압류	
								최○○	서울시 서초구 ○○○○	1196/2657				
154								장○○	경기도 수원시 ○○○○	1196/2657				
	변경	서구	당하동	산230- 4	임	2,641.0	346.0	정○○	아산군비방면 수철리 ○○○○	265/2657	인천서구		압류	
								인천광역시		2392/2657				
	기정	서구	당하동	산234- 8	임	1,251.0	1,149.0	조○○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	9402/9620				
155								한○○	서구 마전동 ○○○○	218/9620				
155	변경	서구	당하동	산234- 46	임	953.0	953.0	조))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	9402/9620				
								인천광역시		218/9620				
150	기정	서구	백석동	산35-1	임	16,260.0	3,340.0	김○○	인천 서구 백석동 ○○○○	1/1	한국○○ 공사	서울 강남구 ○○○○	구분지상 권설정	
156	변경	서구	백석동	산35-7	임	3,206.0	3,206.0	김○○	인천 서구 백석동 ○○○○	1/1	한국○○ 공사	서울 강남구 ○○○○	구분지상 권설정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7호

##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2022.1.13. 시행)에 따라 법률 시행 전후의 인천광역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 및 연서대상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2022년 1월 10일

# 인 천 광 역 시 장

연령	청구권자 주민총수	내국인	외국인	연서 주민수	비고
18세 이상	2 524 520	2 514 054	10.466	12,623	'22.1.13.부터
10/11 9/3	2,524,520	2,514,054	10,466	(1/200 이상)	시행
19세 이상	2 406 091	2 405 641	10 440	29,366	'22.1.12.까지
19세 이상	2,496,081	2,485,641	10,440	(1/85 이상)	시행

(통계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 내국인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선거권 없는자 제외)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선거권 없는지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440-2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8호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인천광역시장 및 지역구 인천광역시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월 10일

## 인 천 광 역 시 장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 인천광역시장

(2021. 12. 31 현재, 단위 : 명)

			주민 /	L환투표 청구권	자 총수		ᅱ人	
근	구	豊	계	19세 이상 주민	19세 이상 등록 외국인	서명인 수	최소 서명인 수	비고
	계		2,496,081	2,485,641	10,440	249,609		
중		구	120,935	119,908	1,027		12,094	
동		구	53,745	53,570	175		5,375	
	추홀	구	354,612	352,976	1,636		24,961	
연	수	구	314,051	313,358	693		24,961	
남	동	구	437,543	436, 104	1,439		24,961	
부	평	구	422,963	419,200	3,763		24,961	
계	양	구	256,115	255,615	500		24,961	
서		구	455,208	454,060	1,148		24,961	
강	화	군	62,392	62,339	53		6,240	
옹	진	군	18,517	18,511	6		1,852	

○ 내국인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할 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외국인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할 군·구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021. 12. 31 현재, 단위 : 명)

			=1.		A	(2021. 1	2. OI U'	대, 단위 : 명) -
군구별	선거구별	요면 평 변	성- 계	<u>구권자 총</u> 19세 이상 주민	수 19세 이상 등록 외국인	서명인 수	최소 서명인 수	비고
		계	40,716	39,937	779	8,143		
		연 안 동	5,678	5,639	39		408	
		신 포 동	4,700	4,532	168		408	0711 =
중 구	   제1선거구	신 흥 동	11,587	11,442	145		408	3개 동 이상에서 각각
0 1	^     LL	도 원 동	3,606	3,597	9		408	최소 서명인 수
		율 목 동	2,979	2,956	23		408	이상의 서명 필요
		동인천동	5,466	5,388	78		408	
		개 항 동	6,700	6,383	317		408	
		계	80,219	79,971	248	16,044		
		영 종 동	16,568	16,532	36		803	2개 동
중 구	제2선거구	영종1동	32,382	32,260	122		803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운 서 동	27,484	27,408	76		803	이상의 서명
		용 유 동	3,785	3,771	14		757	필요
		계	53,745	53,570	175	10,749		
		만 석 동	6,014	5,991	23		538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5,328	5,304	24		538	
		화수2동	6,782	6,749	33		538	
		-	송현1.2동	8,870	8,848	22		538
동 구	선 거 구	송현3동	3,294	3,280	14		538	4개 동 이상에서 각각
0 1		송림1동	1,404	1,395	9		281	최소 서명인 수
		송림2동	2,517	2,514	3		504	이상의 서명 필요
		송림3.5동	6,573	6,557	16		538	_
		송림4동	5,110	5,097	13		538	
		송림6동	5,193	5,183	10		538	
		금 창 동	2,660	2,652	8		532	
		계	104,049	103,390	659	20,810		
		도화1동	20,504	20,336	168		1,041	
미추홀구	제1선거구	도화2.3동	27,589	27,509	80		1,041	2개 동 이상에서 각각
	시마신기 [	주 안1 동	18,757	18,589	168		1,041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주안5동	18,610	18,467	143		1,041	필요
		주안6동	18,589	18,489	100		1,041	

			청-	구권자 총	<u></u> 수				
군구별	선거구별	읍면동 별	À	19세 이상 주민	19세 이상 등록 외국인	서명인 수	최소 서명인 수	비고	
		계	64,556	64,349	207	12,911			
		주안2동	14,944	14,884	60		646		
미夫승기	레이셔키그	주 안 3 동	7,787	7,769	18		646	2개 동 이상에서 각각	
미추홀구	제2선거구	주 안 4 동	12,285	12,239	46		646	최소 서명인 수	
		주 안 7 동	11,254	11,217	37		646	이상의 서명 필요	
		주 안 8 동	18,286	18,240	46		646		
		계	78,228	77,730	498	15,646			
		숭의2동	12,911	12,807	104		783		
		숭의1.3동	12,159	12,069	90		783	2개 동	
미추홀구	제3선거구	숭의 4 동	14,371	14,256	115		783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용현1.4동	16,103	16,050	53		783	최도 시청인 구     이상의 서명	
		용현2동	15,575	15,473	102		783	필요	
		용현3동	7,109	7,075	34		783		
	제4선거구 -	계	107,779	107,507	272	21,556			
		-	용현5동	39,554	39,417	137		1,078	ᅥᇬᆘᄃ
l 미추홍구		학익1동	26,865	26,797	68		1,078	<sup>2개 중</sup>   이상에서 각각	
-1121		학익2동	15,827	15,803	24		1,078	최소 서명인 수	
		관 교 동	13,059	13,043	16		1,078	이상의 서명 필요	
		문 학 동	12,474	12,447	27		1,078		
		계	141,966	141,733	233	28,393			
		송도1동	29,936	29,897	39		1,420	2개 동	
   연 수 구	제1선거구	송도2동	26,128	26,082	46		1,420	이상에서 각각	
	,,,,,,	송도3동	36,826	36,762	64		1,420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송도4동	18,893	18,868	25		1,420	이성의 시청   필요	
		송도5동	30,183	30,124	59		1,420		
		계	52,634	52,551	83	10,527		4-711 [	
   연 수 구	  제2선거구	옥련1동	16,450	16,413	37		527	1개 동 이상에서 각각	
	에즈린기 트	동춘1동	20,834	20,800	34		527	최소 서명인 수	
		동춘2동	15,350	15,338	12		527	이상의 서명 필요	
		계	56,601	56,423	178	11,320			
٠ ٨ ٦	TILO 11 - 1 -	옥련2동	17,120	17,083	37		567	1개 동	
연 수 구	제3선거구 연수	연수1동	17,270	17,186	84		567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청 학 동	22,211	22,154	57		567	이상의 서명 필요	

			청-	구권자 총	·수			
군구별	선거구별	요면 명 명	Э	19세 이상 주민	19세 이상 등록 외국인	서명인 수	최소 서명인 수	비고
		계	62,850	62,651	199	12,570		
		선 학 동	15,474	15,383	91		629	2개 동
연 수 구	제4선거구	연수2동	18,477	18,416	61		629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연수3동	14,231	14,196	35		629	이상의 서명
		동춘3동	14,668	14,656	12		629	필요
		계	86,097	85,830	267	17,220		
		논현1동	26,268	26,192	76		861	1개 동 이상에서 각각
남 동 구	제1선거구	논 현 2 동	27,868	27,761	107		861	최소 서명인 수
		논현고잔동	31,961	31,877	84		861	이상의 서명 필요
		계	57,378	57,187	191	11,476		_
		구월1동	25,730	25,668	62		574	1개 동
남 동 구	제2선거구	구월4동	13,291	13,231	60		574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남촌도림동	18,357	18,288	69		574	이상의 서명 필요
		계	71,605	71,170	435	14,321		
		구월3동	27,149	26,980	169		717	1개 동 이상에서 각각
남 동 구	제3선거구	간석1동	18,909	18,842	67		717	최소 서명인 수
		간석4동	25,547	25,348	199		717	이상의 서명 필요
		계	71,444	71,135	309	14,289		
	   T   4    7    7	구월2동	28,187	28,149	38		715	1개 동 이상에서 각각
남동구	제4선거구	간석2동	18,695	18,613	82		715	최소 서명인 수
		간석3동	24,562	24,373	189		715	이상의 서명 필요
		계	67,645	67,539	106	13,529		
		만수2동	20,568	20,538	30		677	2개 동
남 동 구	제5선거구	만수3동	15,065	15,024	41		677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만수4동	18,084	18,074	10		677	이상의 서명
		만수5동	13,928	13,903	25		677	필요
		계	83,374	83,243	131	16,675		0711 5
나도그	레이셔크	만수1동	15,461	15,429	32		834	2개 동 이상에서 각각
남 동 구	제6선거구	만수6동	21,123	21,090	33		834	최소 서명인 수
		장수서창동 서 창 2 동	16,514 30,276	16,458 30,266	56 10		834 834	이상의 서명
		계	65,713	64,543	1,170	13,143	004	필요
L -! -	-U	<u>계</u> 부평1동	32,523	32,021	502	10, 140	658	
부 평 구	구 제1선거구		32,523	32,522	668		658	각각1/100(1%) 이상 서명 필요
			-,,,,,,	,				

			청-	구권자 총	수				
군구별	선거구별	- 연명 - 변명	Э	19세 이상 주민	19세 이상 등록 외국인	서명인 수	최소 서명인 수	비고	
		계	78,896	78,358	538	15,779			
		부평3동	11,557	11,421	136		789		
  부 평 구	제2선거구	산곡3동	19,236	19,201	35		789	2개 동 이상에서 각각	
	\\\\\\\\\\\\\\\\\\\\\\\\\\\\\\\\\\\\\\	산곡4동	15,097	15,084	13		789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십정1동	12,209	12,149	60		789	필요	
		십정2동	20,797	20,503	294		789		
		계	80,454	78,923	1,531	16,091			
		부평2동	13,421	13,132	289		805		
  부 평 구	제3선거구	부평5동	28,302	27,496	806		805	2개 동 이상에서 각각	
	\\\\\\\\\\\\\\\\\\\\\\\\\\\\\\\\\\\\\\	부평6동	13,473	13,166	307		805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부개1동	14,527	14,443	84		805	필요	
		일 신 동	10,731	10,686	45		805		
	제4선거구		계	72,131	71,873	258	14,426		
		산곡1동	10,420	10,391	29		722	   2개 동	
부 평 구		제4선거구	제4선거구	산곡2동	25,362	25,334	28		722
		청 천 1 동	6,230	6,179	51		722	이상의 서명	
		청 천 2 동	30,119	29,969	150		722	필요	
		계	59,326	59,204	122	11,865			
부 평 구	제5선거구	갈산1동	14,725	14,676	49		594	1개 동 이상에서 각각	
T 6 1	\\\\\\\\\\\\\\\\\\\\\\\\\\\\\\\\\\\\\\	갈산2동	16,428	16,396	32		594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삼산1동	28,173	28,132	41		594	필요	
		계	66,443	66,299	144	13,289			
	테스셔크[그	삼산2동	22,934	22,913	21		665	1개 동	
부 평 구	제6선거구	부개2동	17,138	17,056	82		665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부개3동	26,371	26,330	41		665	필요	
		계	48,747	48,665	82	9,749			
계 양 구	제1선거구	효성1동	23,745	23,702	43		488	각각 1/100(1%)	
		효성 2 동	25,002	24,963	39		488	이상 서명 필요	

			청-	구권자 총	수			
군구별	선거구별	읍면동 별	Э	19세 이상 주민	19세 이상 등록 외국인	서명인 수	최소 서명인 수	비고
		계	49,067	48,933	134	9,813		
711 01 7	TIO 11 71 7	작전1동	17,540	17,486	54		491	1개 동
계 양 구	제2선거구	작전 2 동	14,455	14,419	36		491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작전서운동	17,072	17,028	44		491	필요
		계	61,156	61,026	130	12,231		
	-11011=17	계 산1 동	19,535	19,481	54		612	1개 동
계 양 구	제3선거구	계 산 2 동	23,897	23,848	49		612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계 산 3 동	17,724	17,697	27		612	이상의 서명 필요
	계산4동 29,0	97,145	96,991	154	19,429			
		계 산 4 동	29,303	29,289	14		972	2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계 양 구		계 양1 동	18,089	18,061	28		972	
		계 양 2 동	29,402	29,330	72		972	의소 시청년 구 이상의 서명 필요
		계 양 3 동	20,351	20,311	40		972	글파
		계	117,682	117,400	282	23,536		
		검 단 동	27,458	27,353	105	5,492	1,177	
	제1선거구	불로대곡동	18,539	18,509	30	3,708	1,177	· 2개 동
서 구		원 당 동	18,734	18,700	34	3,747	1,177	이상에서 각각
		당 하 동	22,294	22,214	80	4,459	1,177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마 전 동	18,097	18,079	18	3,619	1,177	필요
		아 라 동	12,560	12,545	15	2,512	1,177	
		계	93,894	93,635	259	18,779		
서 구	제 2서 긔 그	검암경서동	37,399	37,288	111	7,480	939	1개 동
\\\\\\\\\\\\\\\\\\\\\\\\\\\\\\\\\\\\\\	제2선거구	연 희 동	35,609	35,527	82	7,122	939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오류왕길동	20,886	20,820	66	4,177	939	필요

청구권자 총수											
군구별	선거구별	읍면동 별	Я	19세 이상 주민	19세 이상 등록 외국인	서명인 수	최소 서명인 수	비고			
		계	138,722	138,480	242	27,744					
		청라1동	23,803	23,753	50	4,761	1,388				
		청라2동	36,549	36,496	53	7,310	1,388	]   2개 동			
서 구	제3선거구	청라3동	23,216	23,178	38	4,643	1,388	이상에서 각각			
		가정1동	22,895	22,844	51	4,579	1,388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가정2동	5,866	5,860	6	1,173	1,174	필요			
		신현원창동	26,393	26,349	44	5,279	1,388				
		계	104,910	104,545	365	20,982					
		가정3동	8,628	8,608	20	1,726	1,050				
		석남1동	19,981	19,881	100	3,996	1,050				
  서 구	제4선거구	석남2동	11,697	11,637	60	2,339					
Λ	지 후 제4인기후	세4인기구 	ㅜ   세4인기구 		석남3동	12,319	12,286	33	2,464	1,050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가 좌 1 동	11,127	11,054	73	2,225	1,050	이상의 서명			
		가좌2동	17,091	17,073	18	3,418	1,050	필요			
		가 좌 3 동	14,919	14,883	36	2,984	1,050				
		가좌4동	9,148	9,123	25	1,830	1,050				
		계	62,392	62,339	53	12,479					
		강 화 읍	19,411	19,380	31		624				
		선 원 면	6,860	6,857	3		624				
		불 은 면	4,575	4,574	1		624				
		길 상 면	6,534	6,528	6		624				
		화 도 면	4,241	4,240	1		624				
7 - 7		양 도 면	3,947	3,944	3		624	5개 읍면			
강 화 군	선 거 구	내 가 면	2,889	2,889	_		578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하 점 면	3,777	3,775	2		624	이상의 서명 필요			
		양 사 면	1,747	1,747	-		350				
		송 해 면	3,043	3,038	5		609				
		교 동 면	2,694	2,694	-		539				
		삼 산 면	2,057	2,056	1		412				
		서 도 면	617	617	_		124				

			청-	구권자 총	수				
군구별	선거구별	읍면동 별	Э	19세 이상 주민	19세 이상 등록 외국인	서명인 수	최소 서명인 수	비고	
		계	18,517	18,511	6	3,703			
	본       도       면         변       명       면         대       정       면         다       전       전         전       전       면         자       월       면         연       평       면		북 도 면	2,029	2,029			186	
			백 령 면	4,426	4,424	2		186	
0 71 7		대 청 면	1,299	1,298	1		186	3개 면 이상에서 각각	
중 신 군		덕 적 면	1,771	1,771			186	최소 서명인 수	
		영 흥 면	5,889	5,887	2		186	이상의 서명 필요	
		1,249	1,248	1		186			
		연 평 면	1,854	1,854			186		

- 1. 각 선거구별로 산정된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되, 각 선거구별 3분의 1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 최소 서명인 수 : 읍·면·동별 청구권자 총수의 20% (최대 관할 선거구 전체 청구권자 총수의 1%)
  - ※ 다만, 선거구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2. 19세 이상 주민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함
- 3. 등록 외국인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를 말함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50호

## 공시송달 공고(온천원보호지구 지정해제 처분 사전통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274번지 일원 덕정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온천원보호지구 지정해제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 10.

## 인 천 광 역 시 장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온천원보호지구 지정해제
- 2.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명칭)	주소	반송사유	비고
㈜강화리조트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1길 ○, ○층(고척동)	수취인불명	법인등기
(덕정온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9길 ○○-○○, ○○○호	] 구위진출명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취소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해제
    - 법적근거: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5항제2호

- 5. 공고기간: 2022. 1.10. ~ 1.24.
- 6. 의견제출 및 기타문의
  - 제 출 처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본관5층(구월동) 도시계획과	032-440-4614	032-440-8678	chahyunseon @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51호

# 2022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제9조 및「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인천광역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단위 : 명)

주민-	투표청구권자	투표청구 주 민 수	청구인수	
총 수	내국인수	외국인수	주 민 수	비 율
2,498,682	2,485,641	13,041	124,935	1/20

○ 내국인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할 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외국인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할 군·구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2022년 1월 10일

#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52호

디지털 물류체계의 구현을 통해 도시물류 문제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 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할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모내용을 공고합니다.

> 2022년 1월 7일 인천광역시장

- 다

음 -

- 1. 대상사업
- □ 사업명: 20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 □ 사업내용
  - 디지털 기술 기반의 도시물류 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물류서비스의 도입·구현 등 실증 지원
- □ 지원규모 : 20억원 이내 (국비50, 시비 50)
- 2. 신청대상
  - 국토부「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에 **인천시와 공동 응모가** 가능한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기업(단체)
- 3. 신청방법
  - 제 출 일 : 2022년 1월 10일(월)~2022년 1월 21일(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사업계획서 1부(파일 포함)
-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택시물류과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alsod2@korea.kr)
- 4.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사업안내서(별첨) 참고

#### 5. 유의사항

-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일 당일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이후 도착 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택시물류과(032-440-387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별첨】20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 - 사업안내서

[별첨]

# 20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시업 - 사업안내서 -

2022. 1.



	+1
_	人[
	• •

I. 사업 개요	1
Ⅱ. '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	<u>리</u>
사업 공모 계획(안)	2
Ⅲ.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3
Ⅳ. 추진일정(안)	3
♡. 제출서류 및 양식	5

### I

#### 사업 개요

- □ 도시 집중화가 지속되고 소비방식의 변화로 인한 생활물류 성장 등에 따른 환경 변화와 도시물류 문제 해소를 위한 대응 전략이 필요
  -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91.8%('18)로 지속적으로 상승, 이에 따라 택배\*\* 등 물류수요 증가로 교통혼잡·사고 등 외부효과 발생
    - \* 도시지역 인구비율(%): 한국 ('97) 87.2 → ('18) 91.8 / 전세계 ('18) 55.3
    - \* 택배물동량(억개): ('16) 20.5→('17) 23.2→('18) 25.4→('19) 27.9→('20) 33.7(+13.2%)
  - o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자상거래 확산, 스마트 기술 발전**에 힘입어 산업간 융복합 등 **다양한** 新 **물류서비스 등장** 
    - \* 例) 배달대행, 정기구독, 무인매장, 콜드체인, 셀프스토리지, O2O서비스 등
- □ 이에 도시·물류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 도시물류체 계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선도사업 추진 필요
  - 제도 정비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21.1.26 공포, 7.27 시행)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주요 관련내용 >> -

제2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국가·지자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u>행정적·재</u> 정적 지원 (시설·장비 확충·개선, 연구·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컨설팅·교육 등)

제28조(시범사업의 실시) **국토부**는 생활물류 발전을 위해 필요시 <u>시범사업을 실시</u>할 수 있 도록 규정

제31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지자체**는 공공주택사업·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생활물류 수 요 유발시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시·군 계획 등**에 **반영**토록 규정

- '한국판뉴딜 종합계획'발표('20.7)하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추진 중('20~)
  - \* 기존 도시내 물류문제 개선을 위한 실증사업을 지원(물류서비스 실증)하고, 신규 조성도시 등에 대해 도시물류계획 수립을 지원(물류시범도시)
- ◆ 도시화 및 물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물류체계 구현**□ 도시물류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blacksquare$

#### '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공모 계획(안)

#### □ 신청 대상

○ 국토부「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에 **인천시와 공동 응모** 가 가능한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기업(단체)

#### □ 사업 내용

- (사업내용) 디지털 기술 기반의 도시물류 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물류서비스의 도입·구현 등 실증 지원
- (주요유형) 서비스 특성, 운송수단, 범위 등을 감안하여 유형화

유 형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예)
라스트마일	<ul><li>도시내 특정구역을 대상으로 새로운</li><li>모빌리티 서비스 제공</li><li>최적솔루션을 활용한 물류효율화</li></ul>	•로봇·드론·전기화물자전거 등 배송서비스 (주거·상업시설, 공공시설내, 교육기관 내) •공동배송 서비스(기업간, 운송수단간 등)
공유 물류	<ul> <li>유휴공간, 공용공간 등 활용 서비스</li> <li>물류장비·시설 등 공유물류 서비스</li> <li>산업간 융복합(물류+유통·ICT</li> </ul>	·주유소·주차장 등을 활용한 물류서비스 ·공유 모빌리티 물류서비스
융복합 서비스	등)을 통한 새로운 물류서비스 ·특정 시설내 디지털 물류기술 서	· 자동주문·결제·배송 등 · 공공주도형 O2O 서비스 · 스마트글래스, 비전기술 등 활용 서비스
생활 안전	비스 ·물류산업 현장안전 등을 위한 서비스 ·시민대상 생활물류 안전서비스 ·취약·소외층 등 물류복지서비스 ·지하철 등 지하공간을 활용한 서	·물류 안전장비 및 기술개발, 활용서비스 ·무인보관함, 콜드체인/급식관리 등) ·정기배송서비스, 구호품 보급·관리서비 스
지하 물류	<ul><li>·지하절 등 지하공간을 활용한 서비스</li><li>·첨단기술을 활용한 신물류 서비스</li><li>(진공관, 트램 등)</li></ul>	·역사 공간을 활용한 물류서비스 ·진공기술을 활용한 운송서비스 (하이퍼루프, Air Shooter, 크린넷 등)
디지털물류	·물류혁신 신사업 등 창업 지원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도입 지원	・물류창업공간, 테스트베드 구축 ・디지털 기술(디지털트윈·IoT·AR 등) 활용서 비스

#### □ 추진 일정



# $\blacksquare$

#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국토부 공모 신청사업)

□ 평가 방법: 서면 평가

□ 평가 기준

평가 항목	배 점 (100)	세 부 평 가 항 목
사업필요성 및 타당성	20	<ul> <li>대상지 현황 및 사업의 필요성</li> <li>비전·목표·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li> <li>성과목표(KPI)의 적절성 및 실현방안의 타당성</li> </ul>
사업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	30	<ul> <li>물류서비스 실증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li> <li>사업 유형(테마)과의 부합성</li> <li>물류서비스 도입·실증에 따른 기대효과(KPI 제시)</li> </ul>
추진체계의 적정성	30	<ul><li>지자체, 지역사회 등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방안</li><li>추진체계의 구체성 및 우수성</li><li>재원조달 방안의 구체성</li></ul>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20	<ul> <li>디지털 물류서비스의 고도화 방안</li> <li>(타분야 연계방안, 수집데이터 활용방안 등)</li> <li>물류서비스 시행 및 운영·관리 방안</li> </ul>

#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5명 내외(학회·공공기관·시의회 등 전문가, 비공개)
- (평가 절차) 서면평가

# □ 선정 기준

서면평가를 거쳐 고득점 1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다만, 총점이 70점 미만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IV

# 추진 일정(안)

-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공모 공고: '22. 1. 7.
  - (제 **출 일**) 2022년 1월 10일(월) ~ 2022년 1월 21일(금) 18:00 까지
  -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택시물류과(우편 또는 이메일(alsod2@korea.kr))
  -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 신관(11층, 택시물류과)
  - \* (담당) 인천광역시 택시물류과(T. 032-440-3872)

○ (제출서류)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사업계획서 1부(파일 포함)

※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신청 건만 유효하며, 이후 도착하는 것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위원회 심사 및 선정 : 2022. 1. 24.(월) ~ 28.(금)

□ 국토부 공모사업 일정

: '22. 2. 18.까지 ㅇ 공모사업 신청서류 제출

0 서면 평가 : '22. 2. 18. ~ 25.

ㅇ 발표 평가 및 선정 : '22. 3. 4.(예정)

\* 추진일정은 사정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출서류 및 양식

양식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사업계획(안)

공모신청용

# 인천광역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사업계획(안)

2022. 1.

인천광역시 컨소시엄 참여기관

# 20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사업계획서(요약)

※ 4페이지 이내로 작성

신청기관	인천광역시, <i>○○○○(업체명)</i>			
사업명칭	인천광역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부제 : )			
사업개요	■ 대상지 개요 및 현황 등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 사업 필요성 분석 및 비전, 목표, 추진전략 ■ 사업 성과목표(KPI) 및 실현방안 등			
사업 우수성 및 기대효과	<ul><li>□디지털 물류서비스 구축계획</li><li>□디지털 물류서비스 연계방안, 기대효과 등</li></ul>			
추진체계의 적정성	• 협력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방안 • 사업추진 체계 •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ul> <li>□ 디지털 물류서비스 고도화 방안 (관련서비스 연계 및 데이터 활용)</li> <li>■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 방안 등</li> </ul>			
주민, 전문가 등 의견	■ 주요 의견 및 반영사항 작성 등			
작성 담당자	• ○○○○(업체명)         (정) ○○담당       성명 (000-000-0000, abc@korea.kr)         (부) ○○담당자       성명 (000-000-0000, def@korea.kr)			



I . 사업개요	1
1. 사업명	0
2. 사업 대상지 개요	00
[별첨]	
1. 0000	00

### 작성 요령

- (형식)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표지, 사업 신청서(사본), 요약서(4쪽 이내), 목차, 본문(30쪽 이내) 및 참고자료(30쪽 이내),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 양면 인쇄하여 좌편철 제책
  - \* 링·스프링 제본 지양
- (요약서) 주요 평가항목과 지표에 맞게 본 계획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총 4쪽 이내로 작성하되, 전체 계획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1쪽) 참고 첨부
- (본문) 본문은 A4 30쪽 이내로 하며 초과 분량은 참고자료를 활용·첨부
  - 본문 구성은 지역여건 등에 따라 달리 가능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 유지
  - 편집 용지(A4)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20mm,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각 10mm로 설정
  -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를 기준, 줄 간격160%
  - 작성양식의 이탤릭체(파란색)은 작성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작성 시 삭제
  - 전체사업 계획도를 첨부할 경우 A3 크기로 작성·첨부하며,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
  - 해당 지역의 현황과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 해당 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다른 지역 사진은 사용하지 않음
- (기타) 본문 30쪽 이내를 초과하는 분량은 참고자료에 포함, 각종 증빙 자료는 순서에 따라 별첨(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위치를 본문에 표시)
- ※ 발표자료 PT 30쪽 이내로 작성 (양식 자율, 글꼴은 기본)

#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 사업계획 목차 구성(안)

## I. 신청사업 개요

- 1. 사업 개요
- 2. 현황 및 문제점

# Ⅱ.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개요

- 1.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 1) 대상지 경쟁력 분석
  - 2) 사업 필요성
- 2.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3. 성과목표(KPI) 수립 및 실현방안

# Ⅲ.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추진계획

- 1. 디지털 물류서비스 구축계획
- 2. 디지털 물류서비스 연계 방안
- 3. 디지털 물류서비스 기대효과

# Ⅳ. 단계별 세부사업 추진방안

- 1. 협력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방안
  - 1) 협력 거버넌스 구성
  - 2) 협력 거버넌스 운영 방안
- 2. 추진조직 체계
- 3. 재원조달 방안
- 4. 디지털 물류서비스 고도화,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 방안

# Ⅴ. 기 타

<표준안>

### I. 신청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착안사항>

- O 위치/면적: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행정동명 등)와 구역계 제시
- O 일반현황: 경제 규모, 인구, 산업, 주택, 주거/유동인구 등 각종 통계자료
- O 위치적 특성. 대상지 주변 주요 물류시설 현황 등 대상지 입지여건에 관하여 서술
- O 대상지 관련 기존 계획 및 신규 계획된 사업내용 작성
- O 위치 현황도를 첨부하며, 해당 도면에 입지여건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표시
- O 아래 표 형식을 활용하여 추가 정리

	사	업	개	ঞ	
사 업 명 칭					
사 업 위 치					
사업구역 내 면적 / 인구수					
사 업 기 간					
대상지 내 관련 사업 현황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O 그 외 필요내용은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

2. 현황 및 문제점

#### <착아사항>

- O 대상도시 또는 권역에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예정인 물류시설, 물류서비스 등 현황 작성
- O 아래 표 형식을 활용하여 추가 정리

물류 현황						
관련사업/서비스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기간	구축현황*	

- \* 구축현황은 "계획 중/구축 중/운영 중" 3가지 유형으로 작성
- O 그 외 필요내용은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

- Ⅱ.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개요
  - 1.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 1) 대상지 경쟁력 분석

### <착안사항>

- O 지역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방법론과 분석 결과를 제시
  - 2) 사업 필요성

### <착안사항>

- O 위의 "1. 대상지 현황"과 "대상지 경쟁력 분석" 등과 연계하여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유형 선정 근거 등 제시)의 당위성, 시급성 및 필요성 작성
- 2.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착안사항>

- O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젼,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
- 3. 성과목표(KPI) 수립 및 실현방안

### <착안사항>

O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을 통한 정량적 성과목표(KPI) 수립 및 실현방안 등 제시

### Ⅲ.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추진계획

1.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계획

### <착안사항>

- O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구축계획을 제시
- 지역 문제 및 수요에 적합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사례 검토 및 후보군 제시
- O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후보군에 대한 협력 거버넌스와 전문가 의견수렴 제시
- O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관련 기술 수준과 예산 등에 대한 고려사항 제시
- O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관련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사항 제시
- 2. 디지털 물류서비스 연계 방안

### <착안사항>

- O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제안사업과 유관사업, 시비스 간의 연계 계획 제시
- O 기초(광역)지자체의 기존 물류 관련계획과의 연계방안 등 제시
- O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확산방안 제시
- O 당해 실증사업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방안 또는 연계 방안 제시
- O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수집·활용·연계·제공 방안
- 3.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의 기대효과

### <착안사항>

- O 지역 생활환경(교통, 안전, 환경오염 등) 개선 효과 제시
- O 사업, 창업, 운영 등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효과 제시
- O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제시
- O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의 정량적 성과목표(KPI) 제시

#### Ⅳ. 단계별 세부사업 추진방안

- 1. 협력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방안
  - 1) 협력 거버넌스 구성

#### <착악사항>

- O 지자체에 기 조성된 협력 거버넌스 현황 및 주민, 상인 등 이해관계자 협의체 참여 의향 제시
- 협력 거버넌스 참여 구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구성원 도출

2) 협력 거버넌스 운영 방안

### <착안사항>

- O 협력 거버넌스 운영방식 제시
- O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
- O 협력 거버넌스 확산 방안 제시(리빙랩 네트워크 등)
- 2. 추진조직 체계

### <착안사항>

- O 디지털 물류서비스 도출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전담조직 등 지자체 추 진전략 제시
- 협력 거버넌스\* 참여형 디지털 물류서비스 추진체계 등 추진전략 제시
  - \* 주민, 전문가, 기업 등과 디지털 물류서비스 구현 등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 3. 재원조달 방안

### <착안사항>

- O 수행 주체별, 연도별, 사업별 재원 소요 및 이를 구현할 재원조달 방안 제시
- O 민간투자 촉진 및 비즈니스 모델 방안
- O 투자의향서, 투자협약서 등(민간투자에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 4. 솔루션 고도화,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 방안

#### <착안사항>

- O "Ⅲ-1. 물류서비스 실증계획"에서 도출된 디지털 물류서비스의 기능 및 활용에 대하여 서비스 고도화 방안 제시(서비스간 연계방안 및 수집 데이터 활용방안 등)
- O 단계(연도)별 및 부문별 물류서비스 추진계획 등 세부 시행방안 및 운영관리 방안
- O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는 장애·갈등요인 해결방안 등
- O 물류서비스 실현가능 및 지속가능 방안 제시 등

### V. 기타

#### <착안사항>

- O 모범사례 가능한 사업(상징성 및 인지도 우수) 및 시민참여 추진 사업(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의 내용 작성(요약 각 1page, 관련자료 첨부)
- O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전문가그룹 활용방안
- O 지자체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관계획, 연관사업 적용 방안 제시
- O 본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제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55호

#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0.

# 인 천 광 역 시 장

- 1. 등록 및 폐기사유: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신설
- 2. 최초사용연월일: 2022. 1. 10.
- 3. 폐기연월일: 2022. 1. 10.
- 4. 등록(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참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56호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7.

#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등록사항 : 대표자

등록번호	로버ㅎ 변경사항					주관		
(등록연월일)	단체명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변경일	부서
제2000-0- 인천광역시-101 호 (2000.5.30.)	인천지역사회 교육협의회	대표자	박정희	정인오	인천광역시 남동 구 남동대로 743, 4,5층(구월동, 유제 빌딩)	지역사회교육운동의 보급, 지역사회학교 육성 및 연합사업, 지역사회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여성 지도자 양성, 건강기정 육성사업 등	2022.1.6	평 생 교 육 담 당 관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58호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공원조성과(032-458-7032),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8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1. 10.

# 인 천 광 역 시 장

## 1.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 가.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인근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 2. 제한내용

가. 제한지역

구분	위치	면적(m²)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79,330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14번지	407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75번지	118	

나. 제한기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1회에 한하여 2년이내 연장 가능)

- 다. 제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 라. 제한의 예외사항
  - 화재, 천재지변에 의해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관리방안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 3.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열람기간: 2022. 1. 10. ~ 2022. 1. 24.
- 나.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공원조성과(☎ 032-458-7032),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83)

###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60호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 인 천 광 역 시 장

# ○ 등록사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320440	주식회사 조인네트워크 (박경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25, 신성쇼핑 3층 321호(주안동)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1호

# 인천도시관리계획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변경) 공고

- 1.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불로2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토지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 등) 및 같은 법 제55조 (환지계획의 변경)에 따라 환지계획 변경 인가되어(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3189호), 같은 법 제56조(지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변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 2. 본 공고의 효력은 공고일 익일부터 발생하며 같은 법 제57조(지정의 효과)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변경된 내용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 할수 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조성공사 등의 상황으로 환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에 한하여 사용 또는 수익이가능합니다.
- 3. 본 공고와 함께「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준용)」 제11조(공고) 규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환지예정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 우편통지 하오나,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4.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토목부 지역개발팀, 전화 032-440-5182)에 비치하며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jonggeon, 게시물 위치 : 열린마당 자료실)에 도면의 사본을 게시합니다. 또한 동 사업지구의 환지예정지 증명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2022. 1. 10.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첨부: 관계도서(게재생략)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2호

#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된 과적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 및 최고)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월 4일

##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2.1.5.~2022.1.20.(15일간)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22년 1월 28일까지

###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7.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연번	부과번호	대상자	주민등록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 차량	체납본세	반송사유	비고
1	000238	이*수	서울특별시종로구 평창12길 8-20 , 101호 (평창동, 예원주택)	2021.04.26. 15:00	서구 오류동 거첨로 이동1반	축하중 1.60톤 초과(3축하중 11.60톤)	인천06 아6921	500,000	반송(수취인불명)	
2	000239	이*영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로12번길 87 , 다동 102호 (청학동, 정호빌라)	2021.4.26.1 4:10	중구 항동 축항대로 이동2반	폭 1.75미터 초과(총폭 4.25미터)	인천98 자3531	1,000,000	반송(수취인불명)	

입법예고

#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호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 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 다.

> 2022년 1월 1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902호, 2021. 10. 19.)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한도 정비(안 제2조)

- 조례에서 정하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의 한도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 별표1 에 따르도록 개정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토지정보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 032-440-4562, 팩스: 032-440-8682, 전자우편: lks9421@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 화번호
-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incheon.go.kr/legal 자치법규입법예고)

# 4. 참고사항

- 가.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 관계법령 발췌사항
-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이하 "보수"라 한다)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2】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O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시행」
  - 제32조(중개보수 등) ④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관계법령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266호, 2021. 12. 31. 시텡」
- O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제3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 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혐의하여 결정한다.

### 【붙임 3】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902호, 2021. 10. 19.)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

4. 작성자: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장 정종후

#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2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인천광역시장

###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 및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규칙 조항 정비와 용어 및 조문 순화 등 시행규칙 운영 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함.
  -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 정의를 정비함.(안 제3조)
  - 비정액 급수공사비 적용 규정 조례로 정함에 따라 삭제함.(안 제11조)
  - 수질검사 기한 규정을 정비함.(별지 제8호의2서식)
- 나.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함.
  - 공용급수전 설치 신청서 첨부서류 용어를 정비함.(안 별지 제5호 서식)
  - 시설분담금 납부 및 감면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2항, 제8조, 제12조의3 및

- 제19조제5항)
- 공사 하자로 누수 발생시 비용부담 등을 규정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13조 제2항 및 제22조제6항)
- 급수공사비 등의 적용기준을 정비함.(안 별표3)

## 다. 용어 및 근거법령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용어 또는 조문을 순화하고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9조제1항,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6항)
-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30조제4항)
- 누수 포상금 지급조항 정비 및 지급 방법을 확대함.(안 제34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도서지역"을 "섬지역"으로 정비함.(안 제32조의3제1 항제6호)

#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상수도 사업본부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이상준(전화번호 032-720-2086, 팩스번호 032-440-8743, 전자메일 osslsj1@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관할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설분담금 및 급수공사비"를 각각 "급수공사비"로 한다.

제8조 중 "사업소장은 급수공사"를 "급수공사"로,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 금 등이"를 "급수공사비가"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냉수와 온수를 분리하는 경우와 사업소장"을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22조제6항에 따라 산출한 누수량을 해당 업종의 요율로" 를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조"를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택지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을 "재건축사업, 택지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6항 단서 중 "국·내외여행 또는 입원"을 "국·내외여행, 입원 및 빈집"으로 한다.

제22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제6호 전단 중 "도서지역"을 "섬지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만원 또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를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상품권"을 각각 "상품권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등기우편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를 "등기우편 또는 모바일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첨부서류를 아래와 같이 한다.

5. 소요 공사비 및 원인자분담금 자체부담 약정서 별지 제8호의2 서식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검사의뢰서

처리기간 20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수공사 시설분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신청된 급수공사의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별표 3]

# 급수공사비 등의 적용기준(제12조의2제5항)

구분	세부내용						
	구분	적용 대상	적용방법				
1. 주	구경 정액금	D15mm~50mm이하 (공동주택 제외)	구경 정액공사비 + 수수료				
今 上 別 号 )	세대 정액금	공동주택(2세대 이상)	(세대 정액광시비 + 수수료) × 세대수				
설치시	기의 경취보 	오피스텔 (50호 미만)	"				
	* 시비가사 : 츠랴비 저요리(ㄷㄹ게이) 버저스스리 드 저애그에 ㅍ하디지 아스 시하						

- \* 실비가산 : 측량비, 점용료(도로제외), 법정수수료 등 정액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 \* 보조계량기 설치비용 : 실 공사비

### 가. 전체 세대 설치 시

	구분		세대수	설치범위	정액금
-	フレス印	신축	50세대 미만	주 수도계량기 + 세대별 수도계량기	세대 정액금 × 전체 세대수
	공동주택	기존	"	세대별 수도계량기	세대정액금 면제 (제12조의2 제2항)
	오피스텔,	신축	50세대 미만	주 수도계량기 + 세대별 수도계량기	세대 정액금 × 전체 세대수
٩	일반주택	기존	"	세대별 수도계량기	세네 경투다 스 전세 세네ㅜ   

# 수도계량기

2. 세대별

# 설치 시

- \*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 세대가 "나" 항에 따라 일부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후 나머지 전체 세대가 세대별을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 기존을 적용(세대정액금 면제)
- \* 실비가산 : 측량비, 점용료(도로제외), 법정수수료 등 정액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나. 일부 세대 설치 시(기존주택)

L	구분		세대수	설치범위	정액금
	공동주택, 오피스텔,	세대별 계량기	전체 50세대 미만 중 2세대 이상	주 수도계량기 + 세대별 수도계량기	세대 정액금 × 해당 세대수
	고퍼드릴, 일반주택	주 계량기	1세대	주 수도계량기	구경 정액금

\* 실비가산 : 측량비, 점용료(도로제외), 법정수수료 등 정액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 ○ 정액금 구분

- 구경 정액금 : 구경 정액공사비 + 수수료

- 세대 정액금 : (세대정액공사비 + 수수료) × 세대수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급수구역) 조례 제3조 단서	제3조 (급수구역)
의 규정에서 단서의 " <u>관할 지역</u>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이란 서울특별시 일	
부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말	
한다.	
제7조 (공용급수설비의 관리) ① (생	제7조 (공용급수설비의 관리)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폐전 하고자 하	②
는 공용급수설비를 전용급수설비	
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급	
수사용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	
며, 시설분담금 및 급수공사비를	급수공사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설공용	l
급수설비의 경우에는 <u>시설분담금</u>	급수공사비
<u>및 급수공사비</u> 를 징수하지 아니한	
다.	
제8조 (급수공사의 시행시기) <u>사업</u>	제8조 (급수공사의 시행시기) <u>급수</u>
<u>소장은 급수공사</u> 는 제5조제2항에	공사
따른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u>급수공사비가</u>
<u>등이</u> 납부되었을 때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별도 계량기 등 설치) ① 조	제9조 (별도 계량기 등 설치) ①
례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급·배수관에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u>냉수와 온수를 분리하는 경우와 사업소장</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1조(비 정액 급수공비 적용) 조 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급수공사에 적용한다.

- 1. 조례 제5조제2호의 개조공사
- 2. 조례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조계량기 설치공사
- 3. D80mm 이상 설치 급수공사(세 대 정액금 적용 급수공사 제외) 제12조의3(시설분담금 감면 등) [본 조 신설 2017-06-05] ① 조례 제1 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급수설비 에 대한 시설분담금의 감면 범위 는 전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시설분담 금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급수공사시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u>1.</u> 수급자 증명서

<u>사업소장</u>
②・③ (현행과 같음)
<산 제>

<삭 제>

2.	해당	건축물의	소유를	증명할
2	수 있는	는 서류		

- 제13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생략)
  -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22조제6항 에 따라 산출한 누수량을 해당 업 종의 요율로 산정한 요금도 시공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 ① ~ ③ (생 략)
  - ④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 되고 같은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제1항 및제2조에 따른다.
  - ⑤ (생략)
- 제19조 (급수중지 및 폐전) ①·② (생 략)
  - ③ 삭 제
  - ④ 조례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도시계획사업(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 택지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 등)을 시행할 때

제13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현행
과 같음)
②
<u>「인천광역시 상</u>
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라
제14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b>4</b>
<u>제1항</u>
<u>.</u>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 (급수중지 및 폐전) ①・②
(현행과 같음)
4
1
<u>재건축사업, 택</u>
지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 도시

2. (생략)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자(제4항제 1호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자에 한정한다)나 조례 제2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권 폐전된 후에 체납요금을 완납한 자가색로이 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감액한다. 이 경우 여러개의급수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급수관구경이 제일 큰 1개의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만을 감액한다.

제21조 (요금의 조정) ① ~ ⑤ (생 로)

⑥ 조례 제30조제7항에 따라 누수 량에 대한 사용요금의 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누수사실과 누수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국・내외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요금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세21조 (요금의 조정) ① ~ ⑤ (현
행과 같음)
6
<u>국・</u>
내외여행, 입원 및 빈집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감면	기간은 6개월	분
을 초과할 수 없다	7.	

⑦ (생략)

- 제22조 (고장계량기등에 대한 사용 지수량인정) ① ~ ⑤ (생 략)
  - ⑥ 제13조제2항 및 조례 제46조의 누수의 경우에는 누수시간, 수압, 파열 단위면적 등을 확인한 후 누 수량을 산정한다.
  - ⑦ ~ ⑨ (생 략)
- 제30조 (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① ㅈ ~ ③ (생 략)
  - ④ 조례 제43조제1항<u>제8호</u>에 따른 정수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1. 2. (생략)
  - ⑤ ⑥ 삭 제
  - ⑦ (생 략)
- 제32조의3 (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40조제2항의 요금 감면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4. (생 략)
  - 5. 삭 제
  - 6.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급수하는 <u>도서지역</u>에 대하여는 공급량 중에서 100분의 15를 공제한

제	
제	⑦ ~ ⑨ (현행과 같음) 30조 (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9호</u>
	 1.·2.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32조의3 (요금 등의 감면) ①

999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22. 1. 10.(월요
	으로 요금을 부고 :정량은 공급량 <u></u>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	(포상금 지급)	① (생	제34조의2 (포	상금 지급)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제1형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2	
누수를 !	발견하고 그 사석	실을 최초		
로 신고형	한 사람에게 <u>3만</u>	원 또는 3		<u>다음 각 호와 같</u>
만원 상	당의 상품권으로	르 지급한	<u>o</u> ]	
다.				

- 1.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 3만 원 또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 2. 지하누수 : 10만원 또는 10만원
- ③제2항의 포상금은 현금을 은행 계좌로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을 등기우편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제2항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 1. ~ 3. (생략)

상당의 상품권

4.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소 속 공무원

②
<u>다음 각 호와 같</u>
<u>o</u> ]
1
<u>상품권 등</u>
2
<u>상품권 등</u>
③
등기우편 또는 모바일로 지급할
<u>수 있다</u> .
4
1. ~ 3. (현행과 같음)
4
<u> 직원</u>

# <관계법령>

## □ 「수도법」

- 제38조(공급규정)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 ④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 1. 65세 이상인 자
    -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 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제3조(수질검사의 신청) ①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 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20일)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1호

###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2년 1월 5일

###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점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점자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 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점자의 효력,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 나. 인천광역시 점자발전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안 제7조)
- 다. 점자의 보급과 지원, 점자 문서의 제공,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등(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라. 점자문화의 확산 및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규정(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5, 팩스 032-440-8764, 이메일 johyer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유 ㅂ	미고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 가.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붙임1)
-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 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에 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 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인천광역시 점자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드는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도서관법」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 2.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 제9조(점자 문서 제공)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같은 내용의 전자점자를 포함한 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시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산하기관의 정기간행물·지역신문·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점자법」
	○ 제3조(정의)
	○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9조(실태 조사 등)
	○ 제10조(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관계법령	○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 제13조(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 제14조(점자문화의 확산)
	○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 「점자법 시행령」
	○ 제4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 관계법령 발췌사항

### □「점자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
- 2. "전자점자"란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를 말한다.
- 3.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 4. "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5.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왜곡·첨가·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
- 6. "점자규정"이란 한글 자모, 약자, 약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호, 외국어, 문장부호 표기 등 점자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② 공공기관등은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 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20. 12. 8.>

- ④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점자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 2.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증진과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 점자정책과 점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 5.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 6. 점자의 보급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 7. 점자정보화에 관한 사항
  - 8. 남북한 점자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 9.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및 양성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그 밖에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점자규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점자 사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디 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2017. 12. 12.>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점역 · 교정사
  - 2.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 3. 점자물제본기
  - 4. 그 밖에 점자출판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 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 제13조(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교과용 도서와 공공기 관등의 공문서,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점자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들의 점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 □「점자법 시행령」

- 제4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교정사로서 상근하는 사람 1명 이상
  - 2.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 2대 이상
  - 3.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이상
  - 4. 점자물제본기 1대 이상
  - 5. 점역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 1. 「도서관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ㅇ 점자 문서 제공(안 제9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2. 미첨부 근거 규정

- ㅇ「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안 제9조에 따른 점자 문서 제공을 위한 예상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안 제8조, 안 제12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추후 논의될 사항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어「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 4. 작성자

문화관광국 문화콘텐츠과장 김경아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2호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2년 1월 5일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O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심신장애" 또는 "심신상의 장애", "신체·정신

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변경함(안 제2 조~제42조)

- 장애 등을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례를 개정함(안 제43조)
- O 장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조례를 개정함(안 제44조~제47조)

### 3. 자치법규안: 별첨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장 (참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rlagmldu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032-440-621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5. 참고사항

- O 관계법령
- O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 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심신장애 등으로"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

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9조(「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10조(「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11조(「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12조(「인천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 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7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13조(「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14조(「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 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2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15조(「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16조(「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 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17조(「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18조(「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7항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19조(「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20조(「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21조(「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22조(「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23조(「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24조(「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25조(「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진

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26조(「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27조(「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28조(「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 제29조(「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 제30조(「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31조(「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32조(「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

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33조(「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34조(「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 제35조(「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및 제19조제3호 중 "심신장애"를 각각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 제36조(「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 제37조(「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38조(「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39조(「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40조(「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41조(「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42조(「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심신상의 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43조(「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 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보호자"를 "관련자"로 한다.

제45조(「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람(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조의 제목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호자"를 "관련자"로 한다.

제46조(「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중 "정상적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47조(「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애극복과 사회적응"을 "사회적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 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 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 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 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아니한다.
-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구 영 미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3호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2년 1월 7일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이유

○ 인천 수출 1위(2020년 기준) 품목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나.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토록 규정함 (안 제4조)
- 다.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라.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반도체산업 육성업무 전담부서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 1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2, 팩스 032)440-8765, 이메일 yacobb@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 가.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 다. 비용추계서 1부. 끝.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산업" 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 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여건 및 전망
  - 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 4. 반도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6.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 년마다 수립·시행한다.
-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 4. 반도체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
  - 5.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 치·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 6.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
  - 7. 국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 8.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별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 축할 수 있다.

제7조(전담부서)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ul> <li>□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li> <li>○ 제2조(정의)</li> <li>○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li> <li>○ 제12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li> </ul>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
관계 법령	<ul> <li>□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 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li> <li>○ 제4조(핵심전략기술 목록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li> </ul>
	□ <b>과학기술기본법</b> ○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 제8조의3(조례의 제정)
	□ 지방자치법
	o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재·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장비"란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부품·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 4. ~ 10. 생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재·부품 · 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안보적 중요성
- 2.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 3.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 4.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 5.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 6.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을 재검토하여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핵심전략기술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정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지아니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재검토, 자료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장비로서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소재 · 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제2조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8	출판업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위 표에 열거된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하여 위 표의 대상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계속하여 대상업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2.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종에서 생산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소재·부품 및 장

비를 말한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1. 소재 · 부품의 범위(제2조 관련)

대상업종(한국표준	적용범위(소재·부품)	한국표준산업
산업분류번호)	식중립귀(소재·구古)	분류번호
전자부품, 컴퓨터,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26111
영상, 음향 및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26112
통신장비	<u>발광 다이오드</u>	26121
제조업(26)	기타 반도체 소자	26129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 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1. 3. 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1-53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4조(핵심전략기술 목록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① 법 제12조 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은 [별표]와 같다.

- 핵심전략기술 목록(제4조제1항 관련)
- 1. 핵심전략기술 목록은 아래와 같다.

분야	대상기술
가. 반도체 (17개)	1)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 기술 :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기초 소재 제조기술
	2) 반도체 패턴용 공정 소재 제조 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소재 제조기술
	3) 반도체 제조용 박막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 되는 다층박막 소재 제조기술
	4) 반도체용 불소화합물 제조기술 : 기체 혹은 액체 형태로 에칭과 식

분야	대상기술
	각 등의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불소화합물 제조 기술
	5) 반도체 표면처리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절연막 형성, 고기능성 표면처리 소재 제조기술
	6) 반도체 보호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희로 손상 또는 크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막 소재 제조기술
	7) 반도체용 세라믹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를 위한 세라믹소재 제조 기술
	8) 반도체 식각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회로의 식각 공정에 활용되는 기체 및 액체 소재 제조 기술
	9) 반도체 제조용 가스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제조시 사용하는 가스 소재 제조 및 안정화 기술
	10) 반도체 증착 공정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제조에 있어 박막을 증착 하기 위한 소재 제조 기술
	11)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 기술 : 반도체 기능 테스트, 반도체칩의 완성 정도를 검사하는 장비 제조 기술
	12) 반도체 패턴 공정용 장비 제조 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제조 기술
	13) 반도체 패턴 공정용 장비 부품 제조 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부품 제조 기술
	14) 반도체 증착 부품·장비 제조 기술 : 반도체 소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초박막 형태로 증착하는 부품·장비 제조 기술
	15) 반도체 이송 장치 제조 기술 : 반도체 공정별 다수 챔버 사이 또는 챔버 내에서 제조 제품을 이송하는 장비 제조 기술
	16) 반도체 공정용 고정 부품 제조 기술 : 반도체 제조 장비 내에서 기초 소재를 고정하는 부품 제조 기술
	17) 반도체 공정 불순물 제거 장비 제조 기술 : 반도체 공정상에 발생 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비 제조 기술

### □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 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자. 생략
    -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관련, 본 조례안 제정에 의하여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에 대하여 현재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려운 경우로,
  - 2022년도 본예산에 한시적으로 1억4천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해당 '반도체산업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신규사업이 발굴되면 향후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기 및 절차에 따라 별도로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기 타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1호

## 공 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조직이 2022. 1. 1.자로 신설되어 회계직인을 신규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용개시일: 2022. 1. 4.

기관명: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2022. 1. 3.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관인등록 공고

인천아라꿈유치원 공고 제 2022 - 1 호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아라꿈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 지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4.

인천 아라 꿈유치원장 ○ 최초 사용 개시일 : 2022. 1.4.

[관인]

인천아라꿈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아라꿈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관인등록 공고

인천미송유치원공고 제2022-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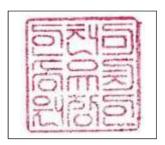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미송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7.

인천미송유치원장 ○ 최초 사용 개시일 : 2022. 1. 7.

[관인]

인천미송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미송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